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録日：1967年3月23日 登録番号：第21-1251号（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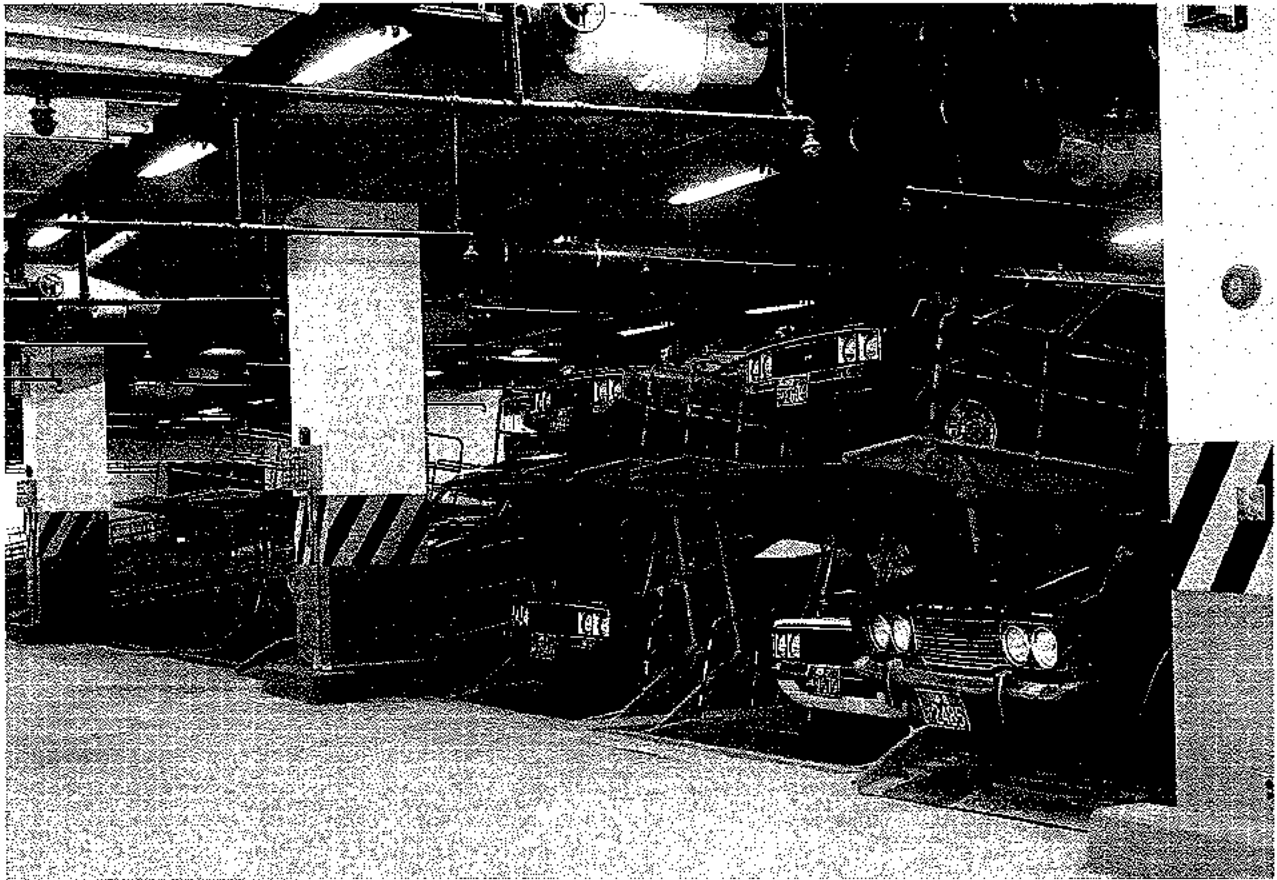
発行日：1981年6月1日 発行：（印刷）通巻 第142号

1981 6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획기적인 주차방법의 출현!

2 단 주차 장치



* 본사에서 한국외환은행본점 주차장에 시공 설치한 2 단주차장치

특징

1.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주차면적이 극소화 된다.
2. 주차설비 투자비가 반감된다.
3. 조작과 보수유지가 간편하다.
4. 주차시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다.
5. 설치 시공이 용이하다.

 (株)弘進機研

本 社 : 京畿道 富川市 素砂洞 28-11
TEL. (仁川) 62-7411~4

서울事務所 : 서울 · 中区 茶洞87 (유일빌딩703호)
TEL. 777-7943~4

釜山事務所 : 釜山 · 釜山鎮区 釜田洞153-3
TEL. (釜山) 66-2703



卷紙設計 / 東亞日報社美屋
設計 / 李喜泰 · 攝影 / 金銀珠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47 호
구입년월일	1981. 6. 1
대한건축사협회 (주) 서울지부	

編纂委員會

委員長	金正澈
委員	金奉勲
"	吳昌熙
"	尹道根
"	尹鳳源
"	李文輔
"	張錫雄
"	洪淳寅
"	黃一仁

月刊 建築士

U. D. C. 69 / 72 (054-2) : 0612 (519)

目次

通卷 147号

1981. 6

論壇 / “새로운 「르네상스」의 創造”	具玠會	2
特輯 / 建築行政 무엇이 문제인가?		16

論說 · 論文 / 現代建築思潮의 變遷	金熙春	11
法과 建築	崔昌奎	25
朝鮮時代의 丹青	張起仁	29
수동형태양열 축열 벽의 활용	田燦珍	35
海外建設工事	都強會	39

會員作品 / 45

- 동아일보 여의도 사옥 · 李喜泰 ((주)엄·이건축)
- 安城農專大合同강의동 · 安將元·崔義俊 (新亞建築)
- 鷹岩 教会 · 羅永均 (東新建築)
- (慶尚北道支部編)
- 정화여중·고 체육관 · 俞培根 (도시건축)
- 대구 건축사회관 · 金武權 (현대건축)
- H 씨 住宅 · 金仙丕 (합동건축)
- K 씨 住宅 · 安承在 (신한진건축)
- 신 교 수 맥 · 林八岩 (동인건축)

海外作品 / 82

●XEROX CENTER

☐ 協會消息	3	☐ 會員動靜	9	☐ 月間建築情報	73
☐ 建築教育의 요람 “아키토피아”	44	☐ 建築行政相談	78		
☐ 元老建築家 探訪 / 嚴德紋	58	☐ 新入會員	100		

其 他 / ☐ 무엇을 하고 있나?	10
☐ 로타리 / 光化門의 異邦人	28
☐ 經營 / 새로운 경영방식 “Z理論”	38
☐ 支部巡訪 (慶尚北道編)	61
☐ 會員文芸	99

資料 · 統計 / 消防法 改正에 대한 考察	李承九	89
'81 주택종합 계획확정		102
全國建築許可統計		104

☐ 發行所 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 89 / 郵便番号 110
光化門郵通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23-9491~2, 723-4287, 724-1045
☐ 發行人 兼 編輯人 具 玠 會 ☐ 登録番号 第4-1251 ☐ 登録 1967.3.23
☐ 發行 1981. 6. 1 ☐ 非売品 ☐ 印刷人 郭 得 龍 / 三文印刷所 / 261-7676

“새로운 「르네상스」의 創造”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具 琬 會



社會 各分野에서 소용돌이치기 始作한 새로운 變化에 대한 能動的인 受容態勢는 지난 時代를 살아온 우리들이 意識構造에 한줄기 淸涼한 바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든 變化 혹은 改革이 人間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原則下에서 오늘의 새로운것에 대한 希求는 우리 意識속에 潛在해 있던 當爲性이 새로운 指標의 提示에 의해 現實化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胎動한다는 것은 깨치고 나와야한다는 아픔과 멈추지않고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괴로움이 隨伴되는 것이다.

最近 우리社會는 「새로운 胎動」이라는 時代的召命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經濟的인 側面에서 70年代에 擡頭되기 始作한 資源「내셔널리즘」은 世界的인 資源難을 불러일으켰고, 經濟成長의 加速化를 가로막아 不況과 異常景氣라는 昏迷속에서 各國의 經濟政策이 갈피를 못잡은채 80年代를 맞이했으며, 지금도 그 後尾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興作속에서 우리나라經濟는 中興을 主導해왔던 建築景氣의 沒落과 함께 沈帶의 늪에 빠져있으며 이제 起死回生の 轉期마련이 要求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經濟全般에 관한 問題인 同時에 建築界의 課題이며, 이를 主導해나가는 다른 사람아닌 우리자신의 問題이기도 하다.

따져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昨

의 現實이 어느分野 다른階層에 비해 불만스러웠음을 쉽게 알 수 있다. 建築分野의 專門技能性을 無視하고 政策이라는 「카테고리」속에서 行政에 의해 끌려다녀야했고, 따라서 오랜 經驗과 學問的깊이로만이 可能的 專門建築人으로서의 資格이 白眼視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굳이 建築文化의 繼承發展이라는 至高한 使命意識말고도, 또 建築人의 地位向上, 權益옹호등 利己의인 좁은 意味의 所見말고도 당장 國家的인 浪費로 큰 損失이라는 觀點에서도 專門人이 專門分野政策樹立에 참여하고 主導해서 試行錯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뒤집어보면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적지않은 責任이 있다. 하나는 그렇게 되도록 傍觀한 잘못이요, 또 하나는 잘못인줄 알면서도 現實에 얽매어 끌고 못지 못한 잘못이 그것이다. 결국 우리의 地位에 우리스스로가 올라가지 못한 잘못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時點에서 하나, 서로 反目하지않았는가? 둘, 專門家로서의 뚜렷한 召命意識이 缺如되지 않았는가? 셋, 스스로 바른 길을 걸었는가?를 냉철하게 反省해야 할 줄 안다.

이러한 반성없이 는 결코 새 秩序속에서 새로운 建築人으로 새길에 同參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認識해야 한다.

때문에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또, 우리의 地位를 높여야한다는 自求의인 面에서도 지금 社會各分野에 스

며늘고 있는 淸涼한 바람에 힘입어 建築界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創造해야 할 줄 믿는다.

비단 一線에 있는 우리들만의 存立과 生存을 위한 「르네상스」가 아닌 우리의 뒤를 이을 後進들을 위해서도 꼭 必要한 것임을 안다.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根源的인 遺産이 결국 지금의 우리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영·제너레이션」(Young Generation)의 밝고맑은 힘이 우리로 인해 꺾이고 좌절하지않도록 튼튼히 基盤을 마련해야하는 責任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한다.

새로운 「비전」없이 旧態依然 하게 現實에 얽혀 이 時期를 보낸다면 우리에게 남은것은 虛像과도 같은 쓸모없는 名聲뿐이요, 名利만을 위해 휘저놓은 못난 우리의 모습뿐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召命感을 가지고 힘을 모아 노력할때 疏外되었던 우리의 地位가 빠르게 定立될 것이며, 따라서 政策當局의 支援이 있을 것임을 굳게 믿는다.

소용돌이는 하나의 軸을 이루어 幅과 깊이를 더해 가듯이 우리의 손에 의해 우리가 만든 유일한 團體인 協會를 求心點으로 해서 追求해 나갈때 窮極的인 目的이 보다 빨리 達成될 줄 안다.

비록 깨치고 나와야한다는 아픔과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괴로움이 隨伴되는 胎動이라해도 결국 우리가 이루어놓아야 한다는 절실한 召命意識으로 우리의 「르네상스」를 위한 作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서울지역 회원간담회 가져

회원의 결속된 힘 필요 강조
애로사항등 폭넓은 대화 나눠



본회 업무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들의 당면 애로사항을 종합해서 이의 보다 효과적인 타개책 모색을 위한 서울지구회원간담회가 열렸다.

지난달 26일과 27일양일간에 걸쳐 본회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모두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다.

具琬會회장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회장취임이후 협회 운영을 명실공히 회원을 위한 회원의 협회로 성장토록 노력했다"고 전제하고 "협회의 체질개선과 회원을 위한 사업확대, 업무수행능력의提高에 力點을 두고 會務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업무현황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 회원들은 현업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협회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의 원활한 해결책을 강구해줄것을 원했다.

회원들이 지적한 애로사항을종합분류하면, ①建築관계 法規의 變更과 非現實的인 規程으로 인한 고충 ②報酬料率의 上向調整 및 設計와 工事監理報酬分割시급 ③税金問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納稅組合結成) ④設計費

「덤핑」에 따른 規制方案등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같은 현안 問題點에 대해 具琬會회장은 조목별로 협회가 강구하고있는 해결방안을 참석 회원들에게 설명했는데, ①非現實的이고 非合理的인 建築관계 法規는 改正作業을 위해 당국과 협의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을 전후해서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밝히고, ②報酬料率의 上向조정도 당국과 절충해서 결정토록 준비중이고 특히 料率 자체의 上向조정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種別로 細分化해서 실질적으로 引上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③현업상 항상 문제가 되고있는 税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他分野와 같이 納稅組合結成方案을 이미 검토했으며 조속한 時日내에 決定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납세조합이 결성되면 상

당액의 節稅가 가능하며 稅務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해소돼 회원들이 作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것이라고 소개했다. 具회장은 이어서 ④設計費「덤핑」에 대한 規制방안내지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덤핑」행위는 회원資質문제와도 관련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建築士의 品位를 높이고 스스로의 權益보호를 위해서 회원의 자각적인 노력이 앞서야하며 협회에서도 淨化운동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근절방안으로는 制度的裝置 마련등 合理的인 對策 강구를 위해 자료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한편 具회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지으며 협회가 명실상부한 회원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로서 성장발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회원의 결속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전회원의 과반성도를 포용하고 있는 서울지역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具회장은 종래까지 협회를 백안시하던 풍토를 불식하고, 결속된 힘으로 공동보조를 취할때만이 우리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간의 회원간담회를 끝내고 具회장은 28일에는 서울支部 任員(支部長·幹事 5名)등과 자리를 함께하고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회원들의 애로사항및 건의내용을 분석, 이의 해결책 강구에 업무의 초점을 맞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建築연구위원회 개최

회원교육실시기로 결정

건축연구위원회(위원장 安箕泰)가 울들어 두번째로 개최되었다.

지난달 22일 본회회의실에서 열린 동위원회에서는 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회원교육을 비롯한 한국 전통건축연구에 관한건, 소연구위 구성의건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기술향상을 위한 회원교육은 한양대 김진일교수, 홍익대 윤도근 교수가 "건축물의 표준화

및 설계기법, 그리고 한양대 오창회교수, 삼신설비 유동열 소장이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에 대해서, 말기로 했으며, ② 전통 건축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은 연구 小委를 구성해서 재검토기로 했다. 또 ③ 연구小委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3개의 小委로 한국전통건축연구 소위원회와 건축사업 및 보수기준연구소위원회, 건축법규연구소위원회등을 구성키로 했다.

그밖에 小委구성에 따른 인적구성 및 임기등 세부사항은 연구 검토해서 이사회에 넘기기로 했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규봉(건설부건축관리관) △ 김진일(한양공대) △ 신현식(중앙대공대) △ 윤승중(원도시건축) △ 김동규(김동규건축) △ 유규성(범양종합건축) △ 강태운(고려건축) △ 이승우(주·종합건축설계) △ 한종언(금성건축)

복지연금 清算委 개최



회원복지연금청산위원회가 지난 5월 15일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3월 임시총회의 청산결의

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具疏會 회장을 비롯한 각시도 지부장으로 구성된 청산위원들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청산위에서는 ① 오는 5월22일까지 각 지부에 상환액을 송금토록했고 ② 타도지 부회분에 대해서는 본회에 현황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회원소속지부로 역시 22일까지 직접송금 하여 ③ 청산완료후 결과에 대한 이상유무는 본회감사를 받고 ④ 또 차인 잔액분은 본회세입으로 확보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에 유익 하게 활용키로 결의했다.

이번에 청산된 복지연금의 규모는 모두 4억 9천89만 1천 2백67원으로 지부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서울=182,065,140원
△ 부산=6,508,380원
△ 경기=55,325,190원

△ 강원=12,114,946원
△ 충북=9,467,570원
△ 충남=15,159,690원
△ 전북=9,073,240원

△ 전남=14,839,448원
△ 경북=59,062,300원
△ 경남=21,702,233원
△ 제주=5,573,130원

3단체 월례간담회 가져



건축 3 단체 월례 조찬회가 지난 4일 市內 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建築家協會 주관으로 열린 이날 조찬회에는 3 단체 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특히 현상설계에 대한 경기운영의 효율화를기하기 위해 3 단체가 10만원씩을보조키로 했으며, 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전물 양성화시책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방안이 유도될수 있도록 건축계가 공동보조를 취하자는데 의견을모았으나 종래까지 이들 건축물에대한 위법여부로 각종 처벌을 받았

다고 지적, 차제에 법개정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U.I.A 총회에 참가할 우리나라 대표단 8명이 13일에 출국한다고 보고되었으며 특히 이번 총회는 적성국가에서 개최됨에따라 동구라파 및 소련등지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3 단체 월례 조찬회와는 별도로 건설부장관초청 간담회와 실무책임자 간담회를 마련해서 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건축계의 당면문제점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등을 합의했다.

건축자재업체 회의 전시회 앞두고요령 알려

국내에서 생산 되는 우수 건축자재를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건축자재의 질적향상과 업계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본회가 마련하는 우수건축자재 전시회에 대비한 생산업체회의를 가졌다.

지난 3일 본회회의실에서 (주)럭키를 비롯한 30여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 전시회개최에 따른 전시요령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전시는 종래와는 달리 제품진열로만 그치지 않고 생산공정을 비롯해서 시공방법, 우수성등을 슬라이드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해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체적으로 전시하기로 했다.

이들 위해 운영위를 구성해서대스콧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불량자재에 대한 사용규제등을 아울러 제공키로 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본회 전시장에서 개최될예정으로 준비중이다.

특히 本會 具玟會회장은 최근국내 건축경기의 불황을 지적하고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축인이 공동참여해서 복지연금과같은 장치를 마련, 어려울때 이를 이용해서 난관을 극복할 수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원호가족에 성금전달 이준열사 외동딸 이종숙씨

본회는 원호의 딸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몸바친 애국지사의 유족을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1일 임인혁사무지장은 이준(李儁) 열사의 외동딸 이종숙(85세) 할머니를 댁으로 방문하고 한

민족의 기개를 세계에 보여준 이준열사의 유덕을 기리며 금일봉을 전했다.

이준열사는 광무11년(1907년)고종황제의 밀조(密詔)와 친서를 품고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침략행위를 열국 대표에게 호소하려다 참석치 못하게되어 분사, 세계에 우리민족의 높은 기상을 보여주었다.



조립식 건축자재 설명회

산학협동등 의견교환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립식 건축부재 및 「커네티월」의 제품특성 및 시공법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달 14일에 있었다.

본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본회를 비롯 건설부관계관 그리고 대한건축학회, 한국주택사업협회등 관련단체에서 참석했으며, 그밖에 (주) 금강을 비롯한 8개 건축자재생산업체등에서 약 5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설명회에 앞서 건설부 한규봉건축관리관은 이러한 모임은 업계와 학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산학협동체제진작과 당국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각종 건축자재가 많이 생산되었어도 실제적용이 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기술적인정보가 제도적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계 참석자들은 이러한모임이 하나의 발전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공법이 개발되었다고해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려면 학계의연구가 필요하며 이때 업계는 학계와 상호유기적인 기술교류를 통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또 관계당국은 어떤 특정제품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인식을 배제하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끌어 나갈것을 촉구했다.

당국과 학계의 의견교환은 다음 회의에 주택공사의 담당자도 함께 참석토록 할 것을 합의하고 설명회에 들어갔다.

이어서 시작된 설명회에는 8개 자재생산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특성및 시공법 등을 소개했다.

노임단가기준변경

건축사노임단가기준이 6월 1일부터 변경되었다.

지난 5월18일 본회 제8회이사회결정에 따라 바뀐 노임단가기준은 건축사업무및 보수기준 제24조

(원 / 1 일8시간기준)

	일당직접비			자격의내용		
	현	령	변경	대출후 실무경력	초대출후 실무경력	공고출후 실무경력
건축사	40,200	48,200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된자		
건축사보(고급)	29,500	36,800		10년이상	12년이상	14년이상
" (중급)	21,500	26,800		5 "	7 "	9 년이상
" (초급)	14,700	18,300		5 년미만	2 년이상 7 년미만	4 년이상 9 년미만
보조원	7,000	8,100			2 년미만	4 년미만

규정에 의한 건축사노임단가기준에 따른 것이다.

변경 실시되는 노임단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統一諮問委에 3명 위촉

평화통일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諮問하는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에 건축계를 代表해서 3명이 위촉됐다.

藝總산하 단체인 한국 건축가협회 李海成 회장(한양공대 교수)과 李丞雨부회장(본회회원) 威貞浩(본

회회원)이 지난5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이날 오전 10시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건축계의 경우 문화공보부산하 단체에만 국한되어 있고 주무부처인 건설부산하 단체 인사는 위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金堯喆회원 反聯支部長에

金堯喆會員이 반공연맹지부장에 피선되었다. 서울지부소속 회원이며 범한건축대표인 金堯喆 회원은 지난 5월 24일 서울 중구지부장에 당선, 동지부에서의 맹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美건축가 「콜맨」씨 방문

具회장과 환담나눠

具院會회장은 지난 5월26일 오후 본회를 방문한 미국건축가협회(A.I.A) 회원이며, 오크라호머에서 활약하고있는 「조셉·콜맨」씨와 환담을 나눴다.

우리나라 건축계를 돌아보기 위해 來韓한 콜맨씨는 具회장을 만남자리에서 본회회원들의 활약상과 서울圈도시계획을 비롯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콜맨씨는 A.I. A회원 1만여명



가운데 오크라호머에는 3백50여명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의 활약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具회장은 이자리에서 양국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본회와 A.I.

A의 상호교류를 갖자고 제의했다.

콜맨씨는 具회장의 제의를 받고 A.I. A 회장과는 누터운 친분관계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귀국후 회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회 6월중 업무 계획

〈총무부〉

- ① 6월 1일 원호성금 전달
- ② 제9회 이사회의 개최
- ③ 세규정 정비진행
- ④ 5월분 세입세출 장부 정리
- ⑤ 6월 3일 징계위원회 개최
- ⑥ 복지연금 감사준비
- ⑦ 복지연금청산 결산서 시도지부 장에게 보고
- ⑧ 6월분 자금 영달
- ⑨ 3단체 조찬회 개최
- ⑩ 신규직원 재규정교육
- ⑪ 각 부서 업무 계획 및 5월분 업무보고 취합
- ⑫ 회지제재를 위한 자료 취합(총무부부 사항)
- ⑬ 자동차세(2기분) 납부
- ⑭ 전국 건축관계조례 자료 수집
- ⑮ 각부서별 업무협조 조정
- ⑯ 수시 지시되는 사항
- ⑰ 시도지부 회지 대외용 배부

〈기획 조사실〉

- ① 회원 복지연금제도 실시에 따른 검토

ㄱ. 정관수정 제의

- ㄴ. 복지연금 조정안 검토
- ㄷ. 사업추진계획 검토

② 남세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

- ㄱ. 정관 검토
- ㄴ. 조합가입에 따른 문제해결

③ 월배정화 추진 위원회 개최

④ 정화추진협의회 구성 검토 건의

- ⑤ 도서신고 현황분석
- ⑥ 5월 예산 집행 실적 분석
- ⑦ 의료보험 규정 검토(1종) 보완
- ⑧ 심사분석 지침 검토

⑨ 분기보고 작성

- ㄱ. 사업업무 추진 실적
- ㄴ. 정화실적 평가결과보고

⑩ 2·4분기 종합분석

⑪ 정탁 배경추진 보고

⑫ 6월분 세입·세출 자금 사용계획 검토 수립

⑬ 82년도 예산편성 지침작성

〈출판사업부〉

- ① 각종 계획(안)브리핑 및 내부 결재 완료

ㄱ. 1981년도 “하반기” “건축사”

지 편집계획(안)

1. 우수건축자재전시회(안)

ㄷ. 학술 세미나(안)

ㄴ. 건축설계용품 공급(안)

ㄹ. 해외시찰단파견(안)

ㅁ. 작품전시 및 협회상 시상(안)

② 제5회 편찬위원회 작품 소위원회 개최

③ “건축사”지 6월호 발간

④ “건축사”지 7월호 발간계획재검토

⑤ 기타 광고료 수금

⑥ 제6회 편찬위원회(7월호)

⑦ 제6회 편찬위원회 작품 소위원회

⑧ 우수 건축자재 전시회에 따른 관계자 회의

〈기술부〉

① 건축사보수요율 개정 작업

② 건축사 순회교육에 대한 교재작성, 강사진임, 교육실시

③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에 대한 작업

④ 각종 기술용어중 원어 표기상태에 대한 연구

⑤ 각종 기술 공문서 처리

⑥ 건축 기술 용어중 원어표기 상태에 대한 연구

거리질서 캠페인 벌여



□ 서울支部는 거리질서확립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5월16일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시내 광고배거리에서 전직원이 벌였는데 이번 캠페인은 거리질서를 지켜 명랑한 사회,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번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베풀어진 것이다.

市政간담회 마련 회원친목 단합대회도

市政에 관한 간담회가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동지부는 지난달 9일 마산 시청이 중범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자와 마산지역회원 28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市政에 대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82년 마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시가지 건축물 정비에 따른 사항등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마산시청 당국은 정비를 요하는 1천2백55동의 건축물중 마산시로 부터 설계비 감면 조치를 받게 되는 명단제출자에 한해 마산회원 공동으로 운번처리라고 설계비는 공사감리비를 포함해서 30% 가량 감면토록하는 문제등을 협의 했다.

회원사 직원 체육대회

강원지부는 회원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2일 강원지부는 춘천시내에 소재한 회원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사보 및 보조원 45명을 한

자리에 모아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강원 종합고등학교구장에서 열린 체육대회는 축구경기단일종목만을 채택 뜻있는 하루를 보냈다.

마을文庫에 책보내 제주지부 자매부락에

□ 제주도지부는 자매부락인 제주 사노형동 월산부락에 마을문고 62권을 기증했다.

지난달 12일 김대환지부장은 洪鎭豪사무국장을 대동하고 월산부락을 방문, 이자리에서 도서류와 서류함 등을 전달했다.

이날 기증한 도서류는 실생활에 필요한 농사관계서적을 비롯해서 문예서적, 의학서적, 일반상식 서적등으로 특히 청소년들의 교양습득에 도움이 되는 도서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자리에서 김지부장은 자매 부락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지역사회개발에 회원모두가 힘쓰고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을 밝혔다.



한편 동지부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율정화운동의 실천화를 꾀하기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가진 단합 대회에는 회원 및 직원

86명이 참석 결의문 채택과 비위 회원 실태조사 계획발표에 이어 자율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천방안등을 알렸다. 이어서 제주도 향몽 유적지를 돌아보며 회원 친목을 다졌다.

會員動靜

◎ 해외여행 / 행운을 빌며... /

※ 6.15일부터 열흘간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세계 건축가협회(U.I.A) 제15차 총회에 8명의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 이중 본회회원은 모두 5명으로 □ 최창규씨(신진건축) □ 김정식씨((주)정림건축) □ 강석원씨(구름가건축) □ 조성용씨(우원건축) □ 박재호씨(한영종합) 등이며, 단장에는 건축가협회 부회장인 나상기씨, 그리고 조성열 정희순씨등이 일원으로 참가한다.

◎ 결 혼 / 祝賀합니다 /

※ 서울지부

□ 이해성씨 2녀(4.17일·YWCA) □ 김광한씨 차남(4.12일·신혼예식장) □ 박정병씨 3남(4.22일·신혼예식장) □ 김정학씨 3녀(4.18일·YWCA) □ 송욱호씨 장녀(4.22일·서울예식장) □ 김동명씨 장녀(4.27일·LCI) □ 이규복씨 장녀(4.30·YWCA) □ 이희태

씨 장남(5.2일·YWCA) □ 박성규씨 동생(5.8일·신혼로타리에식장) □ 주영근씨 3남(5.16일·밤모스예식장) □ 이관재씨 동생(5.16일·신라예식장) □ 이상대씨 차남(5.20·천도교회당) □ 박인호씨 장녀(5.22일·행복예식장) □ 이원조씨 차남(5.31일·성공회관) □ 정대식씨 차녀(5.30일·혜화동성당)

※ 부산지부 : □ 권경현씨 차남(5.24일·동양백화점) □ 최봉용씨 차녀(5.3일·새부산예식장)

※ 강원지부 : □ 조규식씨 차남(5.10일·부산아리랑호텔)

※ 충북지부 : □ 표재범씨 장남(6.7일·고려예식장)

※ 충남지부 : 이민주씨 장남(5.9일·로얄예식장) □ 유인수씨 차녀(5.5일·대전예식장)

◎ 회 갑 / 오래 사세요 /

※ 서울지부 : □ 송수구씨 모친(5.3일 수원) □ 김병일씨(5.6일 자택) □ 정용찬씨 부친(5.10일·풍년각) □ 윤정중씨(5.12일 자택)

□ 임상억씨(5.12일 자택)

※ 부산지부 : □ 주혁중씨(6.1일 자택) ※ 충남지부 : □ 정인협부친(5.2일 자택)

◎ 병환 / 쾌유를 빕니다 /

※ 서울지부 : □ 양효철씨(3.21일·노덕삼내과) □ 황범구씨(4.8일·강서제일) □ 이민재씨(3.9일·경희의료원) □ 김우식씨(3.11일·명동성모) □ 안홍동씨(5.7일·을지병원) □ 한광수씨(5.14일·수도통합) □ 김기두씨(5.19일·서울대)

◎ 부음 / 머리를 숙입니다 /

※ 서울지부 : □ 양효철씨 모친(4.6일) □ 이정구씨 모친(4.28일) □ 김택성씨 부친(4.29일) □ 공일근씨 모친 □ 송진현씨 모친(4.11일) □ 문창수씨 부친(5.11일) □ 김형인씨 모친(5.22일)

※ 부산지부 : □ 김정수씨 조부(5.4일)

※ 강원지부 : □ 이철수씨(5.20일)

※ 전북지부 : □ 이한규씨(추대회원. 5.10일)

■ 서울支部再入會會員

성명	명칭	소재	전화	면허	등록	일자
김무웅	송림건축연구소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98-2	62-1451	2-1451	단독 217	4. 27

■釜山支部登錄事項變更

성명	명칭	소재	전화	면허	등록	일자
이경석	이경건축연구소	중구 중앙동2가3	23-4434	1657	종합 13	4. 24
조재현	원진건축설계사	북구 폐암동546-1	92-5625	1792	종합 14	4. 27
박종석	동산건축설계사	동래구 명륜동612-1	54-2608	1878	합동 56	4. 17
김종훈	동산건축설계사	동래구 명륜동612-1	53-9320	1970	합동 56	4. 17
박영애	동산건축설계사	동래구 명륜동162-1	54-2204	1008	합동 56	4. 17
황경호	우진건축설계공단	북구 폐암동546-1	54-2608	1916	합동 50	4. 30
이영인	삼중건축설계사	중구 중앙동4가85-2	23-2663	1444	단독 12	4. 17
이승환	화신설계사	중구 부평동2가 40-1	8049	129	단독 68	4. 17
여기배	한양건축설계사무소	중구 부평동1가36	22-9993	1208	단독 22	4. 17

■慶北支部登錄事項變更

성명	명칭	소재	전화	면허	등록	일자
김용운	삼보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 중구 동문동 19-4	44-4678	2-1812	단독 42	4. 27
이명희	우성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 중구 동인동 1가13-1	44-3342	2-1783	합동 88	4. 28



本會 電話番號變更

(81. 6. 6일 변경)

종 전	변 경	비 고
73-9491	723-9491	사무처
73-9492	723-9492	"
73-4287	723-4287	"
73-4288	723-4288	사무처장직통
74-1045	724-1045	회 장 실
74-6291	724-6291	사무처
74-7928	724-7928	회장실 직통

무엇을 하고있나?

—회원사회활동현황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본조사는 본회 전국회원의 「사회활동 현황」을 알아보기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사예시사항으로 정당·정치활동, 각단체·기관활동등으로 세분해서 前·現職활동실적을 조사집계했다.

여기서는 회원별 활동내역이나 실적보다 어느분야에서 어떤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 편집자 /

□ 모두 62개단체에서 활약.

조사결과 회원들이 참여하고있는 각종 단체는 모두 62개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에 참여하고있는 회원수는 출납이 4백2명으로 이는 4월말 현재 회원(1천9백33명)의 약21%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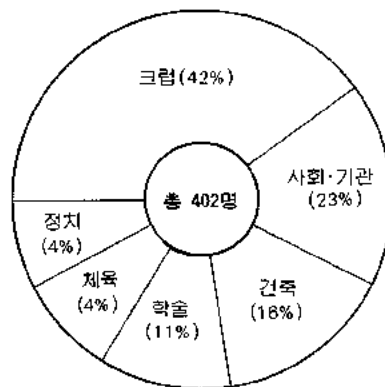
이들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를 크게 여섯가지로 분류하면① 각종사회단체 및 국가기관 ②건축분야와 관계되는 국가기관 및 단체 ③각종 클럽 ④학술단체 ⑤정치관계기관 ⑥체육단체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회원들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분야가 각종클럽으로 사회활동참여회원 4백2명 대비 약42%(1백69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번째로 많은 참여를 보인 분야는 사회단체 및 국가기관으로 약23%에 94명이 이에 속해 있다.

세번째가 建築과 연관이 있는 분야로 도시·구·군 단위의 건축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도시정비토지평가, 국립공원, 설계심의, 토지구획, 주택문제, 건설정책 자문 등 각종위원회에 속해있는 66명(약16%)이다. 네번째로 많은 분야는 학술분야로 학회를 비롯해서 학교, 학술단체 등으로 모두 44명

이 참여하고있어 전체의 11%를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 1〉 분야별 사회활동참여율



그밖의 정치 및 체육관계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각각 15명과 14명으로 약 4%씩을 차지하고 있다. (별표 1 참조)

한편 62개 각종 단체가운데 회원들이 가장 많이 소속돼 있는 곳은 분석결과 라이온스클럽으로 모두 73명이 이에 속해있어 사회활동참여회원의 18%를 점유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많은회원을 포용하고 있는 곳은 청년회의소(JCI)로 43명(11%), 로타리클럽 40명(9%), 도·시·구·군청 행정자문위원과 건축심의위원이 각각 28명과 21명으로 7%와 5%를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지역사회개발위원, 정화위원, 도시정비위원등으로 활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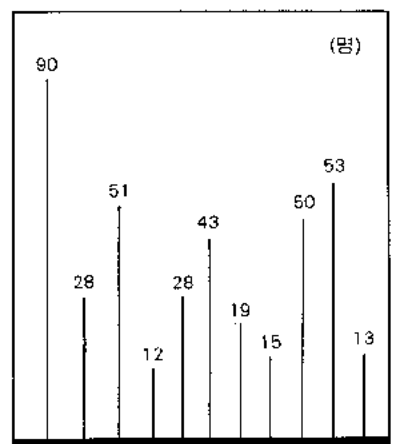
는 회원들이 각각 10명이상인것으로 분석되고 또 가정당, 학회, 관련협회등에 소속돼있는 회원수도 이와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밝혀졌다.

□ 地域別로는 서울·경남·경기 順.

지역별로 보면 회원을 가장많이 포용하고 있는 서울지역 회원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90명) 다음이 경남지역(53명) 경기지역(51명) 順으로 나타났다. (별표 2참조)

한편 62개나 되는 많은 단체가운데 우리회원들이 참여하고는 있으나 그 수가 1~2명에 불과한 단체를 소개해 보면, 우선 널리 알려지지않은 클럽으로 우리회원 1명이 가입된 국제키와니스 클럽(Kiwanis Clubs)이 있다.

〈별표 2〉지부별 사회활동참여 회원수



이 클럽은 1915년 미국·캐나다의 많은클럽을 결합한 사교단체로 산업·실업계인사들의 이상실현을 목표로하고 써비스를 슬로건으로 한 국제적인 모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역시 1명씩이 가입된 연식정구연맹, 사격연맹, 점도협회, 배니스협회등 체육관계단체와 유네스코, YMCA, 적십자청년봉사대등도 널리 알려지고 했으나 우리회원의 가입분포가 적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現代建築 思潮의 變遷

金熙春 (서울대학교工科大学教授)



약력 소개

□ 학력 및 경력 / 경성고등공업학교건축공학과졸업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대학원수로 / 조선총독부영선계기수 / 서울공대건축학과교수 / 한국건축가협회장 / 대한 건축 학과장 / 국전운영위원.

□ 주요작품 / 서울농대교사·강당 / 서울공대기숙사 / 서울사대과학관·도서관 / 워커힐 주건물 / 수원 종합위 호원 / 경기도청사 / 서울대종합캠퍼스마스터플랜 / 정신 문화연구원 / 한국태양에너지 태양열주택모델하우스 및 브금센터

□ 수상경력 / 서울특별시문화상 / 대통령표창장 / 대한 건축학회작품상 / 국민훈장무궁화장

本稿는 지난 3월13일 서울대학교 26동강 의실에서 있었던 金熙春교수의 정년퇴임 고 별강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여러해동안 우리나라 건축계에 큰 공로를 남기고 이제 대학강단에서 물러선 老教授의 뜻을 기리고자 원문 그대로 적는다.

/ 편집자 /

● ‘현대’라고 하는 시대가 갖는 비극의 근원은 기술문명의 진보와 생물체로서의 인간본연이 갖는 요소와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가 현재와 같은 고도의 기술문명전 속에서 그 삶을 영위하게 된 역사는 전인류사의 과정에서 극히 짧은, 최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혁명 이후인 그 짧은 기술문명사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인위적인 문명의 스톡(Stock)은 놀라운 가속도로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인간 자신이 그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과 지식, 정보 등의 폭발적인 스톡에 대한 제어능력을 상실하고 억압당하고마는 자기당착(撞着)의 모순에 빠져있는 듯 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보복의 섭리일런지도 모릅니다.

● ‘현대’라고 하는 시대의 출발을 단적으로 정의내리기는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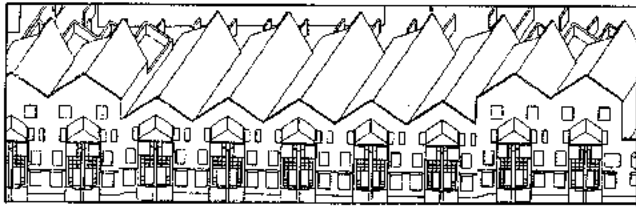
‘현대’를 우리는 세계의 각 지역에 따라서 그 ‘현대’의 출발과 ‘현대’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구에 있어서 廣意로서의 현대의 출발은 봉건주의의 붕괴와 함께 근대자본주의의 논리에 바탕을 둔 시민제급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가 아닐까 하며 보다 좁은 의미로서는 20세기 이후 기술문명 사회로의 급진적인 발전을 한 1950년대 이후를 지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것은 기계기술문명에 바탕을 둔 ‘문명사회(civilized society)’에서 전자기술문명에 바탕을 둔 ‘문명이후사회(postcivilized society)’로의 전환인 것이고 혹은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내지는 ‘전자기술사회(electrotechnique society)’, 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정의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60년대 초기에 있어서는 풍요로운 ‘기술문명’ 시대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긍정적이고도 낙관적인 시대관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이무렵 선진국의 경제성장의 상승세는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세계도처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불안과 개발일변도의 산업기술상의 진보주의 및 인구증가와 도시확대화 등으로 야기된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와 결부된 세기말에의 미래상등은 양차대전 이후에 또다른 비관적인 전망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의 구체적인 인식은 1970년대 초반, 지구상의 가속적인 성장과 진보가 갖는 한계가 병렬하게 가측적(可測的, operational)으로 보여졌고, 나아가서는 범세계적 차원의 성장에 대한 ‘계획적 제어’의 공동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구의 성장은 늦어도 향후 100년 이내에 정지내지는 급격한 퇴보의 징후를 보이게 된다



는 연구결과로부터 출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동의 궁극적인 이익과 생존을 향한 성장제어의 노력보다는 오히려 '자국주의'(自國主義, nationalism)에 입각하여 개발과 진보일변도의 성장가속화를 더욱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며, 이 결과 세계도처에서 나타나는 인구, 자원, 식량, 오염, 그리고 기상이변 등 환경문제의 제반問題들은 연구보고서의 가측(可測)들이 점차로 현실의 징후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향후 20년이내에 근 100%의 인구증가가 예측되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인구의 증가분(增加分)을 담는 용기로서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의 터전을 구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물량과 재정의 투입이 예상되는 동시에 정주터전으로서의 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의 침식이 낚는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적 불균형과 그로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에의 대처 또한 심상치않는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 나뿐인 우리 '국토공간'이 과묵으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의 노력과 선험(先驗), 그리고 시행착오를 주시하여 보다 질서있는 정주환경의 터전으로 개발할 것인가하는 양자택일의 과제는 이시대 우리한국인 모두에게 남겨진 주요문제인 것입니다.

●한편 건축이란 인간의 모든 정주활동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 속한 지역의 자연 및 인문의 제반 시대배경이 종합되고 응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건축의 본질에 관하여 일찌기 건축사가(建築史家) S. Giedion은 「어느시대의 성격은 그 시대가 아무리 위장하려하여도 건축으로 반영」되고 만다는 '시대의 색인'인 것으로 단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현대건축이 잉태되어 나온 여정(旅程)을 개괄(概括)하고 이러한 여정의 결과로서의 현대건축의 향방에 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건축의 모태(母胎)로서, 또는 그 의식의 근원으로서의 서구의 근대건축은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태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근대건축의 잠재적인 의의를 중세적인 신본(神本), 의 건축의지에 대하여 인본(人本, human)의 인간해방의 건축관에 둔다고 하는 넓은의미의 해석을 전제하게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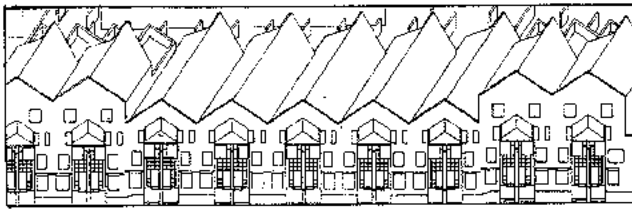
그 진원(震源)은 일찌기 '르네상스' 건축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건축의 출발은 통념적으로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두게되며 이무렵 종교개혁과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봉건질서는 붕괴되고 중상시민계급이 태동하면서 부터 서구는 본격적인 근대화로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는 산업혁명으로써 가속화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시민의식의 근대화가 낚은 필연적 진보의 수단으로서의 공업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인 것이지 산업혁명 그 자체가 근대화를 낚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이 근대건축을 낚은 것이 아니라, 그 산업혁명이 요청되게된 근대화의 시대배경의 요망에 부응하여 서서히 근대건축의 양상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로의 이행(移行)으로 인하여 중상시민 계급의 주도아래 근대 자본주의가 전개되게 되었으며, 경제기반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욕망이 무의미하게 됨에 따라 상권(商圈)과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야기되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건축의 영역에도 몇가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낚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으며, 그 한가지는 새로운 산업사회적, 기술적인 요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상(建築像)을 모색하고자 하는 方向과 이에 대하여 다른 한가지는 반산업주의적이고 복고적인 과도기적 사실(過渡期的事實, transient facts)로서 나타난 건축의 여러가지 경향으로써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충적인 두 경향의 이행은 19세기의 근대건축으로 하여금, 다양한 'ism'과 이들 'ism'의 구현을 향한 행동적인 건축운동으로서의 다양한 'movement'의 난립시대로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S. Giedion이 일컫는바 구성적사실(構成的事實, constituent facts)로서의 전자의 경향이 20세기 건축이념의 모태로 이어지고, 후자의 경향은 그러한 전자의 이행 과정에 대한 반작용적 징검다리로서의 과도기적 역할밖에 다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건축의 영역에서는 주로 후자적인 경향이 주도하던 19세기 전반의 건축에 대해서 비로소 전자의 경향이 새로운 사상과 이론의 배경위에 본격적으로 수립된 것은 1850년대 이후가 되며, 「수정궁」(J. Paxton, 1851 런던박람회), 「붉은집」(W. Morris, 1859) 등이 건립된 이





무렵이 근대건축의 2차적 기점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미 기계에 바탕을 둔 산업사회의 기틀이 완성된 이 시기에 있어서 근대적인 공학기술의 발달과 문예사조의 세기말적인 전통 등의 시대배경아래 나타난 '건축과 기술 및 장식' 등에 관한 혁신적인 사상을 이론화한 John-Ruskin, 그리고 예술의 민중화를 주장한 William Morris의 「Art & Craft Movement」등, 근대건축의 선구적인 사상의 바탕은 근대건축의 본격적인 양상을 나타나게 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들은 첫째로, 근대공학의 기술과 철, 유리,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건축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건축의 장식성을 배제하고 「用의 美」를 주장하는 Otto Wagner의 '기능주의적 필요양식'(Natzstil) 개념이 실제의 건축물을 통하여 구현되게 되었으며, 셋째로 이상의 기술과 이념이 미국의 산업 대도시들에 있어서 높은 지가의 대지위에 값싸고 큰 규모의 건물을 짓고자하는 건축주의 이윤논리에 잘 융합되어 선구적인 근대건축가 L. Sullivan등을 필두로하는 「시카고파」의 건축운동으로써 본격적인 근대건축의 모습으로 구현되게 되었다는 사실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진보적인 시대의 당연한 부산물로서 후자의 경향으로서 반진보주의적이며 보수적이념의 한 단면으로서 'Arts Nouveau' 및 John Ruskin의 기계 생산성의 배격등 과도적 사실들의 양상을 배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1920년대를 전후하여 건축의 영역에 있어서 사조의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19세기 건축사의 보고(寶庫) 속에서 재빨리 20세기적인 건축의 眞價를 찾아내어 건축으로 구현한 Le Corbusier, Mies Van der Rohe, F. L. Wright, A. Aalto등 거장건축가의 탄생인 것이며, 이로부터 「영웅주의」 「국제주의」 「기능주의」등으로 불리우는 근대건축의 3차적인 기점을 맞게 됩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체제, 20세기의 미학, 실용적 합리주의의 윤리관, 그리고 20세기의 기술 등 '가장20세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들을 건축이라는 총체를 통하여 가장 잘 종합한 천재들이었으며, 이들의 천재성으로 말미암아 근대건축은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 성숙기의 이념과 양상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면 부정되지 못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념은 확일성, 단순성 등 기계미와 편익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미학과, 보편성과 규격화라고하는 실용주의의정신을 건축의표현으로써 잘 소화해내었던 것이지만, 이들은 기능과 '건축공간과 형태' 사이의 합목적적 연관을 추구하는 건축작업의 과정에 있어서 그 건축속에 내포되는 현실적인 인간의 관점에서보다도 그들의 이상주의 내지는 개인주의적 야심과 독선에 우선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건축을 지칭하는 「영웅주의」라는 칭호속에 내재하는 비판적인 견해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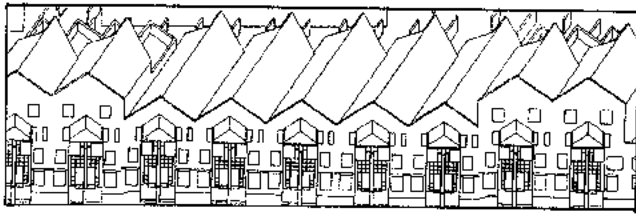
●하지만 이들 거장 건축가들에 있어서 배놓을 수 없는 공적은 건축의 문제를 최초로 도시와 주거의 문제로 확대시킨 의지인 것이고 이러한 선견자적 의의는 1928년 「라사라」에서의 결성 이후 1956년<유고>의 「도부로부」에서의 마지막 10차회의에 이르기까지의 CIAM운동을 통하여 범세계적인 건축 및 도시계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CIAM은 거장건축가들로 성숙된 근대건축운동의 기본양상을 국제화, 보편화시키는 매질(媒質)일 수 있었으나 이들의 선지각자적인 영웅주의로 2차대전 이후 급변하는 시대상과는 서로 적응되지 못하고, 결국 CIAM의 해체와 함께 현대건축으로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 무렵 세계는 전술한 바와같은 소위 후기 산업사회 또는 전자사회로 이행하게 되며 이러한 이행의 반영으로서 「전체보다 부분을, 고정보다 변화를, 개방적 미학으로, 조직보다 개인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최후 CIAM회의를 향하여 준비한 훗날 Team 10의 건축가들인 P. Smithson, G. Candilis, A. Josic 등의 거장건축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국제주의 건축운동은 종식을 고하게 되고 이로부터 현대건축의 기점이 성립하게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현대건축의 경향은 지극히 혼돈스러워서 한마디로 대별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그것은 근대건축의 이념과 방법의 바탕위에 현대적인 요구를 적용 진화시키고자 하는 「후기근대주의」(late modernism)적인 경향과 근대건축의 이념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그 공간의 의미와 구법(構法)의 방법을 표기하여 건축을 만드는 문법을 원점에서부터 재편성하고자하는 「탈(脫) 근대주의」적인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향으로서는 New Brutalism, Modern Clas-





sicism, Neo Baroque 내지는 Neo Expressionism 등으로 불리우는 'ism' 들이 있을 수 있으며, New Brutalism 은 P. Smithson 부처, J. Stirling 등으로 대표될 것이며, 이는 구조 및 설비체계, 그리고 재질의 소박하고 야성적인 노출을 주장하여 현대기술에 잠재하는 비인간성을 건축미학으로 상징하여 근대건축의 세련됨과는 무언가 다른 '현대적'인 것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신세대 건축가들의 주장이지만 그러한 야성의 미학이 그 건축속의 인간에 주는 의미에 관하여 그들은 별반 심각한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

Modern Classicism 은 P. Johnson, Mies Van der Rohe 등으로 대표되며, 근대공학으로써 고전건축미학을 담고자 합니다.

Neo Expressionism 은 근대건축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은채 건축가 개인의 감성과 개인성을 강하게 근대건축의 문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Paul Rudolph, Minoru Yamasaki, Eero Saarinen, Louis Kahn 등의 건축가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상업주의적인 대형복합건물의 요청과 함께 너무도 보편화한 근대건축의 문법을 개인 건축가의 손으로사가 아니라, 다수 건축전문가의 조직력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그 설계의 능력을 구사하여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완벽한 건물을 만들고자하는 방법이 소위 Total Design 이라고 불리우는 건축설계 조직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이후 탄생한 건축가의 개념 및 그 존재양식에 대한 일대개편이자 도전의 한 징후로까지, 우리는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한편 「탈 근대주의」적인 현대 건축의 경향으로서는 1960년대를 그 극성기로 하는 Archigram, Metabolism, GEAM 등의 전위적인 건축가그룹 이 무렵 이들 그룹의 건축이념은 거의 현실의 건물로서 구현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을 '건축가'라 칭하는데 어색함을 느끼게도 하지만 그들에 의한 실험적인 모색과 70년대 이후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표방되는 동향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Archigram, 일본의 Metabolism, 유럽의 GEAM 등의 그룹에 속하는 실험적 건축가 및 평론가들은 현실적인 건축물의 구현으로써 보다도 일련의 그래픽의 방법으로 풍요로운 고도기술 사회로서의 20세기 후반의 건축 및 도시상을 매우 풍자적이고 그로테스크하게 예견하였으며, 이러한 예견의 이면에는 다분히 문명비평적인 기

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근미래(近未来)에 있어서의 건축 및 도시환경상은 인간환경과 사회의 본질에 관한 통찰에 바탕을 두고 있지 못하였고, 관념속에서 유행적으로 조작된 것으로서 곧 그들의 이념은 현실 속에서의 발붙임을 갖지 못하고 해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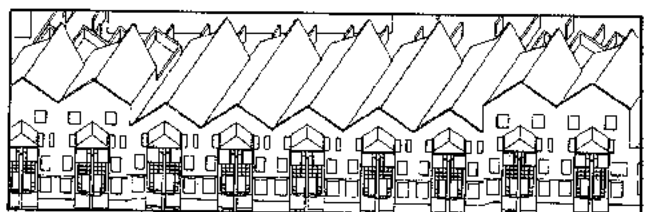
● 포스트모더니즘은 한 뚜렷한 이념을 갖는 'ism' 이라기 보다는 무언가 근대건축과는 달라져야만 하겠다는 현대건축의 원점을 향한 구미신진건축세대들의 다양한 물음들이 통틀어 포괄될 수 있는 경향일런지도 모르는 것으로서, R. Venturi의 저서가 비로소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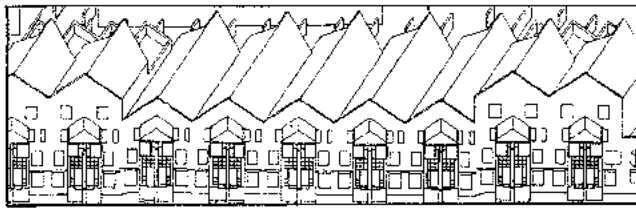
이와 같이 건축사의 주요한 맥락을 돌이켜 볼때 혼성(混性)과 부조화(不調和), 그리고 복고를 표방하는 경향들은 으레히 새로운 시대의 의지를 여실히 주도하고 반영하는 새로운 경향들에 의해 결국 굴복하여 도태되곤 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탈近代主義」는 20세기 후반 통일된 건축이념으로 집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도의 '개인주의', '감각주의', 그리고 '신기성'(神奇性)의 표방 등 저마다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난해한 건축적 표현과 그럴싸한 관념어휘들은 상업주의적인 경쟁이 극심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광활한 설계시장의 영역에서 독보성을 인정받고자하는 노력이며 뿌리없는 이념 - pseudo-ideology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Team 10' 으로부터 「탈근대주의」에 이르는 현대건축의 경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온 의지 중의 하나는, 근대건축에서 상실되었던 것, 즉 건축 및 도시의 제반 정주환경과 그것이 속한 시대와 지역, 그리고 그속에 담겨어지는 현실의 인간이 그 환경과 맺는 심리적, 기능적, 상징적 연쇄관계에 관하여 새로이 인본주의적 관심을 쏟고자하는 소위 풍토주의의 경향일 것입니다. 어느면에서 토속적인 전통건축 folk architecture, vernacular architecture 이 갖는 '인간환경'을 의도적으로 정주환경속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반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시설계의 분야에 있어서 Le Corbusier, Oscar Niemeyer 등의 도시이념, 그리고 전후 영국등지의 신도시개발에서 결과된 개발우선주의의 비인간적 도시상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발보다는 오히려 기존도시의





역사성과 인본성(人本性, human factor)의 회생(廻生)에 관심을 주고자 하는 경향의 일환인 것으로서 사료되며 미국의 Kevin Lynch를 중심으로 하는 학파의 연구태도는 이러한 모색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한편 건축과 관련된 연구의 영역에 있어서는, 50~60년대 초기 경영 및 사회과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OR, 시스템이론등의 합리적인 가측수법(可測手法, operational method)들이 컴퓨터의 발전과 보조를 취하며 진화하자, 이러한 수법들은 곧 도시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주의적 계획이론(rational planning theory)으로서, 그리고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설계방법(design methodology)의 측면으로써의 이용이 모색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초기 합리주의적 방법론자들은 주로 물리적인 체계적 소위 도구로서의 기법(instrumental methodology)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실천적,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방법으로 적극 진화할 기를 찾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70년대 이후부터는 건축과 도시라고 하는 정주환경의 물리적 틀속에서 실제의 인간이 여하히 심리적, 생물적 행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부여된 환경을 인식하는가 하는 것, 그리하여 그로부터 인본(人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환경을 제시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측면으로 연구의 영역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지극히 개괄적으로나마 근대 건축으로부터 진화되어온 현대건축의 사조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조는 앞으로 '현대'의 시 대상이 또다른 국면의 미래를 향하여 치달음에 따라 그 반영으로서 새로운 건축 및 도시환경의 목표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예측의 불가측변수(不可測變數, uncontrollable variables)가 점차로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로서는 미래학분야의 의욕적인 탐색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의 정확한 향방의 예측은 인간의 통찰과 제어력 바깥에 놓여져 있는 것 같으며, 동시에 건축 및 도시환경과 관련된 향방역시 적절하고도 단정적인 예측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술한 바의 환경문제의 의식아래 생각해 보면 20세기 거장건축가들로 성숙된 근대건축으로 이어지는 여정중에 변변히 내포되어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관점의 하나인 건축의 도시로의 확대, 즉 건축과 도시의 일체화라고 하는 관점은 앞으로 더욱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야만 하

는 것이 아닐까 하며, 이러한 인식이 건축의 향방의 기초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도시를 생각하고 동시에 도시를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을 만들자고 하는 태도는, 특히 CIAM 및 그 이후의 건축 세대에 의해 계승되어 왔으며 나아가서는 인간과 건축, 도시, 그리고 그것들의 본연의 바탕으로서의 자연환경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개념의 인식을 통하여 건축과 도시를 바라보자고 하는 '환경주의'(environmentalism)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도시들은 대체로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건축과 도시를 分散하여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도시는 밀집화되고 거대화되어 그 도시생태는 극도로 복합적인 판면을 맺고 있어 부분과 유리된 전체, 그리고 도시와 유리된 건축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광화문에서서 새로지어진 대형 오피스건물들을 바라보고있을때 조선조(朝鮮朝) 도읍시절의 중심가로서의 이미지를 압도하고 있는 그 건물들이 비록 하나하나의 건물단위로서는 아주 현대적으로 잘 처리된 것 일런지도 모르지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어야 할 것인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변에 새로 세워진 취락상태가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한국건축은 한국근대사의 비극만큼이나 그 정통성이 계승될 충분한 배양액을 갖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내적성숙이 성취될 겨를이 없이 항상 외적인 이식이 몰아닥쳤고 여하히 그것에 적응하는가에 급급한 과정이 한국의 현대건축사를 이끌어온 것임을 이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전문 영역과 그 전문가는 교육으로부터 탄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건축교육계 역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요청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확장된 의미의 건축으로 다룰수 있는 전문가의 배양을 위해 재편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건축세대로의 이행이 엿보이는 시점에서, 도래(到來)하는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도를 제시하는 의무와 권리는 아울러 우리 건축전문가가 지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 부단한 제도화 의식의 개편,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성적인 건물에의 관심을 보다 확대된 환경의 부분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지식의 전환이 뒤따라야만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건축전문가의 창조자로서의 지위가 확보될 것입니다.

미래에 놓인 방대한 정주환경 구현작업-이른바 500만호의 -택전설(?)-과 관련된 책무가 우리의 전문영역에 주어지고, 그리하여 그것이 건축사상 영광된 업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중대한 오점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봅니다. (*)

건축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

/ 支部別 건축민원개선 의견 모음 /

이미 오래전부터 본회회원업무와 직결되는 각종 건축관계법규에 따른 지역별 민원사무가운데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규정들에 대한 개선 내지 개정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도시건축현황에 걸맞게 건축행정도 탄력성있는 제도운용이 시급하고, 현실에 맞는 건축행정으로 업무의 능률화를 꾀해 건축계의 새질서 정립에 힘과 땀이 노력할 때임을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호에는 본회가 支部別로 취합한 건축관계민원사무가운데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각종 사무내용을 소개해서 이의 빠른 개선방안을 모색키위한 계기를 마련해 보았다.

아울러 건축관계 법규가운데에서도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을 골라 당국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뜻에서 그 의견을 제시해 봤다.

민원사무개선에 관한 의견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사정 및 건의사항	비고
서울지부				
① 공정보고서	서울시 행정취급규칙 제14조	매월 1. 15. 2회씩 제출됨.	민원서류처리 규정상 해당되지 않는 보고서로서 수차에 걸쳐 불필요성울 강조 폐지토록 건의하였으나 시행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함.	
② 준공시침부서류		시멘트 관련제품 검사확인증	관허제품으로 허가청에서 수시 확인 불량제품 생산업체를 규제강화 하므로써 별도 침부폐지제도 개선 요망.	
③ 행정처분	건축사법 제28조	건축사법 제23조의②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및 특정건축물의 설계 감리업무를 수입하려면 합동사무소로 등록을 하여야만 하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행정처분시당해 설계감리자 외에 타 합동사무소 구성원이 같은 양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	당해 건축물의 설계감리자 외 합동사무소 구성원이 같은 양의 행정처분을 받게 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지부				
① 건축허가 신청 구비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 " " " " "	건축허가 신청시 가. 건축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나. 확인서 다. 건축부지 증명원 라. 등기부 등본(매지) 마. 가옥대장등본 (가존건물증축시침부) 바. 입회 측량도	기재사항 간소화 요망(일건서류 중 중복되는 기재 사항을 삭제하여 간소화토록 건의함.) 폐지요망(실제로 측량을 하지 않고있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정 또는 건의사항	비고
② 준공검사신청 구비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 1 조 민원사무처리 규정 “별표” 부산시 건축행정 처리 지침, 건축법 시행 규정 제 1 조	(계획도토상의 부지일 경우에 첨부) 사. 대지의 전경 사진 아.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자. 시멘트 가공 제품 소요량 신 고서 차. 공사시방서 카. 소방설비도	으며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만 주고있 음.) 폐지요망(조작가능한 사진을 첨부하 는 실효성이 없음.) 폐지요망(첨부할 필요성이 없음.) 폐지요망(첨부 목적의 실효성이없음)	소방법 제 32 조 참조.
	“	타. 오물정화조의 구조도	건축물에 설치할 소방설비 명칭만기 재첨부토록 요망. (소방시설업자가 제출토록 규정 하고 있음.)	
	“	파. 전기설비용량 계산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토록 요망함. (오물정화조의 구조도 및 전기 설비 용량 계산서등은 각각 당해 법령에의 거 면허 및 등록 한 자에 한하여 처리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	
	“	하. 구조 계산서 등을 첨부토록하 고 있음.	도서의 크기를 건축허가 신청서 양식 식과 같은 규모의 크기로 축소 복사 하여 첨부토록함이 서류의 취급 및 관리상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2.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도서의 크 기가 설계원도 전지 그대로를 청사 진 복사하여 제출하고 있음.		설계원도 20매 이상 첨부를요하는 대 규모 건축 물에 한하여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 8 조 건축행정지침	1.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시 가. 준공 신고서 나. 준공확인 보고서	폐지요망(준공신고서에 의거 확인토 록 요망함.)	
	건축법시행세칙 제9조의 2 시 요구 사항 오물청소법적용	다. 확인서 및 준공검사 점검표 라. 준공현장 사진 마. 정화조 준공필증	폐지요망(실효성이 없음.) 당해법령에 의거 첨부 시행되는 것 이므로 건물 준공검사 신청시는 제 외 요망.	
	제신부령 적용 시 요구 사항 건축행정 지침 시요구 사항	바. 구내통신 설비 공사 검사필증 사. 수용자 시설 조사표 아. 시멘트 가공제품 시험 성과표 자. 검사대상 기기 검사증(보이라)	“ “ 폐지요망(실효성이 없음.) 당해 법령에 의거 첨부시행되는 것 이므로 준공검사 신청시는 첨부 제 외 요망.	
	건축법 제53조의5 시요구 사항	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카.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합격 증.	당해 법령에 의거 첨부시행되는것이 므로 건축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제 외토록 요망함.	
	“	타. 완성 검사필증(가스)		
③ 주택건축공사감리	건축법 제 6 조	주택건축 공사에 따른 시공상의 하 자등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공 사 감리자(건축사)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임.	공사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한 책임 한계와 처벌 규정등을 강화하여 주 도록 요망.	건축법 제 20 조 및 동시행령 제 125 조 참조 건축법시행령 제 135 조 참조 처리근거불명 건축법시행령 제 118 조 참조 건축법 제 53 조 제 115 조 참조 건축법시행령 제 120 조 2 참조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정 및 건의사항	비고
④건축허가사 조건 부여	구청장 및 출장소장 직권	1. 건축허가사 도로변의 측구 시공을 의무화 하여 건축주 자비 부담 설치토록 조건부 건축허가하고 있음.	폐지요망(실효성이 없을뿐 아니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만 되고 있음)	
경 기 지 부				
①후퇴 건축선 도로화 증빙서류 첨부		지목변경 분할작업 - 1. 분할허가 2. 분할신청 3. 분할측량신청 4. 지목변경 신청 이러한 복잡한 분제가 있음.	분할허가에서부터 지목변경된 도로의 지적도 토지대장을 준공시 까지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로 인한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경비 등이 낭비되고 있음(약20-30일이 소요됨) 주택의 경우 건축사확인서로 값을 처리하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조치요망.	
②현장 사진 첨부		착공신청시 착공사진 촬영하여첨부	시간 및 재료, 인력 및 필립낭비 (필름 통당 20-24매 이므로 현상후 현장 파악 난이하여 폐지요망)	
③통신설비설치에 따른 관곽전선 전화국 경유한착공·준공확인 및 건축사확인 복명서 첨부 제도.		건축법상의무 규정 없음.	해당부서의 무성의 및 불친절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소모(폐지건의)	
④부합 민원서류 처리의 지연 및 복잡.		시간 낭비만 갖게 됨.	통일서류가 중복됨으로 간소화 요망	
⑤대지가 공유지분일 경우 동의서 첨부.		동의서 및 인감증명 받기 난이함.	동의서(인감증명첨부)를 폐지 하고 건축사 현지 확인서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폐지요망)	
⑥상수도 공채구입		불허가될 경우 상수도 공채는 불필요하게 됨.	현행 건축허가 신청시 상수도 공채를 첨부 제출토록하고 있는 것을 착공시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강 원 도 지 부				
①합동건축사무소의 업무범위	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단서 규정(건설부공고 제137호)	합동사무소의 업무지역으로 지정된 군행정구역(인구20만 이상)의 경우 산간벽지의 단독주택도 합동업무(점점표작성 감리)에 포함시킴으로서 건축주 및 건축사에게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음.	단독주택의 업무 범위를 읍소재지 도시계획구역에만 한하도록 완화요망(삼척군)	
②건축보조사 신청변동 신고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조 3항	건축보조사가 타시, 도 관할 구역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여 신청변동 신고를 할 시 제출지, 시, 도 행정 사항과 전입지 시, 행정사항(구비서류)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신청변동 신고시 많은 불편이 있음.	건축보조사가 타, 시, 도 관할 구역으로 전출 신청변동 신고시에 구비서류를 행정상으로 통일토록 규정할 을 건의함.	
③실계도서검토제	건축사법시행령제21조 제2항	명예직인 지부장 또는 본소장이 매일 수시 신고되는 도서를 상근하여 검토할 수 없음.	폐지요망(실효성이 없음) 허가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허가함.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정 및 건의사항
충 남 지 부 ①건축허가 구비서류	건축법시행 및 행정지시	1. 정화조 신고 검사필증 2. 배출시설허가증(공해방지법) 3. 세멘트 강도 필증 4.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 및 준공 처리 과정에 있어 설계도서 검토등 행정이 복잡다단한데 위서류 등 타 법규(건축법규정화)에 의한 서류신고 및 완결을 건축담당부서 에서 검토, 신고, 검사 여부까지 체크하고 있는 실정임.	1. 정화조 신고 검사필증 2. 배출시설허가증(공해방지법) 3. 세멘트 강도 필증 4.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건축허가 준공신청서 제출시 위서류는 폐지하고 건축허가부서 에서는 위생 공해등 해당부서에 건축허가 준공사항을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신고, 검사처리토록 함이 타당함.
전 북 지 부 ①건축허가 구비서류 ②준공검사원 제출시 민원인의 절차 불편 ③도로점용 사전 승인 ④전화시설 협의불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8조 제 1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 1조 6 항. 건축법시행령 제 135조, 제 125조 시 협조 사항 건축법시행령 제 135조, 제 137조 2 항	주택채권,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불허가서 환불이 곤란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가중. 준공검사원 제출시 전화국의 전화시설 검사필증 및 관계관서 의 정화조 검사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하는 절차상의 불편 도로점용 불허가시 건축공사불가 전화시설 협의 불편 및 시설용량 과중.	허가서 교부시 면허세 납부와 동시 첨부토록 요망 준공 검사원 제출로 허가관서가 단일 처리 요망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 점용 승인 신청서를 첨부토록하여 관계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승인요망. 허가관서 내부 협의로 대처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전화국과 건축주 간에 협의토록 요망.
전 남 지 부 ①건축허가사전협의에 따른 구비서류 1) 소방서협의(주택 제외) 2) 전화국협의(공통) 3) 정화위원회 심의(여관애 한함) 4) 미관지구심의위원회 심의(공통)	소 방 법 전신전화 관계법 교육관계법 허가청조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소방법의 규정한 바에의하여 소방관서로부터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신전화관계법의 규정한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사전에 전화 관서로부터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허가청 접수이전에 시교육청을 경유하여 도교육 위원회심의(월 1회 개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관심의용 도서 10부를 작성하여 심의(월 1회 개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허가청 파견 합동집무로 종합민원의 신속처리토록 요망 각허가청 파견 합동집무로 종합민원의 신속처리토록 요망. 1) 허가청 파견합동 집무 2) 정화위원회를 수시 개최로 민원 신속처리요망 1) 심의용 도서감축 2) 심의회 수시 계획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정 및 건의사항
5) 허가수수료주택채권 수도공제소화필증첨부	허가청조례 주택건설촉진법 내부부장관 승인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허가수수료, 주택채권, 수도공제소화필증을 각각 사전에 첨부 등록 규정하고 있음.	1) 불허가의 경우 민원인의 재정적 이중부담이 없도록 허가증 교부시 에 소화필증을 첨부토록 요망.
6) 벽돌 검사필증 첨부	공산품 품질관리법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벽돌 검사필증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가공 협회 발행)	1) 당해 감독기관에서 제품 생산과정 부터 철저한 검사와 2) 건축사로 하여금 필증첨부 강요지 양요망.
7) 정화조검사필증첨부	보건위생관계법	준공검사와 동시에 정화조 검사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허가청 위생계 발행)	허가청 자체내부 협의로 처리하고 건축사에게 첨부 강요 지양 요망.
8) 도보일시 적용허가신청	도로교통법	건축허가 신청시에 도면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전달되어 파출소에서는 현장조사후 경찰서에 전달된후 경찰서에서허가청으로 통보되는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음.	허가청에서 단일처리 요망
경 북 지 부			
①중복된 검사	건축허가 제도 개선책 지침	주택허가분에 대하여 년 2회 확인 감사의 감사원감사,내무부 감사,도청,시청감사(1년 정기감사 6회)를 실시함에 있어 처벌 위주 감사를 하고 있음.	년 2 회 확인 감사만 받도록 할과 동시에 처벌 위주를 떠나 지도 감사로 실시토록.
②건축허가시 사전 전화국 협의 신청	건축법 시행령 135조	연면적 100m ² 이상 건축물을 건축 허가하는 경우 전화 설치 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건축허가 신청전 사전 관할전화국에 검토인을 받는 과정에 각 전신전화국마다 사무 취급 통일성이 없으며 준공검사는 협의 공문에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를 소환 준공 신고를 별도 2부 작성 통신설비공사 협의를 경유 제출하고 있음. 회	사무 취급을 국단위로 통일성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준공시는 협의 공문으로 처리토록 요망.
③준공시 건축주가 벽돌 구입 영수증 첨부		준공 검사 신청시 건축주가 벽돌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음.	벽돌 공장을 관장하는 행정 당국에서 수시 감독을 대치하고 폐지 요망.
④대지의 전경사진 첨부	건축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제244호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의 전경 사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특수한 대지에 한해서 전경 사진 첨부토록.
경 남 지 부			
①건축허가시 구비서류	민원사무처리 규정 "별표 2"	1. 첨부서류 종류 1) 확인서 2)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3) 건축허가 신청접점표	확인서, 건축허가현장조사서, 건축허가 신청접점표는 내용의 중복사항이 많아 한가지 양식으로 줄일수 있음 (합동일 경우 매 양식마다 연대 서명)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정 및 건의사항
②준공신고 구비서류	도행정지시	4) 인감증명 (건축주) 5)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인감증명, 주소가 다를때) 6) 현장사진 2. 건축허가 신청서에 서류 접수와 동시 인자를 소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준공검사서류에 세멘트 가공제품 강도검사필증 첨부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은 첨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사진으로 현장 파악을 할 수 없으며 첨부할 필요성이 없음. 반려시에도 유효회 하기 위하여 허가처분 후 소인토록 해야 하겠음.
③건축허가 구비서류	울산시 내부결재	4. 전신전화국장의 전화시설 설계 사전 승인서 첨부.	매건마다 강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실시 검시치 않고 형식적으로 첨부하고 있으며, 모든 건축물의 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서 조적강도 확인서가 불필요하며 생산공장을 만위로 시험하는 제도로서 끝나야 되겠음.
④건축허가	건축법 시행령 159조 1항 1호	7. 인구 10만이하의 도시 및 읍, 면은 건설부 장관의 지정이 아니되고있음.	건축허가 신청시 전화국장의 승인서 생략하고 준공신고시 전화국장의 준공승인서 첨부.
⑤건축허가 구비서류	규칙 제1조제1항표중(1)	9. 배지의 전경 사진	인구 10만이하의 도시를 지정치 않으므로서 소규모 도시의 건축허가에 차질이 많으므로 조속지정토록 요망함.
⑥건축허가 구비서류	민원사무 처리 규정	10. 신청인 인감증명	실존하는 대지이며 주위 및 기존건물 지상장애물등이 있을때 사진 파악이 곤란함. 관계공무원 또는 건축사가 현지 답사 처리하고 있음.
제주도지부 ①건축허가 구비서류	행정지시	1. 인감증명 첨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주의 인감증명을 첨부토록 하므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부지증명 첨부 1) 대지의 증명은 등기부 등본으로 족하다고 사료되며 제주시의 경우 대지증명의 일환으로 부지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바 건축허가권자와 부지증명권자는 동일함에도 부지증명을 첨부케 하여 비용과 시간의 낭비등 민원인의 불편을 사고 있음. 2) 한편 부지증명을 발급함에 있어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등 간단한 내용만 명기하여 사실상 실효를 견우지 못하고 있음. 3. 대지의 사진 첨부	폐지를 요망 1) 부지의 확인은 건축허가 주무과하고 부지증명 주무과간에 상호조화(협조 전횡식)로서 시행토록 시정요망. 2) 지구, 지역명, 도로명, 도로폭등을 상세히 명시 하기를 바람. 폐지요망.
	건축법 시행규칙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정 및 건의사항
②착공계 첨부서류	행정지시	건축허가 서류에 대지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불편을 사고 있음. 1. 벽돌검사증서본 및 판매확인증첨부. 1) 시멘트 제품가공 무허가 업체에서 불량제품 생산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착공계 제출시 위의 서류를 첨부토록하고 있는 바 2) 벽돌의 소요량은 시공 과정에서 증감량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실상 소요량을 사전에 확인할수 있는 것이며 또 허가 업체의 실정에 따라서는 생산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다 업체에서도 수시 구입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착공전에 시멘트제품 가공업체를 선정하고 위 첨부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극히 형식적이며 민원인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사항임.	1) 준공신고시 사실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토록 시정하여 주시고 2) 무허가 업체는 권한있는 허가관에서 적극 단속토록 조치 바람.
③ 착공계 첨부 서류	오물청소법 제12조	2.정화조 신고필증 정화조의 설치는 대부분의 경우 본건물을 완공하는 단계에 가서야 시공하는 것임에도 법령때문에 착공전에 업자를 선정하고 설치 신고증을 첨부케 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법령을 개정하여 건축허가시 오물청소법에 의한 정화조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하고 준공 신고시 업자의 설치확인증을 첨부토록 시정할 것을 건의함.
"	건축법 시행령 제135조	3.전화통신 신고필증.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 특히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부터 전화통신의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이 설치하는 가능토록 하는 것이고 민원인이 요청시는 체신부의 실정에 따라서 전화통신설비를 해야하는 것인데도 착공전부터 전화통신 신고필증을 첨부케 하여 불편을 사고 있음.	준공신고시 첨부토록 시정할 것을 건의함. (조건부 허가요망)
④건축의관심의	건축법시행령 제 6조3항	건축법시행령 제 6조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내에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주도 건축미관심의지침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법령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를 제외한 미관심의대상은 일정한 도로망을 기준해서 심의지구와 대상을 축소 조정함은 물론 심의절차도 간소화하여 줄것을 요망함.

建築關係法規 改善意見

根 據 法 令	現行制度上의 問題點	是 正 및 改 善 事 項																																				
建築法 第42條의 2	○住宅建築工事に 따른 施工上에 있어서의 瑕疵等에 對한 責任을 無期限으로 工事 監理者가 專担한채 行政處分을 받고 있는 實情이므로 施工者等의 責任感이 결여되어 있음	○工事施工者 및 建築主에 對한 責任限界와 處罰 規定을 強化하여 不實違法 施工等의 發生所持를 根本的으로 防止할수 있는 措置가 澈실히 要망될 뿐 아니라, ○監理者의 責任期限을 工事瑕疵期間內로 하고, ○정부인정자재(K·S제품등)에 관한 하자는 監理者의 責任限界에서 除外토록 해야하며, ○監理業務에 相關이 없는 地籍에 關한 問題等에 對해서는 監理者의 責任限界에서 除外토록 是正建議 要望함.																																				
建築法 施行令 第23條 5項	○20層以上이거나 경간 30m이상인 建築物에 對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構造技術士의 構造計算에 의하여 構造의 安全을 確認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建築士法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資格을 사실상 격하시킨 조치로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타 法律에 의하여 建築에 關한 資格을 取得한 者가 建築士法에 依한 建築士의 資格에 優位한다는 것은 不合理하며 現實的으로 상호 모순되므로 폐지토록 要망함. (법의 뒷받침 없이도 하자없이 시행되어 왔으며 특수 구조등에 대하여는 법적절차 이전에 구조 기술 사와의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建築法 施行令 第167條 2項	○建築法 施行令의 改正施行으로 同令 第167條 第2項의 但書規定이 삭제됨에 따라 基準未達 垜地의 利用이 不可能한 實情임. (내통령령 제9193호로 1978. 10. 30 개정됨)	○現行 建築法 施行令 第167條 第2項에 但書規定(다만, 동일한 전면 도로에 연결한 2개 이상의 대지로서 일단의 대지에 각개의 대지의 경계선 부분의 가동보, 방화벽을 공용하고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로 볼수 있게 설계하여 동시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 군수가 당해 건축물의 외관 및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기존건축물의 방화벽을 공용하고 인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을 부활 삽입하여 기존인접 건물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케하여 개인 재산권의 보호와 아울러 세분화되어 있는 중심가의 토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배려를 건의함.																																				
建築法 施行令 第159條 1項	○垜地面積의 最小限度 規定에 있어서 商業地域은 200m ² 이며 幅 20m以上の 道路에 6m以上 接한 垜地는 330m ² 로 規定되어 있어 基準未達 垜地에 對한 利用이 不可能한 實情에 있음.	○既存 市街地에 對한 垜地의 最小面積을 완화하여 商業地域은 100m ² 로하고 幅 20m以上の 道路에 6m 以上 接한 垜地에 있어서는 165m ² 로 완화하도록 建議함.																																				
駐車場法 施行規則 第4條 2項	○路外 駐車場의 設備基準에 있어서 駐車形式에 따른 車路의 幅을 다음基準以上으로 하도록 規定하고 있어서 建築物 또는 대지의 폭에 따라 다소 不合理한 경우가 있음.	○營業目的이 아닌 駐車場 建物以外的의 屋內 駐車場 으로서 駐車台數 10臺 未滿은 同 設備基準適用對象에서 除外토록하고, ○駐車台數 10臺 以上の 駐車場에 있어서는 폭이좁은 대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기둥이 있을때에는 동 기준에 의한 차로의 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완화조정토록 建議함.																																				
車路의 幅 <table> <tr> <th>주차형식</th><th>출입구가 2개 이상 일 때</th><th>출입구가 1개일 때</th></tr> <tr> <td>직행주차</td><td>3.5m</td><td>5.5m</td></tr> <tr> <td>직각주차 평</td><td>7.6m</td><td>7.6m</td></tr> <tr> <td>60도대향주차</td><td>6.4m</td><td>6.4m</td></tr> <tr> <td>45도대향주차</td><td>3.8m</td><td>5.5m</td></tr> <tr> <td>교차주차</td><td>3.8m</td><td>5.5m</td></tr> </table>		주차형식	출입구가 2개 이상 일 때	출입구가 1개일 때	직행주차	3.5m	5.5m	직각주차 평	7.6m	7.6m	60도대향주차	6.4m	6.4m	45도대향주차	3.8m	5.5m	교차주차	3.8m	5.5m	車路의 幅 <table> <tr> <th>주차형식</th><th>출입구가 2개이상일 때</th><th>출입구가 1개일 때</th></tr> <tr> <td>평행주차</td><td>3.5m</td><td>5.5m</td></tr> <tr> <td>직각주차</td><td>5.5m</td><td>5.5m</td></tr> <tr> <td>60도대향주차</td><td>5.5m</td><td>5.5m</td></tr> <tr> <td>45도대향주차</td><td>3.8m</td><td>5.5m</td></tr> <tr> <td>교차주차</td><td>3.8m</td><td>5.5m</td></tr> </table> (위와같은 기준으로 할때 비록 자동차의 출입을 위한 회전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못할지라도 2~3회의 등차으로 출입이 가능함.)	주차형식	출입구가 2개이상일 때	출입구가 1개일 때	평행주차	3.5m	5.5m	직각주차	5.5m	5.5m	60도대향주차	5.5m	5.5m	45도대향주차	3.8m	5.5m	교차주차	3.8m	5.5m
주차형식	출입구가 2개 이상 일 때	출입구가 1개일 때																																				
직행주차	3.5m	5.5m																																				
직각주차 평	7.6m	7.6m																																				
60도대향주차	6.4m	6.4m																																				
45도대향주차	3.8m	5.5m																																				
교차주차	3.8m	5.5m																																				
주차형식	출입구가 2개이상일 때	출입구가 1개일 때																																				
평행주차	3.5m	5.5m																																				
직각주차	5.5m	5.5m																																				
60도대향주차	5.5m	5.5m																																				
45도대향주차	3.8m	5.5m																																				
교차주차	3.8m	5.5m																																				

根據法令	現行制度上の問題点	是正 및 改善事項
建築士法 施行令 第28条 第1項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建築士中 그 일부가 单独事務所로 登録을 更新코자할 경우 新規등록으로 간주 처리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등록신청 구비서류가 중복으로 제출되는 사례가 허다하며 이 현실적인 行政節次로서 不合理한 実情임.	○既 登録된 建築士事務所에 있어서는 合同 또는 单独事務所를 막론하고 “登録更新이 可能토록 改善하여 行政節次를 簡素化 要望함.
建築士法 施行令 第25条 3項 및 同 施行規則 第18条	○建築士法 施行令 第25条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同 施行規則 第18条에 의거 单独주택으로 規定하고 있고 单独事務所에서 单独住宅에 對한 建築士業務를 事實上 行할수 없도록 시행되고있을 뿐 아니라 綜合事務所에서는 이를 處理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개인에게 부여된 자격면허에 비하여 매우 불합리한 모순이며 建築 民願人에게 상당한 不便을 주고 있는 実情임	○建築士法 施行規則 第18条의 規定에 依한 “单独住宅”을 “20層以上이거나 연면적 30,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改正하여 建築士法 第23条 3項에 明示된 건축사 사무소 업무한계와 부합되도록 改善 施行을 建議함.
工業配置法 第7条 및 施行令 第8条規則 第3条	○工場設置의 申告를 함에 있어서 그 處理期間이 20일간으로 되어 있어서 民願에 상당한 不便을 주고 있는 実情임.	○工場設置申告 處理期間을 同 申告書 接受와 同時 또는 5日以内 處理(申告畢証交付)될수 있도록 改善되어야 할것으로 事료됨.
工業配置法 第7条 및 第35条	○工場設置申告를 함에 있어서 法 第7条 第1項 후단의 規定은 工事着工前에 申告토록 되어 있으며 法 第35条에는 工場設置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建築許可 等を 하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어서 이는 規定상호간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합리 하다고 봄.	○工場設置의 申告時期를 法 第7条 第1項 후단의 規定에 明示된 바와같이 建築許可를 得한 后 工場 “設置工事着工前”에 申告토록 함이 合理的이라 事료되오니 法 第35条후단의 規定中 “建築許可等を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工事의 着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改正토록 建議 要望함.
工業配置法 第7条 1項 및 施行令 第7条 第1項	○工場設置申告의 對象에 따른 工場의 範圍에 있어서 増加의 경우 기존공장건축 면적과 증설할 부분의 공장 건축면적을 합계한 面積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工場으로 되어 있어서 소규모의 부속건물 증축시에도 申告對象에 該當되므로 民願에 상당한 不便을 주고 있음. 따라서 申告범위의 완화와 세분화가 요망되고 있음.	○工業配置法 第7条의 規定에 의거 申告를 畢한 工場으로서 製品의 增産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増築 (소규모의 난방용 보일러실 등)의 경우에는 申告對象인 工場의 範圍에서 除外토록 改善하여 民願을 簡素化 要望 建議하오니 善處바랍니다.
汚物清掃法 第12条 3項 및 同規則 第16条 1項에 따른지침 (전설부령)	○建築物의 用途에 따른 液狀廢棄物 淨化槽의 處理對象人員 算定基準에 의하면 住宅의 경우 “延建坪 90㎡以下の 境遇에는 15人으로 하고 90㎡를 超過하는 延建坪面積 6㎡마다 1人을 加算한 容積의 淨化槽를 設置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現實적으로 볼때 建築主로하여금 필요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줄뿐아니라 자재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액상 폐기를 정화조의 處理對象人員 算定基準을 住宅의 경우 “延建坪 面積에 關係없이 10人以下 容積의 淨化槽를 設置토록 改善 建議함. (原則적으로 1가구가 거주하도록 된 주택에 있어서는 常住人員이 대부분 10人以下일 뿐만아니라, 더우기 常 用人員을 감안해 볼때 容積 10人以下의 淨化槽로서 도 充足될수 있을 것으로 事료됨)

新刊書籍案内 建築과 人間

供給처: 鍾路書籍(株) TEL. 722-2331

譯: 圓光大學校 崔 宗 鉉

法 科 建 築

崔 昌 奎

(新進建築)

人間은 長久한 歴史를 거쳐 오는 동안에 數 많은 法을 制定했고 廢棄했고 改正해왔다. 그리고 오늘도 또한 새로운 法을 制定해 내고 있다. 무릇 法이란 人間의 共同 社會 生活의 規範이고 秩序임에는 틀림없다. 또 法이란 人間의 倫理, 道德, 常識에 있어 最下線을 그어놓은 下 限値이기도 하다.

法에는 大陸系法과 海洋系法이 있다고 한다. 大概의 境遇 民主國家에서 海洋系이고 專制, 獨裁, 共產系 國家에서 大陸系法을 實施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民主國家이므로 海洋系法이라고 생각되나 法에는 몇가지 特殊한 本質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特色은,

- ① 어떠한 法이든 制定할 때에는 立法 精神과 趣旨가 반드시 있다.
- ② 法이 제 아무리 嚴해저도 違反은 根絶되지 않는다.
- ③ 朝令暮改하는 法은 複雜하고 矛盾만을 가져온다.
- ④ 지나친 細部制約은 剛一性을 強要하게 된다.
- ⑤ 法은 條文으로 成文化되어있기에 그 解釋이 내려졌을 때 其効가 나타난다.
- ⑥ 法 解釋에는 複數性이 있다.
- ⑦ 法이 法精神과 趣旨를 超越할 때는 秩序가 破壞된다.
- ⑧ 法은 지켜야할 者들이 制定하고 遵守하는 것이다.
- ⑨ 法은 萬人에 平等하고 特惠가 없다.
- ⑩ 法이 特定人이나 特定團體에 偏重될 때 그 社會는 危殆로와진다.

以上 가장 常識的인 法의 特性을 指摘해 놓고 우리 建築設計部門이라는 側面에서 그 周圍을 살펴보아야만 하겠다.

建築設計가 藝術과 技術이 습친 創作活動이라고 한다면 地球上 어느 國家도 이 創作을 制限할 法은 계정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그 課程이나 手段은 制限함으로써 結果的으로 創作自体에 어떤 制限을 하는 것이 되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다.

우리 社會에서 現存하는 建築設計에 關聯되는 數 많은 法令과 規定, 條例와 施行細則, 特例와 指示, 示達과 勸誘 等等을 前記 10個項의 法의 特質에다 비추어 보면 얼마나 많은 再檢討가 必要한가를 헤아릴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法은 法을 爲해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人間의 社會生活을 爲해 있는것이기에 法은 人間의 便에 서야 할 것이지 法의 便에 설 수 없는 것이다.

法은 지켜야 할 사람들이 制定해서 지켜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專門的인 職能業이면서도 이 部門의 法이 어디서 누가 어떤 法을 制定해내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오직 法이란 지켜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勿論 民主國家에서 國民全員이 立法에 參與할 수 없으니 立法議員을 選出하고 그 議員들이 立法을 하니 즉 지켜야 할 우리가 立法한 것으로 名分은 되어 있다. 또 職能代表나 地域代表 등의 專門家들을 立法部에 보내고 있는 있지만 그들이 立法部에 가서 우리의 所望하는 法들을 制定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法母文은 單語나 文章으로 되어 있으니 有權의 解釋이 내려질때 비로서 그 法이 執行 되는데, 여기서 有權의 解釋의 差異가 發生된다. 이것이 바로 法의 複數性인데 國民과 執行者와 差異, 上級法官과 下級法官의 解釋差異가 반드시 發生한다. 그래서 二審制가 採択되고 있는 것이지만, 官과 民의 差異 特別 專門分野에 關係되는 法規의 有權의 解釋이 官의 解釋이 無條件 優先한다는데는 異議가 없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은 잘못하면 行政力이 法을 超越하는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무릇 權力이란 쓰면 쓸수록 強大해지고 안쓰면 안쓸수록 弱화된다는 特質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亂用하기 始作하면 견장을 수 없고 權力即 法이 되고 社會 秩序는 混亂에 빠지게 된다는 原理가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見解는 近者 建築에 關한 法體系가 到底히 建築設計를 하는 建築士들의 머리로서는 整理할 수 없을 程度로 肥大多樣化해 가고 常識의으로도 理解가 안가는 法解釋에 얽매어지는 그러한 經驗을 가진 建築士가 漸次 많아졌다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나 意

見은 感情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近代國家의 法思想本質에서 出發해야 할 問題라고 생각되고 더욱 우리들과 같이 法專門家도 아닌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法思想의 本質이 理解될리 없지만 法令集 등을 뒤적거리다가 現行建築에 關係되는 諸法規에 對해 문득문득 일어나는 생각들이지만 法이 제아무리 嚴해도 違反建築이 根絶되지 않는 理由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만든 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根底에 깔린 생각에서가 아닐까? 若干의 違反이 있어도 보아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連結되는 것만 같다. 또 執行者側에서도 그런 傾向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며 여기서 우리가 만든 法이라는 自覺을 가질 수 있는 法이반어면것일까를 알아내는 일이 先決되어야만 이런 問題가 解消될 줄로 믿어진다.

또 建築確認이 되는 竣工檢査의 解釋도 統一되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中央과 地方·地方과 地方에 따라 다 다른 理由는 무엇인가. 法의 解釋理論上 複數性이 있다는것은 理解되나 設計者에게도 解釋은 있을 것이고 行政의 解釋이 無條件 優先한다는 것은 너무나 一方的이고 獨善의이 아닌가? 設計者가 了解할 수 있는 解釋은 親切히 해주므로써 修正에 應할 수 있게 常識과 合致된다면 法의 解釋도 一致될 境遇가 많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勅令修改하는 各種法規는 複雜과 矛盾과 混亂을 招來하고 만다.

行政側은 多數의 國民을 相對로 公共的인 立場에서 個個人的인 의사는 전혀 介意치 않고 獨斷的으로 剛一平等하게 規制하려고 한다. 때문에 우리는 建築確認時에 痛感하는 것은 行政力의 本質과 法規의 改竄性의 矛盾을 發見할 때가 많다. 建築은 社會的 資産으로서 長期間 使用된다는 大前提가 있다. 여기에 너무도 細密한 部分까지 規制를 한다면 이것은 剛一性과 強行性의 缺陷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특히 建築의 細部마감의 規制等은 表現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이 되고 人間生活環境創作이란 面에서 볼 때는 阻害要因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立法이나 執行側은 그들의 本質만을 優先시키고 建築의 本質이나 社會的인 役割等은 無視한다는데 그 遠因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建築에 關係되는 모든 法令들은 立法이나 行政을 爲해서 制定되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建築이란 一種의 社會的인 狀況을 爲해서였던가? 특히 專門分野에 關한 法들이 行政의 便利를 爲해 있다고 한다면 그 法은 이미 存在價值 조차 없는 것이고 그런 法이 橫行한다면 그 社會는 매우 위태로운 地境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와 反對로 法이 建築의 本質을 理解하는 法이고 解釋이 保護나 發展의 便에서 이루어진다면 人間의 住環境은 淸澄해지고 社會

는 文芸中興이란 狀態로 나타날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는 法의 權威와 尊嚴性은 理解되고 있지만 特例法이니 또 그로 因해 나타난 機構들의 橫暴를 잘 알고 있다. 예를들면 各機關에 있는 審議機構들의 組織이나, 役割을 말이다. 소위 審議機構란 建築設計의 專門性은 認定하는에서 나온 것인데도 그 組織이나 役割이 빛나갈 때는 施行이 精神이나 趣旨를 超越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境遇 美觀審議委는 그 地區의 美觀을 爲해 果然 어느만한 役割을 해 왔는가가 疑問이 되는것이고, 委員 거의가 建築專門家(그것도 上級) 인데도 美觀(造形, 色彩, 材料 등에 置重해야 할때)에 重點을 두기보다 内部的 平面計劃이나 階段 出入口의 寸法等에 心經을 쓰고 있고 또는 審議用圖面에 委員數 대로 의 寫眞이나 透視圖를 提出하라는 등 可笑로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社會狀을 如實히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式의 意識構造라면 美觀地區內的 設計는 그 委員들만이 할수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高級專門家들이 圖面을 解得 못해서 많은 圖面과 透視圖를 提示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며 建築設計에서 透視圖란 圖面解得이 어려운 建築主들에게 一種의 說明材料임에 不過한데 到底히 그 底意를 알 수가 없다. 審議委員이란 쥐꼬리만한 주어진 權限의 極大化로 權威을내세우는 그들에게 憐愍을 禁할 수 없다.

數年이 지나온 서울美觀地區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또는 惡化되는었지? 全部 그들이 責任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各 地方의 境遇도 同一한 條件下에 있고 提出되는 書類나 圖面の 種類나 部數도 審議方法도 各樣各色이다. 設計業務에 따르는 行政手續(契約, 收金 등)의 節次나 樣式도 各樣各色으로 다르니 이리등절한 經驗을 建築士들은 많이 겪어왔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같이 他法과의 關係에서나 建築關係法 解釋의 差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아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諸般 規定이나 制限에서 벗어나지 않고 複雜하고 多樣한 規制로 因한 剛期的인 “아이디어”나 大膽한 意圖는 固捨하고라도 行政面에 未熟한 우리들의 業務는 萎縮되기 마련이고 또 處罰을 받는 會員의 數는 그들의 摘發件數의 記錄만 높여주고 建築設計業務의 主된 目標에로의 길은 멀기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勿論 우리 사회가 이러한 潮流에 있음은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으나 그 中の 重要な 하나는 우리 自身들의 安逸한 姿勢나 不誠實도 作用되고 있다는 點을 생각할 때 自覺하고 自重해야할 點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弊 一言하고 世上萬事는 相對的인 原理下에 있다. 法만이 나쁘고 우리만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 서로가 生活하는 이 社會에 相互가 協力하고 理解할 때 우리가 온근히 바라는 善良하고 좋은 社會가 이룩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린 너무도 우리들의 業務에 關係 되는 法規에 대해 너무 無知, 無關心 狀態에 있는것 같이 생각되므로 法과 業務와의 相關關係를 서로가 더 생각보자는데 이글의 뜻이 있는 것이다.

建築關係法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法을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고 이 作業에 專門業의 立場에서 參與할 수는 없는가? 法解釋을 官一辺倒로만 해야 할것인가? 行政面에서의 圖面이나 書類의 樣式 種類 및 作成部數의 統一은 안되는 것인가? 建築士는 自己

가 制作하지 않은 圖面에 대해 連帶責任을 져야 하는가? 事務室의 規模가 即 大型設計를 할 수 있는 基準이 되는가? 建築이란 果然 圖一的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建築士는 適切한 報酬도 없이 官의 業務를 補助해야하는가? 司法權이 없는 建築士가 果然冷嚴한 監理를 할 수 있을까? 또 할 수 없으면서 責任은 져야하고 処罰은 받아야만 하는가? 官이나 建築主의 違法은 建築士가 왜 고이 져야하는가? 等等 헤아릴 수 없을 程度의 많은 疑問이 있으니 우리 自身들이 모여서 善意로 建設的으로 생각해 볼 必要는 없는가 하는에서 이글을 쓰게 된 것이고 이것이 今日的 社會問題임에는 틀림없은즉 이러한 社會問題를 當局에만 맡길일이 아니고 우리들끼리도 무엇인가 方策을 講究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야흐로 經氣沈滯로 建築設計等의 萎縮은 눈에 띄게 되고 雪上加霜格으로 設計自体에도 많은 制限이 加해지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다같이 이 問題는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技師 1,2 級·建築士·公務員 100% 合格을 위한 必須書!

最新 建築問題集(改訂版)

서울·京畿地區專門大學建築科教授會 編 / A5·5 과목 합본 3,000문제 수록 定價 7,500 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적산·재료, 건축설비, 건축법규

과목별 1,000여 문제 수록! 완벽한 내용!

“각 과목별 부록으로 과년도 출제문제 수록”

'81 建築法規問題解説

朴 泳 吉 編著

A5·404面 定價 4,500 원

建築施工積算問題解説

金 禎 炫 編著

A5·470面 定價 4,500 원

建築構造問題解説

朴 奉 星 編著

A5·400面 定價 3,800 원

近刊 建築設備問題解説

建築計劃問題解説(改訂)

蘇 陽 燮 編著
姜 秉 國

A5·368面 定價 3,500 원

소방기사 1,2 급·건축기사 1,2 급

建築材料問題解説

趙 道 衍 編著

A5·226面 定價 2,800 원

圖書 技 文 堂
出版

서울特別市 鍾路區 鳳翼洞154

☎ 764-4151·764-1149

부산 延 祿 街 ☎ 66-5686

◎全國有名書店에서 販賣中!

안정위에 다진도약 이룩되는 자주외교



“光化門의 異邦人”

“교보빌딩 주변 이야기”

光化門은 서울의 中心地이기 전에 우리나라의 심장이며 얼굴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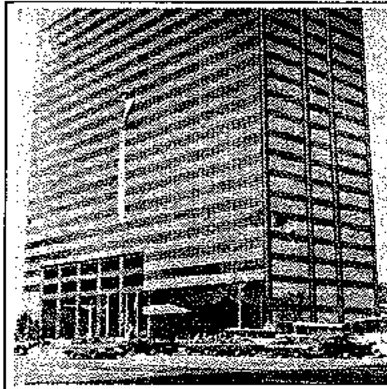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경제·문화의 맥박을 이곳 광화문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게한다. 비단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碧眼의 外國人이 와서 본다. 해도 냉큼 이곳이 코리아의 얼굴이고 심장임을 알만한 곳이다.

철벽같은 고층빌딩하며 雄志를 품은듯 등적한 건물들이 보논이의 심금을 사로잡고, 새삼 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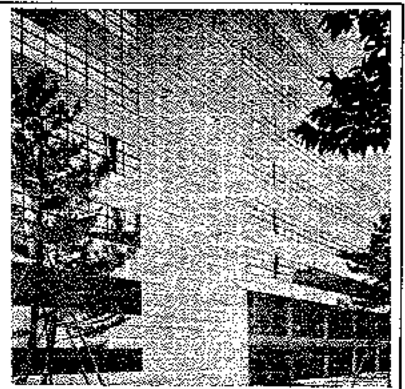
이 薈地에 최근 폭과 높이를 자랑하는 새 人物(?)이 등장해서 世人の 눈을 더 커지게 했으니 그가 바로 大韓教育保險社屋, 즉 교보빌딩이다. 한데 그 스캐일이나 단장한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의 탄생인데 우리나라를 자주 왕래하는 日本人들이나 우리나라사람중 역시 日本人들이를 자주하는 이들이 금새 고개를 갇웃하며 한다는 소리가 “어디서 많이 본듯한데...”한다.

알고보니 그 사람들의 눈설미가 꽤 정확해서, 우리에게 새 主人公인 교보빌딩의 형벌쯤되는 친구가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데 바로 駐日美國大使館이 그였다. 그러니까 두 主人公은 同胞兄弟間으로 設計者가 같은 美國人이라는 것.

한마디로 국산품보다 외제 좋아하는 우리습성탓인지 그정도 건물 짓는 것도 우리네 品質(?)을 못 미더워서 그 賤한 外貨를 취하며 꼭 그렇게 해야 했는가가 의문스럽다.



□ 교보빌딩



□ 주일미대사관

굳이 우리것을 남이 가로 채 가서 배가 아프고 해놓은 것이 마땅치 않아서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식의편협한 심정에서가 아니라 곳(光化門)이 곳인 만큼 우리도 이 정도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랑도 오가는 外國人에게 해서 나쁠것 없고, 더더구나 하필이면 이웃이면서도 결국 먼나라인 日本에 있는 건물을 닮은 것을 光化門이요 또「랜드마크」쯤 되는 건물도 세워놓아야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바로 눈앞에 제신 이순신장군 뵈기가 송구스럽다.

뵈게이지만, 日本을 자주 드나들던 그 건물 주인쯤 되는 분들이 등경에 있는 주일미대사관건물을 보고 그걸 그대로 광화문에 세우자고 주장해서 설계가「씨저펠리」씨에게 의뢰했는데 설계자가 당초 내놓은 안(案)은 지금것과는 다른 팔각형건물 세개를 높이가 다르게 배치한 것이었으나 건축주 교유(?)의 우격다짐에 콧대높은 外國人 설계자도 못 당하고 결국 평론가의 말대로 “作祟이 마치 던져버린것처럼 무책임한” 상태로 거기(光化門) 그렇게 놓여있게 된것.

建築主의 어거지가 비단 어제오늘의 골치거리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代表할만한 기업이고 더구나 광화문 네거리에「랜드마크」쯤되는 건물을 자을만한 힘을 가진 건축주라면 한번쯤 나라 안팎을 돌아볼줄 아는 안목이 있을법한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평론가들은 우리나라에 外國人이 지은 건물들이 더러웠지만 건축을역

시 우리손으로 저어야한다는 것이다. 건축물은 그나라의 정치·경제·문화사회의 영향에 민감하고 자연조건에 기막힌 변화가 요구되는 무생물이면서 숨쉬고 활동하는 생물체로서만 들어야하기 때문에 속사정을 잘 아는 우리네 사람에 의해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구태여 外國人이 관여한다면 엔지니어링부분에 전문경도로 그쳐야 적당하다고 협력의 한계를 긋는다.

아름다운 外觀 좋아하는 건축주의 의식구조도 문제지만 그걸 그냥 방관한 당국의 책임도 뒤숭숭하다.

끝으로 평론가는 작가의 의도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다고 꼬집고 “일종의 수집 취향같은것이 보이죠. 주차장 들어오는 부속빌딩이라든지 바로 뒤에 사마귀같이 온실이 붙어있고 지하 야케이트의 라이팅웨이 있는대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러한 것들이 마치 갈비뜯고 백다귀를 던져주는듯한 무례함을 느꼈어요, 굉장히 불쾌하더군요. 그러한 오브제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먼지라는 털어줄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을 보였으면 좋았을텐데...”

교보빌딩이 서있는 입장을 보는작도는 물론 각기 다르다. 다만 웬지모르게 갇쓰고 두루마기 입은 서양인이 우리네 시선을 흠뻑 끌고 있어하는 말이다.

부니 사람마저 한국인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겠다. 야니, 이미 그렇게 된수 있었지 않았는가-. <*>

청탁풍조 배격하여 문화국민 긍지갖자.

朝鮮時代의丹青

張 起 仁

(三成建築)

本稿는 지난달 20일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 丹青의 제 모습을 찾기위해 연 「한국단청연구」세미나에서 張起仁(삼성건축설계사무소대표)씨가 발표한 조선시대의 단청 내용을 옮긴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단청의 문양과 影藺 방법 등이 전통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과 전통기법이 사라져 가고 있어 이를 되찾아 체계화하지 제송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처음 마련된 것이어서 큰 의의가 있다.

1. 개 황

이조시대는 각종문물이 혁신적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건축술이나 단청술은 그 조창기에는 고려대의 것을 거의 답습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나 점차 정치 사회의 발전에 따라, 또 사회제도문물의 개편에 따라 서서히 변천발전되어 중기이후로는 독자적인 발전이 시도되었고 또 후기에 미치는 제 요소가 내포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정치, 종교, 경제, 사회제도의 많은 개편은 건축문화에도 다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따라서 건축의 단청 기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끼쳐졌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권위적 건축인 궁실·공공건물 사원건물의 조영에 따른 건축술의 발전 못지 않게 단청술에도 그 사용재료나 처리방법등에 점차적인 진보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우수한 건축인과 단청인의 창안과 제송이 끊임 없이 되었을 것이 엿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이웃 중국의 교류 영향이 컸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자주적 정신도 확립되면서 보다 한국적인 것으로 발전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2. 단청술의 계승

단청술은 이조초기에는 그 답습을 벗어 나서 다른 신기법이 도입될 수도 없어 대체로 전대에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시대가 흐르면서 모든 문물이 서서히 개발되며 또 의형도 진보되어 갔으며 1500년대말 임진란을 계기로 사회혼란과 암흑기를 맞아 침체 되었다가 이조중기에는 많은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

1800년대 이후의 이조후기에는 이조시대의 생숙기를 거쳐 1900년대에는 외세에 물리는 궁핍한 경지에서 몰락되는 경향이지만 오로지 종교적 사원건축, 충효교육의 발전으로 유교적 서원·향교의 건축도 부단하게 계속되었다.

단청의 시대적 구분도 이상과 같이 건축양식의 시대구분에 따르면 될 것이나 건축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는 것이 단청이기에 앞서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단청의 기본

단청의 기본을 살펴보면 1. 대상건물의 규모내용, 2. 단청도로의 안료·색채·색감, 3. 단청문양의 구성·장식성, 4. 단청기법상 화원의 양성·숙련도·창의성 등으로 대별하여 진다.

(1) 대상건물은 ① 궁실·국방·국가공공시설, ② 불교사원, ③ 유교건축(문묘, 서원, 향교, 사당등) ④ 사회공공적건물·사가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유구불수 없는 산업시설, 사회시설로서의 건축물등은 단청의 시도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며,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2) 단청도로는 고래로 안정되고 좋은 빛이 나는것은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다 썼음이 분명하다. 당채(唐彩)란 말이 있듯이 연기 힘든 좋은 안료는 중국제품이었을 것이나, 조선조 후기 또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질과 양의 면에서 서구에서 수입된 것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양홍·양청·양녹 등의 어휘는 빛의 농담을 헤아리는 초빛·삼빛에 대한 이빛(二色)이 아니라 서양에서 왔다는 뜻으로 양홍(洋紅)·양청(洋靑)등으로 해석된다. 이들 중에 자연산암채(岩彩)가 아닌 공업적 화학(化學)제품으로서 색상이 선명하고 비교적 안정색인 우수한 것도 있어 재래에 없던 색도 있다. 고급안료는 모두 희귀한 암채라고 하지만 화학적으로도 희귀한 안료가 있고 현재는 생산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 희귀물감은 다음과 같다. 1.로즈드레(황금비), 2.에머럴드그린(비취색), 3.매더카마인(洋紅色), 4.차이니스버밀 리언(朱紅色) 등은 생산이 거의 중단되고 있으며, 5.테르베스(綠褐色), 6.오래울린(白光色), 7.갸버지(雌黃) 등은 생산이 극도로 제한된 것이다. 갸버지는 월남·태국동지의 장글나무에서 뽑아내는 것이

머 매디도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식물에서 뽑는 것이다. 이것을 원료로 하는 물감이 로즈드레, 디프로즈매더 매더 카마인, 또 주홍색인 피어플매더 등이다. 에버럴드 그린은 구리와 비소를 배합하여 만드는데, 그 독성이 너무 강하여 제조생산이 금지된 상태이어서 대용 화학제품으로 하게되었다.

단청안료와 현대안료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일반적으로 색상이 짙으며 또한 안정색조이나 우리가 느낄때는 약간 둔하고 어두운 것이다. 상대의 비단 옷감이 어둡고 두터운 색감이 들고 현대비단이 밝고 알파한 기분이 드는 것과 같다.

(3) 단청문양을 그 주요부분으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머리초·반바탕머리초, ② 휘·뱃바닥, ③ 먹제화·먹당기·먹구기·귀구기, ④ 실·바탕색, ⑤ 질림·비녀장, ⑥ 금물, ⑦ 풍혈·별화·포벽, ⑧ 첨가장식(添加裝飾)

(가) 머리초

머리초의 중심화(中心花—主花라고 할 것이나 朱花와 혼동되어 이것을 쓴)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쓰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연화, ② 녹화, ③ 주화(朱花) 등이고 후세에 이를 수록 이들의 변형으로 모란·국화등 다양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의 성격·시대적 배경 조류·상징적 의의등에 따라 즐겨 쓸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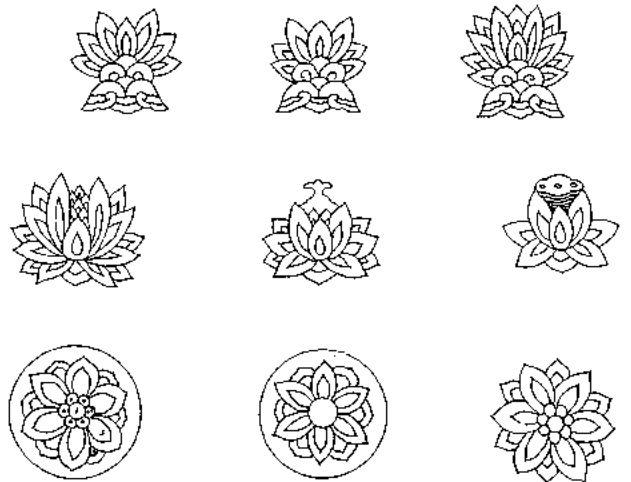
① 연화는 입면적·입체적 표현과 평면적 표현으로 하고, 또 파련화(波蓮花)등으로 표현된다. 특히 연화는 불가의 이상을 상징하는 것이여서 불교사원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머리초의 하나이다. 그러나 연화는 불교적 꽃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동양에서는 인간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꽃으로도 인식되기 때문에 어디에나 쓰이고 있으며 또 정신적으로 애정과 이상을 상징하는 이상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화는 불사원뿐만 아니라 궁궐이나 공공건물 또는 민가의 영역에 까지 쓰인다.

연화의 입면적·입체적 표현이 머리초에는 많이 쓰이지만 평면적인 표현도 건물의 각부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연화는 후세에는 주로 옥색·장단·주홍의 3빛으로 하지만 상대로 올라가면 옥색·장단 연화와 아울러 녹화·청화등도 보인다. 단적으로 말하여 밝고 화사한 색감이 초기보다 중기이후에 많이 쓰이게 되었고 또 고려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보다 큰 점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그 영향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연화는 평면형으로서는 6판화(六瓣花)나 응연(凝蓮)등이 쓰이나 때로는 4판화(四瓣花)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만 4판화는 보통의 연화꽃잎 표현이 아니고 판련화의 형식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화(朱花)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6판연화의 화판 사이사이에 다시 6판의 꽃잎끝이 들어갈때 이것을 배주기라 한다. 대개 6판연꽃잎이 옥색·장단·주홍으로 도채되면 배주기는 청화·녹화 등으로 도채하고 있다.



1. 쥬밤울
2. 주 화
3. 화 변
4. 배주기

六花

② 녹화는 곱쟁이(단청에서 곱쟁이라고도 한다)를 좌우에 놓고 딱지로 연결된 것이며 주로 녹색을 칠하므로 녹화(綠花)라 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옥색·장단·청색·석간주로 도채한 예도 있다. 이렇듯 녹화는 초록꽃이란 뜻이지만 광의로는 곱쟁이로 된 고사리 모양의 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상적인 곱쟁이는 기하학적 도법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 표현방법에 여러가지가 있고 또 채색도 녹색 것들때에 하엽색을 넣고 또한 먹제화를 내부에 까지 두르므로 2빛 또는 3빛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녹화는 은녹화·반녹화가 있고 이중으로 거듭 그린 겹녹화가 있다. 또 녹화의 색채를 것들때에 황실·청실·녹실을 두르고 그 안쪽에 초빛과 2빛의 녹색·청색의 곱쟁이로 도채하기도 한다. 이때 겹색으로 되는 색사이의 먹제화를 넣을때 (황색들때)와 넣지 아니할때 또는 백실을 넣을때 (녹색들때에 청색녹화)가 있다. 이와 같이 두색을 쓴 녹화를 겹색녹화라 한다.

곱쟁이 즉 녹화의 형상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보통 나선형으로 그린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 우묵하게 오금을 넣은 오금곱쟁이 즉 오금녹화, 모양이 변형된 형태의 변형녹화등이 있다. 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쇠코형에 가까운 것도 있다.

녹화 곱쟁이에는 번엽이 감겨질 때가 있다. 특히 이것은 머리초에서 중심화의 것들때에 두르는 수법에 주로 쓰이지만 단순한 녹화장식에도 쓰인다.

번엽이 감기는 수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 한방향으로 감기지만 옛것은 교대로 반대방향으로 감긴 것도 있

다. 변엽의 모양은 1오금 또는 2오금으로 하며 2빛 또는 3 빛으로 도채한다. 또 여기에 수를 백선 또는 색선을, 2줄 또는 3줄을 넣어 장식 할 때도 있다.

녹화의 형태는 전기로 올라 갈수록 변형적인 자유분방하고, 또한 조형미와 균형미를 지닌 곡선형을 구사하여 작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때로는 전체 외곽이 타원형을 이루면서 오금을 넣은 곡선으로 돌리고 있다 이와 같이 상대로 올라 갈수록 세련되고 자유로우며 아름다운 곡선으로 녹화를 표출하고 있으며 색채도 녹색과 청색을 많이 쓴 듯하다.

녹화는 머리초의 중심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둘레에 배치하여 장식하는 문양으로도 이용되고 또 간단히 도채면의 장식에도 이용된다. 그뿐아니라 단일구획문양 즉 뿌리초(마구리면의 문양), 착고, 개관초에도 이용된다.

딱지는 머리초의 중심화의 갓둘레에 그린 물레녹화의 사이사이에 걸쇠로 넣은 것인데 넣지 아니할 때도 있다. 또 딱지 대신에 향아리를 놓거나 파련화를 넣을 때도 있고 향아리에는 꼭지점을 찍을 때도 있다.

머리초의 중심화는 물레녹화를 쇠교형의 녹화로 두른 예도 있고 딱지 향아리외에 파련 또는 화편을 넣은 예도 있다.

③ 주화(朱花)는 4 판화(四瓣花)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파련화처럼 그린것도 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은 파련화도 나무어 6 판화로 하는 것이 정상이라 하겠다.

주화는 짧은 머리초에 많이 쓰이며 때로는 반주화를 쓰기도 한다.

이것은 또 연화머리초의 향아리의 옆에 둘러대기도 하는 것이다. 초기 또는 고려대의 머리초에서는 이 주화둘레를 옥색 또는 장단으로 도채하고, 여타는 대개 녹색이나 청색으로 도채되는 경우도 있었다. 연화가 불가의 중앙하는 꽃으로 상징되는 것과 달리 주화는 모양이 단순하고 색채가 아름다운 관계로 궁실이나 민간 공공건물에 많이 쓰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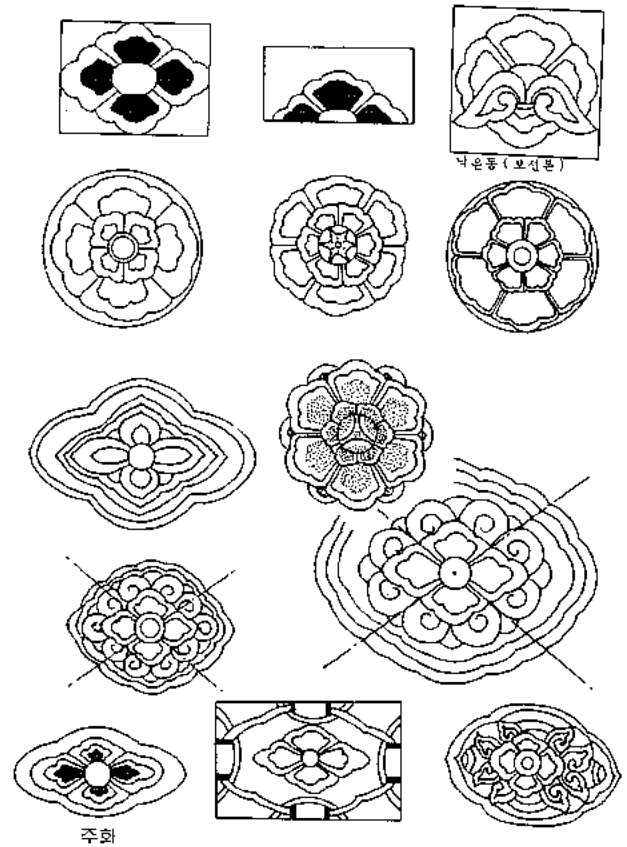
(나) 휘 · 뱃바닥

휘는 머리초의 양쪽에 도채되는 색대(色帶)로서 그것이 지나는 의의도 있지만 단청의 색감이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것은 ① 직휘, ② 눌휘, ③ 빗휘(바자휘 · 인휘)로 대별된다.

① 직휘(直揮)는 머리초의 시작부에 직선적으로 표현된 색대로서 이것을 대별하면 먹직휘 · 색직휘 · 금직휘 등이 있다.

먹직휘는 먹으로 비교적 넓게 넣은 색대로서 그안에 매 화점 또는 가는 당초문을 간단히 넣기도 한다.

색직휘는 초빛과 2 빛 또는 3 빛의 색대를 직선적으로 넣고 중간에 분선을 넣는다. 분선을 넣는 일을 새끼라 한다. 여기에 별화를 넣을때도 있다.



초기에서는 분선제기에 대신하여 먹선으로 채고 그 바로 좌우 옆에 분선을 넣기도 하였다.

색직휘는 중기이후에 많이 쓰이게 되고 아울러 색상도 후기에 이룰수록 옥색 · 장단 · 주홍이 혼히 쓰이게 되었으며 초기 이전에는 녹색 · 청색도 쓰인듯 하다.

금직휘는 색대는 좁게하고 중간에 쇠교결련 또는 금문을 넣은 것이다. 이것은 사원건축의 화려한 금단청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② 뱃바닥, 부재의 밑면에 색대를 도채한 것이며 보통은 부재길이 방향으로 길게 도채하지만 때로는 가로색대를 도채할 때도 있다.

③ 눌휘(橫揮)는 널휘라고도 한다. 이것은 머리초 또는 간단한 인휘 · 바자휘 끝에 다시 눌러 대는 휘이다. 대개 2 빛 까지를 쓰고 있다. 눌휘는 짧고 작은 부재인 부연 · 연목 등에 알맞고 그리기도 편하여 잘 쓰인다.

눌휘는 장대재의 재축에 가로 방향으로 넣되 오금이 든 곡선으로 된다.

④ 인휘는 머리초의 끝에서 人자로 뻗어지고 중앙에는 무지개처럼 된 곡선으로 교차되는 색대이다. 그 나비는 일정하지는 아니하나 대개 4 ~ 6 cm 정도로 하고 초빛 · 2 빛 또는 3 빛까지, 휘의수는 1 ~ 7 휘 정도 까지 한 예는 있으나 보통 3 ~ 5 휘 정도가 가장 많다.

휘의 색은 각색을 다 쓰고 있으나 상대에서는 녹색 · 청색 등을 쓴 예가 많고 적색 · 황색계는 비교적 적게 쓴 것 같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옥색 · 주홍 · 석간주 · 다자 등

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⑤ 바자휘(把子揮)는 인휘와 같이 되지만 그 안쪽 끝부분이 연장되어 다른휘에 엮어져 짜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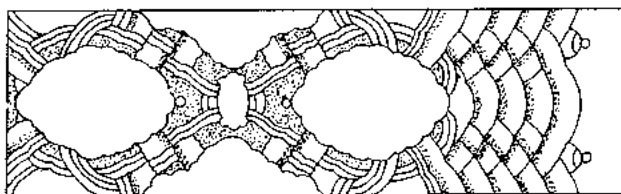
인휘나 바자휘는 곡선의 중간에 오금이 들어 간다.

바자휘는 주로 금단청에 잘 쓰이고 모로단청에서는 인휘가 많이 쓰인다.

인휘나 바자휘는 머리초의 둘레녹화에서 시작하여 녹색과 황실을 누르고 뺀어 나갈 때도 있으며, 황실 밑으로 엮어서 나갈 때도 있다. 또 때로는 황실다음부터 시작할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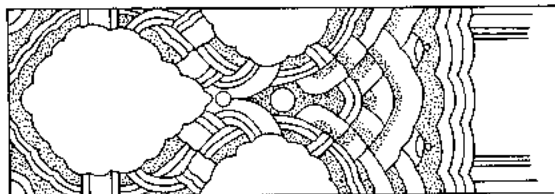
인휘나 바자휘의 교차부 끝짜기에는 항아리를 놓으며 다음은 바탕색(하엽·석간주 등) 다음에 녹색과 황실로 두르고 먹당기를 그려서 머리초의 휘를 끝 맺을 한다.

끝짜기에 넣는 항아리 대신에 쇠코 주화, 연화 주홍녹화 등을 쓸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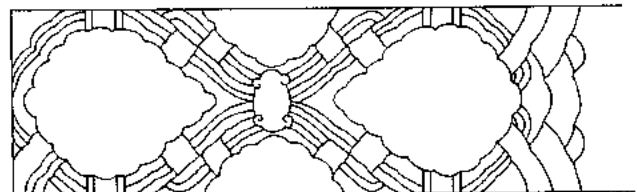


1 바자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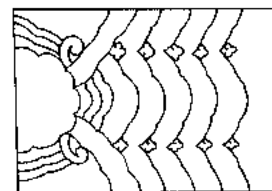
2 휘 바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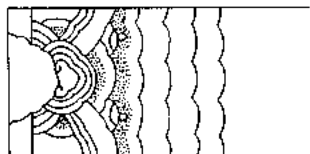
11 바자휘



13 인 휘



14 인 휘



15 인 휘

(다) 먹계화·먹당기·먹긋기·시막·시문

먹계화(墨界畵)는 먹기화(墨起畵)라고도 하며 색대 사이에 치는 먹선이다. 먹기화는 색대의 갯줄레를 정리하고 강조 또는 끝맺음으로 효과가 크다. 이것은 초기 이전에는 운필도 좋고 선도 가늘게 되었으나 후세에 이르면서 운필은 강직하게 되고 굵게하여 끝 맺음이 간략하게 처리된다. 비교적 금단청에서는 가늘게, 모로단청에서는 굵게 쓰는 편이다.

화려하고 밝은 색대의 갯줄레에 먹기화로 하면 어둡고 무거운 감이 드니까 분선을 두른다. 분선은 연화·주화 등에 주로 쓰이지만 청·녹등에도 쓰인다.

먹당기는 단청문양의 갯줄레 또는 시작부에 굵은 먹선을 넣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로 잔수북 웅건하게 굵은 편이 아닌가 생각한다.

먹긋기는 먹당기를 가칠면에 길게 또는 가로 넣어 장식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먹긋기에도 옆에 분선을 넣는데, 먹선과 분선의 나비는 2 : 1 ~ 2 : 1.5 정도로 분선의 나비를 가늘게 한다.

먹긋기등도 먹긋가로 할 때와 색백첩을 넣고 먹긋가 또는 색긋기로 한다. 보통은 바탕색에 먹긋기로 한다.

(라) 실·바탕색

바탕색은 문양을 넣는 밑바탕으로 한 가칠 도채면을 말할 때도 있으나 머리초·휘 등의 주위의 여백, 즉 다음도 채면과 사이의 도채색을 말한다. 머리초나 휘끝의 바탕색은 보통 하엽(荷葉)으로 하고 다음 녹색과 황실로 간는다 그러나 옥색·석간주 또는 청색 바탕으로 한 예도 있다. 대개 밝은색인 옥색·청색은 좁은 바탕에 이용된다.

실의 배치는 바탕색 다음에 녹색을 놓고 인접하여 황실을 놓는데 이때 황실 좌우에는 먹계화를 두지만 바탕색과 녹색 사이에는 두지 아니한다. 보기에는 녹색실이 초빛이고 하엽이 2 빛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황·녹실이 머리초·반바탕머리초 또는 변엽문양 주위에서 실이 3교차 되는 부분을 삼보살이라고 한다. 삼보살은 서로 거위져서 질러지기도 한다. 초기 또는 고려대의 실은 녹색·청색도 쓰고 그 모양도 쇠코곡선으로 이어 나간 것도 있으며 오금을 두되 한쪽에 들때와 어긋나게 둘 때도 있다.

(마) 질림·비녀장

질림은 온질림과 반질림이 있고, 직선적으로 한것과 곡선적으로 된 것이 있으며, 가로 질릴 때와 빗질릴때가 있다. 질림에는 또 오금을 넣는 것이 보통이다.

질림은 머리초 주변에서 바탕색과 녹색을 누르고 황실에 질려지기도 하며 황실까지 누르고 다른 바탕색에 감겨들기도 한다. 빗질림은 휘의 연장으로도 보이며 감겨든 휘로도 간주된다.

비녀장은 장구머리초등에서 황실과 녹색이 접근하는데 두어서 앞뒤의 머리초를 날개매는 구실을 한다. 중기 이후에는 비녀장형식이 확립되어 지나, 상대에서는 상당히 변화있는 문양을 넣어 결어매거나 연결하고 있다. 비녀장 대신에 고리·쇠코 등으로 할 때도 있고 변형녹화등으로 가리는 경우도 있다.

(바) 금문

금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기하학적 문양과 자유곡선 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하학적문양은 원형·정삼각형·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지는 도양(圖樣)으로서 이것들은 혼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다채로운 색상으로 도채되어 이를 다 예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자유곡선을 이용한 도안으로서는 싸리당초(가는당초문) 또는 운문등이 쓰이고 있다. 대체로 단청에서는 기하문양이 주가 되며 당초문 등은 순각판·천장·개관 등 중요하지 아니한 부재에 당초 일 따름이다.

금문을 넣은 단청은 사찰등에서 가장 많고 궁실이나 여타전물에서는 삼가는 편이 아닌가 한다.

(사) 풍혈·별화·포벽

풍혈은 넓은 뱃바닥의 일부에 넣는 단독 또는 연속 문양으로 추녀·사래·대량등에 쓰이며 별화는 휘의 안쪽등에 넣는 문양이다. 특히 별화의 도안은 용트림·불상·선도를 비롯하여 산수화·화조궐지등의 그림으로 도채되고 있다.

포벽은 사찰에서 불벽이라고도 하며 불벽에는 불상을 위시하여 화조 기타 불가에서 숭앙되는 사물을 표현한다.

(아) 첨가장식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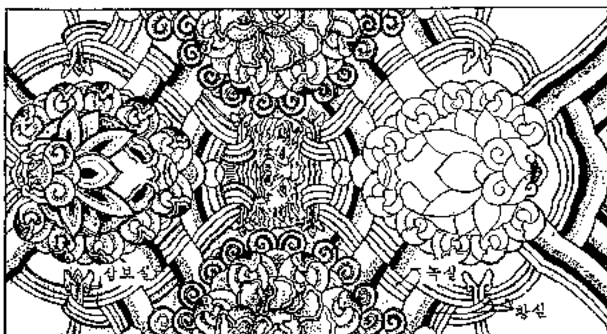
머리초·휘 등의 일부에는 녹화·파련화 등을 배치하여 장식한다. 이와 같은 예는 사찰건축 특히 조선조 중기이전의 단청에서 잘 나타난다.

이상 단청의 부문문양에 따른 도안과 도채를 개관하여 예거하였으나 보다 세론이 정리되어야 하겠으며, 색채 또한 계열을 찾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4. 건물별 단청

단청을 연구분류하는데는 시대별, 기법별 또는 건물대 상별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건물대상은 시대별로 추정될 수 있어 단청의 시대도 그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나 후세에 개채된 단청도 있을 것이므로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별로 단청을 살펴보는 ① 궁궐과 국가공공건물, ② 불교사찰건물, ③ 유교·서원·제자 및 ④ 일반공공 건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녹 · 조빛 — 2 빛및하임 — 먹선 — 분선

(가) 궁궐·공공건물의 단청

궁궐은 불교사찰과 다른 인간의 존엄성과 애호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불가에서 즐겨쓰는 것은 될수 있는 대로 피하며 국태민안을 위주로 하는 문양과 색채로서 궁궐의 권위와 평화가 상징되며 국민의 감성을 높이는 뜻에서 밝고 건전하고 호화스러우면서도 웅장한 기품이 드는 것으로 표출된다. 공공관서나 지방청사 또한 궁궐에 따랐던 건물의 격식에 따라 단청의 격식을 맞추었다.

궁궐에서도 연화등 불교사찰에서 제일로 하는 문양을 쓰기도 하였으며 적기적소에 썼을 뿐 비교적 삼가는 편이고 파련화·주화등이 보다 안온감과 호화로운 색감으로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루(城樓)단청은 강력한 표현과 힘찬 채색으로 된 것보다 신뢰감이 있든다고 할 것이다.

(나) 사찰의 단청

불교사찰의 단청은 고려대에서 융성한 탓으로 조선조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단청술을 구사하여 계승되었으며 중기이후에는 다소 치졸한 것도 보이고 있으나 인간이 종교에 대한 끊임없는 귀의는 이를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시킨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화를 비롯하여 휘채색 금단청등 다양 다채롭게 펼쳐진다. 그러나 조선조 초의 슬기롭고 창의적인 단청술이 중기이후부터 형식화되고, 허례적인 것이 엿보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전대를 모방하는 단청으로 담보하는 것이 되었다. 더우기 후기에 이르러서는 일량도 많아지고, 단청화원의 기술저하, 창의성 결여 등으로 더욱 높은 경지로 이끌어 오르지 못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청술이 계승되고 또 꾸준히 노력하는 화원도 있어 훌륭한 작품이 남겨지고 있다.



통도사



선운사



부인대소사



전등사

(다) 유교건물의 단청

유교는 한민족의 생활신앙이며 생활철학이 담겨진 것으로 긍정된다면 불교·기독교 기타 종교적 신앙의 밀바탕에는 우리의 생활철학인 유교정신이 깔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속하는 건물로서는 조상숭배의 으뜸인 종묘를 위시하여 선열성현의 묘당, 선조를 모신 가묘 등이 있고 이를 위한 능묘의 제각·제설도 있다. 또 이를 본받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문묘·서원·향교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유교건물의 단청에서도 유교정신으로 구현되어 화려하지 아니하고 천하지 아니한 고상한 기품과 겸양의 미덕을 찬양하는듯 굿기단청으로 우아하게 꾸미되 부분적으로 모로단청을 넣어 그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도색에 있어서도 찬란하지 아니하나 선열위인의 유덕이 빛나듯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잊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서도 능묘의 제각 또는 이에 따르는 비각등은 그의 위덕을 그리는듯 보다 아름답게 단청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건축이라고 간소하기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선조·위인성현을 모시는 묘우나 비각을 우리는 보다 미려하게 꾸미고자 하는 마음은 후손으로서 옳은 길 아닌가 한다. 그 성격에 따라 보다 간결하면서도 맵시있게 꾸미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단청도 그 정신에 따라 때로는 간소하게, 때로는 빛나게 도채하고 있다.

㉔) 향리 공공건물 및 사가

향리의 공공건물은 정자 등이 있으며 사가에서는 단청하지 아니하나 비각 등은 제대로 단청하고 있다. 이것은

5. 각 건물의 단청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역사적 건물의 단청을 예거하고 그 시대와 단청의 특징등을 비교해야 하지만 간단히 다를 수가 없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중에서 도안으로 예시한다.

6. 결 어

도채재료, 문양등은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들의 연구발표가 있고 또 기법등은 많은 경력을 쌓으신 단청 전문가들의 공이 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다 많은 연구조사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우리가 탐구하는 단청이 과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래를 도모하는 한국의 색채, 우리들의 색깔으로 조화되게 진전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

◎ 글을 보내주십시오.

“建築士”誌는 회원여러분들의 입과 귀와 눈을 대신하는 다목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릇을 잘 사용하느냐 못사용하느냐 여부는 전적 회원여러분들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會誌, 쓸만한 그릇으로 키우는데에는 물론 회원 여러분들의 그 뻔뻔한 作品이 얼마나 많이 실리느냐에 따라 좌우되죠. 하오니 언제든지 아래와 같은 구분으로 글을 보내서서 여러분들의 “그릇”이 건강하게 살찌도록 힘써주세요.

☐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

☐ 시 / 수필 / 풍토 / 취미사진작품

☐ 각종 경조사 / 그밖에 동정 / 소식

☐ 각종작품 / 논문

☐ 그밖에 뭐든지 좋고요.

※ 보내실 때는 가급적 원고용지에 써서 보내주시고요. 필자 사진과 원고 관련사진도 보내주시면 더욱 좋아요. 한문은 꼭 필요한 부분만 쓰시고요. 꼭 원고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보낼 곳은 협회본부편집실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설계작품 · 논문 모집”

특히 올해는 신체장애자의 해 입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한 그들을 위해서는 색다른 환경,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서 건축분야에서 身障者를 위한 특수건축을 연구한 회원님들이 여럿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연구하신 論文 종류의 글이거나 혹은 設計作品을 會誌에 發表해서 그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원고절이나 그밖에 제한은 없으며 사진을 보내실 때는 선명한 흑백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동형 태양열

축열벽의 활용

田 燦 珍

(喜雲建築設計事務所)

1. 태양열 이용의 현실화.

태양열의 이용이 현실화 단계에 있고 집열판을 이용한 주거, 공공시설이 건축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기술적인 진보가 상당히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별다른 부속시설을 갖출필요가 없으며 그 성능이나 내구적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수동형(Passive Solar System) 태양열 이용에 관하여는 그 계량적인 분석과 실험이 큰 진전이 없는것은 안타까우며 에너지 소비절약을 모토로 정부에서 보조하는 지원금의 혜택도 수동형의 태양열 주택에서는 그 부분이 모호하여 이에대한 연구점토와 개발이 요청된다. 또한 태양열 주택의 개념도 능동형(Active Solar System)에 대한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수동형

(표-1)

동기 평균 외기 온도	(조적재) 축열벽 면적 / 난방면적*			
	36° N/L	40° N/L	44° N/L	48° N/L
(1)				
20° F (-6.6°C)	· 71	· 75	· 85	· 95
25° F (-3.8°C)	· 59	· 63	· 75	· 84
30° F (-1.1°C)	· 50	· 53	· 60	· 70
(2)				
35° F (1.6°C)	· 40	· 43	· 50	· 55
40° F (4.4°C)	· 32	· 35	· 40	· 44
45° F (7.2°C)	· 25	· 26	· 30	· 33

(표-2)

동기 평균 외기 온도	(물) 축열벽 면적 / 난방면적*			
	36° N/L	40° N/L	44° N/L	48° N/L
(1)				
20° F	· 52	· 55	· 65	· 80
25° F	· 45	· 47	· 55	· 64
30° F	· 36	· 39	· 45	· 55
(2)				
35° F	· 28	· 31	· 35	· 40
40° F	· 23	· 25	· 29	· 32
45° F	· 17	· 18	· 20	· 24

(자연순환식) 태양열 주택의 설계에 기초적 자료 및 더 테일의 수집분석과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국내의 실험치는 기초적인 자료에 불과하므로 외국의 실험결과치와 설계자료를 수집정리 하였다. 또 수동형의 여러방식 전체에 대하여는 약간 광범위한 느낌이 있으므로 건축 계획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고 비교적 간단히 적용할수 있는 축열벽(Thermal Storage-Wall)에 대하여 설계의 기본방법과 실제 실험결과, 디테일을 검토하였다.

축열벽의 설계.

축열벽은 남향의 2중유리로 막힌 부분이 태양열을 받도록 설계되며 이때 필요에 따라 실내채광을 위하여 창을 낼수 있다. 축열재는 물이나 조적재등 어떠한 재료도 가능하며 실내마감 재료도 제한할 필요는 없다.

1) 축열벽의 면적산정

이중유리로 피복된 축열벽이 태양열을 흡수하여 충분한 양의 열량을 복사 대류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은 다음표(표-1)에 의해 산정할수 있다. 이때 유리면에 의한 단열정도는 열 손실이 8Btu/day/sq. ft. fl./°F 이의 경우이며 이보다 열손실이 적을 경우에는 적용수치를 조정할 수 있다.

2) 축열벽의 재료 및 상세.

축열벽의 면적은 위표에 의해서 구하여 진다고 볼수 있으나 난방장치로서의 효율은 벽두께, 재료, 표면색채 에 좌우된다. 축열벽이 너무 얇으면 주간에는 과열되고 야간에는 냉각되어 버릴것이고 너무 두꺼우면 열원으로서 의 축열벽의 효율이 떨어질것이다.

*난방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중 난방이 필요한 순면적임.

**축열벽에 수평으로 겨울이나 금속재의 반사재를 부설한 경우 위표 수치의 67%, 야간에 열차단막을 부설한 경우 위표수치의 85%, 두개를 모두 설치한 경우 위수치의 57%의 비율로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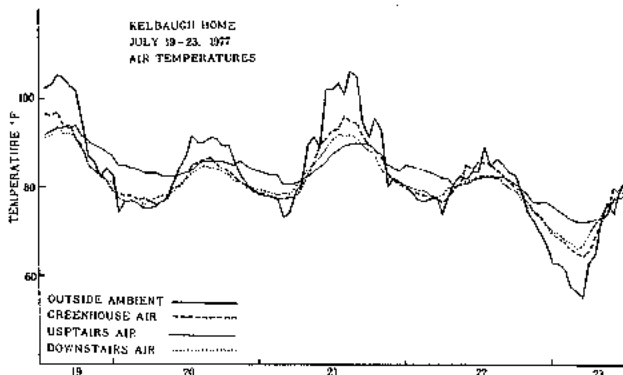
실패(1) 북위42° L에 위치한 지역으로 1월평균 기온이 31.4° F인 경우 물축열벽을 적용한다면 난방면적 1m² 당 0.41m²의 축열면적이 필요하다.

1) Kelbaugh House.

설계 Doug Kelbaugh, Sangjoon Lee.
 건물주 Doug Kelbaugh
 주거형식 Single family, 1 unit
 면적 $1,850\text{ft}^2$ (Base ment 200ft^2)
 ($170.6\text{m}^2 - 18.44\text{m}^2$)
 축열형태분류 Trombe wall & green house.
 위치 Princeton New Jersey
 위도 $40^\circ 21' \text{N}$
 고도 100 feet
 기후조건 Heating dd: 5,100
 Design Temp: 0°F
 Insolation(Jan, day): $638 \text{ Btu}/\text{ft}^2$

켈보우씨 주택은 트롬 축열벽을 사용한 전형적인 수동형 태양열 주택으로서의 좋은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1975년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축열벽의 성능과 효과에 대한 실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점도 그 자신에 의해 언급되었다.



(FIG - 1) 1977년 7월 19~23일의 온도기록표.

2) 켈보우씨 주택의 구조(Dia-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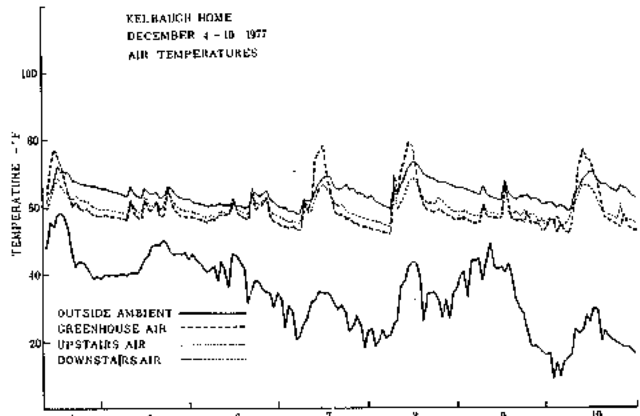
집열면적 - 남쪽에 면한 약 3/4의 면적이 이중 유리로 된 집열면적으로 쓰인다. ($615\text{ft}^2 - 56.7\text{m}^2$)
 일층의 반정도는 온실로 되어 있고 이 면적은 남측벽의 양단부분을 포함하여 약 313ft^2 (28.85m^2) 이다.

축열 - $15''$ (38cm) 두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된 트롬식 축열벽이 태양열에 의해 더워져서 축열되는 것이 주 열원이 된다. 콘크리트 슬라브와 온실바닥 슬라브 온실에 있는 8개의 드럼통에 있는 물이 보조 축열조 역할을 한다.

보조장치 - ●개스 온풍로 ●벽난로 ●육실전용 250watt 적외선 히터 3개.

온수공급 - 온수는 개스바나를 쓰는 온수공급장치에 의해 공급되며 태양열 장치와는 별개로 되어 있다.

조절장치 - 하절기에 과열을 배출시키기 위한 램퍼와 전기팬·온풍노는 자동온도조절장치로 조정.



(FIG - 2) 1977년 12월 4~10일 온도기록표.

열공급과 축열벽의 작동 - 동절기에 낮게 뜬 태양은 이중유리로 피복된 $15''$ 두께의 축열벽을 거의 직각으로 쏘인다. 특수 흑색도로로 칠하여진 축열벽에 흡수된 태양열중의 일부는 태양열의 파장보다 더큰 파장으로 재 복사된다. 이때 우리는 저주파의 열을 잘 통과시키지 않으므로 재복사된 열의 약 2/3는 유리면과 축열벽사이의 공간에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하여 더워진 공기는 연돌효과에 의해 실내의 찬공기를 끌어들이고 상부의 개구부를 통해 실내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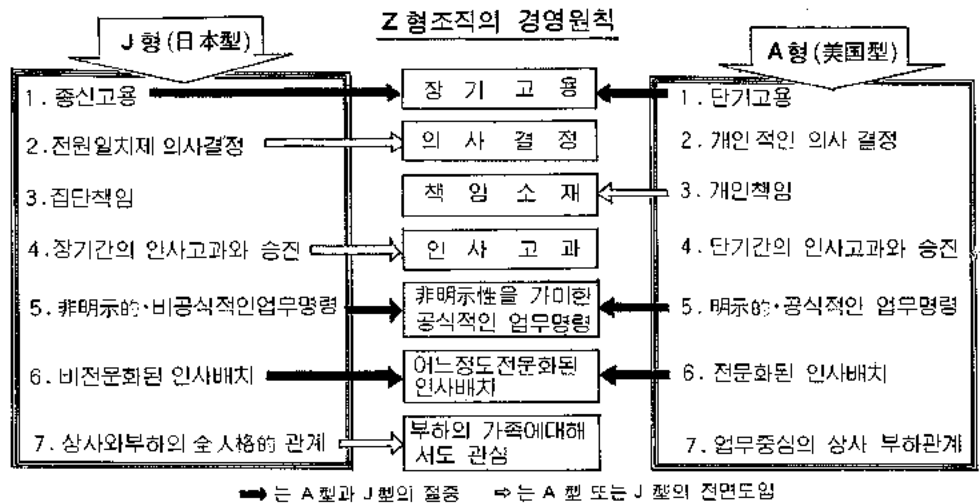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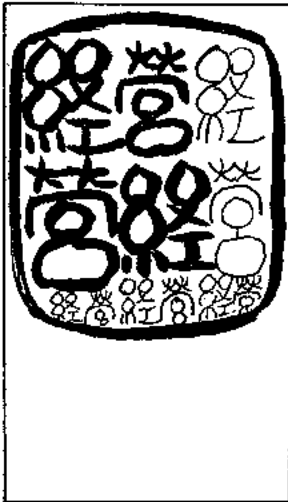
이러한 대류의 연속이 실내온도를 상승시키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내벽쪽까지 상승시킨다. 더워진 콘크리트는 실내쪽의 낮은 온도쪽으로 열을 방출하고 야간에도 복사열은 실내온도를 계속 유지시킨다.

대류현상을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상부 개구부에 얇은 포리에틸렌 필름을 부착하여 관찰한 결과 벽면에서 약 50° 정도 벌어지는 활발한 현상을 보였다.

우기에나 흐린날이 계속 될때는 온풍로가 작동하여 열을 공급하는데 3면의 외벽의 단열이 잘되어 있어 ($U=0.05$) 온풍로의 크기는 작아도 된다.

하절기의 태양의 고도가 높아 집열면에 쏘이는 태양열은 일차 반사되고 축열되는 열은 지붕에 장치된 환기팬으로 배출된다. 야간에 식은 축열벽은 주간에 실내의 열을 흡수 방출함으로써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준다.

온실은 하절기에는 가려주어야하고 내부에 설치한 드럼통의 물이 온실내의 열을 흡수 야간에 방출시킴으로써 과열을 막아 준다. (*)



새로운 경영방식 “Z理論”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간에 하나의 업(業)을 꾸려나가는 데에는 나름대로 경영방식, 혹은 경영관(經營觀)이 서 있어야 한다.

되는 대로 또는 그때 그때 적당하게 넘어간다면 늘 그자리, 그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남보다 뒤지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美國이 돈도 많고 科學도 앞서 있으나, 企業에서의 人事管理, 生産性 면에서는 늘 日本에 뒤져 이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여왔다.

작은 離職, 상하간의 意見충돌, 연대의식의 결핍 生産性的 저하 등이 美國式經營方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골치거리였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는 美國의 그것을 아주 쉽게 뛰어넘어 經營組織상의 문제가 거의 없이 잘 돼 나가고 있다.

그래서 경영학자들이 美·日 양국 기업경영방식을 비교연구해서 가장 合理的인 최신 경영기업이라고 내놓은 것이 최근 미국경제계를 떠들석하게 만든 「Z理論」.

더구나 「Z理論」은 세상에 태어나 자마자 反映시비에 휘말려 더욱 有

名해졌는데, 그 정도는 책이 發刊되자 곧 美國內 40대 베스트셀러 가운데 33위를 차지 한 정도라고. 어쨌든 요즘 미국과 일본 財界를 휩쓰는 經營新技法인 「Z理論」을 모르면 기업을 한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정도인 경영의 새로운 기법을 알아본다.

□ J형+A형=Z형

Z理論은 日本式경영(J형)과 美國式경영(A형) 技法가운데 장점만을 골라 체계화한 것으로 美켄리포니아大的 윌리엄우치교수가 만들어 낸 것이다.

우치교수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기업의 경영원리와 家父長的인 溫情주의가 지배하는 일본식 경영방식을 혼합해서, 故더글러스 맥그리거 교수(MIT大)가 분류한 X 이론과 Y 이론을 연장한 Z 이론을 탄생시켰다. 主要개념을 미국이라는 사회적 틀속에 일본식의 경영원리를 끼워 넣은 것이다.

맥그리거 교수의 X·Y 이론 중 X 이론중 X 이론은 ① 보통 사람은 일

을 싫어하고 피하는 속성이 있고 ② 때문에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개개인을 강제, 통제하고 위험을 취하며 ③ 또 책임을 회피하며 의욕을 과시하지 않고 안전한 것을 택하려 한다는 것, 반면 Y 이론은 X 이론의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X형의 사람은 下向式으로 다루어야 한다면 Y형인 사람은 자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理論에서 한걸음 발전시킨 이상적인 경영형이 Z理論인 셈이다. Z 이론은 조직내에서의 인간관계를 밀접하게 다져 기업의 生産性を 높히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 기본 根幹은 △ 장기고용 △ 의사 결정의 一致 일치제 △ 人事考課의 장기간 고려평가 등이다. 특히 상하간의 관계가 단순히 밀접한 관계 뿐만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가정문제까지 깊게 관심을 기울이는 생활 공동체적인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Z理論은 경영학분야에서 美國의 권위를 되찾겠다는 야심적인 신흥이론이기도 하다. *

海外建設工事

(I)

都 强 會

(상호住宅)

I. 概要

本 工事は Saudi의 産業電力省에서 発注된 것으로 Saudi 東部地域의 Hohuf, 中部地域의 Qasim, 西部地域의 Makkah 等 三個地域에 工業団地가 造成計劃되어 東部地域의 Al-Hohuf는 高麗開發(KDC)에서 建設하며 中部地域의 Al-Qasim은 太平洋建設(PCC)에서 建設中인바 여기서는 主로 英國의 特許製品으로 構成되는 Space Deck의 鉄骨構造에 對한 것으로 본인이 있었던 Al-Qasim 現場에 對한 것을 紹介코자 한다.

II. 工事内容

가) 土木工事

敷地整理工事, 道路鋪裝工事(團地内 延長 4km의 Ascon 鋪裝), 排水路工事(粘土와 石綿 Cement로 製造된 Pipe), 酸化處理槽工事, 물탱크 工事等.

나) 建築工事

行政庁建物, 경찰서建物, 消防署 建物, 中央遊步場 建物, 教會, 6個의 工場建物, 守衛室(안내소)等.

다) 機械工事

냉·난방 시설, 환풍시설, 급수시설等.

라) 電氣工事

變電室工事, 케이블공사, 街路燈工事, 變壓器工事等.



Space Deck으로 세워진 消防署 構造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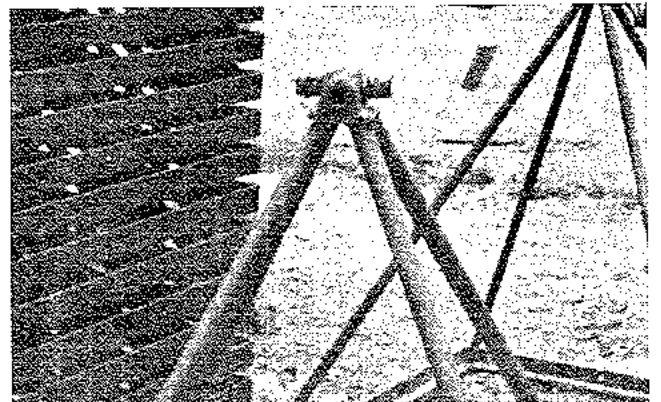
III. Space Deck 構造란?

가) 一般事項

Space Deck은 몇개의 單純한 反復性의 單位를 使用

한 Space frame에 基礎를 둔 鉄骨構造이다.

最初의 Space deck 建物は 1954년에 英國에서 設計되어 그동안 많은 研究試驗과 經驗을 土臺로 끊임없이 全 世界的으로 近代建築에 必要한 構造形態로 널리 使用되고 존경을 받고 있다. 特히 Space Deck은 大規模의 工場建物, 슈퍼마켓 水泳場等 Span이 큰 規模나 Saudi 같이 氣候가 건조한 地方에 널리 使用되어진다.



Space Deck 單位 構造形態인 Pyramid.

이 Space Deck의 Pyramid 形態의 單位는 어떤 單純한 單位 形態를 一方向 또는 二方向 Span 지붕이나 바닥構造와 結合시킨다.

나) Space Deck 構造系統 單位의 記述.

Space Deck 單位는 開口된 四角에 基礎를 둔 Pyramid를 逆 Arch한 것이다. 九棒($\phi 27$) 對角線 形態의 部材는 Angle ($50 \times 40 \times 6$)의 네 모서리 꼭대기와 만나고 Pyramid 形態를 中心으로 配置된 Boss에 한 點에 모이게 한다. 單位는 다같이 볼트로 된 Angle 테두리와 頂點에 오게한다. 各 Pyramid의 頂點의 Boss는 안쪽으로 主 木束을 通하여 나사의 나선줄을 받고 二次的인 木束의 연결을 爲한 必要한 나사의 나선줄 交叉 기둥이 공급된다. 나사의 나선줄은 빔을 處理가 잘되게 正確한 처짐으로 휘어오른 지붕形態로 알맞게 取扱되어 左右로 나열되어 진다.

[剪断 單位]

固形体棒은 九棒 對角線과 Angle 테두리 增加를 爲해 剪断力 狀態로 만나도록 必要한 内測의 場所에 配置된다.

[목음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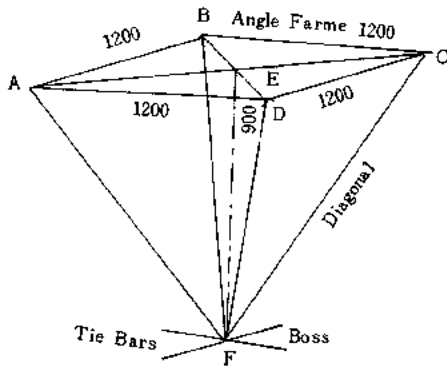
Beam 部材 下部 兩測의 主 單位와 直接 二次的으로
목음수 있는 棒 形態에 Boss와 연결되는 高張力 鉄筋棒
임.

[Angle 테두리]

四角 Angle 테두리는 가끔 構造的으로 不必要한 Py-
ramid의 모형이 충만될 때 속이 채워지는것 같이 使用되
어 진다.

IV. Pyramid 單位의 寸數 및 特性

가) 1209系



(그림-1) Footing F₁

(1) 1209 & 1209x

- 꼭대기 Angle 테두리 : 50×40×6 RSA (BS 4360 Gr 43A)
- 斜線 : 27 / 지름×3.2 CHS (BS 4360 Gr 43C)
- Boss : 鍛造 (BS 970 EN 3A)
- 목음棒 : 20.6 지름의 丸棒 (BS 970 EN 9T)
- 볼트 : 12 지름의 I.S.O 等級 6.9

(2) 寸數 (交點에 알맞은)

- A.B=B.C=C.D=D.A=1200
- E.F=716 (Angles의 CG에서 목음棒의 中心線까지)
- A.F=B.F=C.F=D.F=1100

(3) 밀바닥弦 (20.6 Dia)

steel 55 / 65 Tons / sq. inch 張力強度
36 Tons / sq. inch 產出應力 (556N / mm²)

段部 나사의 나선줄 7" / 8 BSF

나사의 나선줄의 밀둥 面積 0.452 in² (292mm²)

產出목음棒의 張力

$$= \frac{556 \times 292}{10^3} = 162 \text{ KN}$$

(4) 上部弦 (2 / 50×40×6 RSA)

上弦의 局部的인 彎을 爲하여 가장 나쁘게 만들어진 木
섬유 salb의 지붕 덮개 (補強 channel 로 製作한 中央點의
荷重)

(5) 荷重

表面	0.75	} 1.3KN / m ²
50mm 木 섬유	0.29	
3 겹 Felt	0.15	
잔 자갈	0.11	

힘 (力) Per 1200 Bay = 1.2² × 1.3 = 1.87 + S. W
angle = 1.88KN

局部的인 彎

$$= \frac{1.88}{2} \times \frac{1.2}{4} = 0.282 \text{ KNm}$$

(6) 斜線 部材 (引張)

$$P_t = 155 \text{ N/mm}^2 = \text{面積 } 2.43 \text{ cm}^2 \text{ 許容 引張力}$$

$$= \frac{155 \times 2.43 \times 10^2}{10^3} = 37.7 \text{ KN}$$

垂直 構成 阪分 = (작업하중)

$$= \frac{716}{1110} \times 37.7 = 24.4 \text{ KN}$$

(7) 斜線部材 (壓縮)

$$\frac{1}{r} = \frac{0.7 \times 1110}{8.46} = 92 \quad PC = 89 \text{ N / m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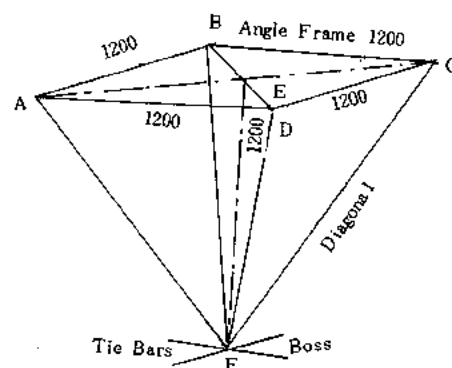
許容壓縮力

$$= \frac{89 \times 2.43 \times 10^2}{10^3} = 21.6 \text{ KN}$$

垂直構成分子 (작업하중)

$$= \frac{716}{1110} \times 21.6 = 13.9 \text{ KN}$$

나) 1212系



(그림-2) Footing F₂

(1) 1212 & 1212×

●꼭대기 Angle 테두리: 50×40× 6 RSA (BS 4360 Gr 43A)

●斜線: 27 / dia×3.2 CHS (BS 4360 GR 43C)

●BOSS: 鍛造 (BS 970 EN 3 A)

●묵음棒: 20.6 지름의 丸棒 (BS 970 EN 9 T)

●볼트: 12지름의 I.S.O 等級 8.8

(2) 寸數 (交點에 알맞는)

●A. B=B. C=C. D=D. A=1200

●E. F=1159 (Angles 의 CG에서 묵음棒的 中心線까지)

●A. F=B. F=C. F=D. F=1437

(3) 밑바닥 弦 (20.6 Dia)

Steel 55 / 65 Tons / Sq. inch 張力 強度 36 Tons / Sq. inch 産出 応力 (556 N/mm²) 段部나사의 나선줄 7"/8 BSF 나사의 나선줄의 밑둥 面積 0.452 in² (292mm²) 産出 묵음棒的 張力

$$= \frac{556 \times 292}{10^3} = 162 \text{ KN}$$

(4) 上部 弦 (2/50×40× 6 RSA)

上弦의 局部的인 힘을 爲하여 가장 나쁘게 만들어진木 섬유 Slab 의 지붕 덮개 (補強 Channel 로 製造한 中央点 의 荷重.

(5) 荷重

表面.....	0.75	
50mm 木 섬유.....	0.29	
3 겹 Felt	0.15	1.3KN/m ²
잔자갈.....	0.11	

힘 (力) Per 1200 Bay = 1.2² × 1.3 = 1.87 + S. W

Angle = 1.88KN

局部的인 힘

$$= \frac{1.88}{2} \times \frac{1.2}{4} = 0.282 \text{ KNm}$$

(6) 斜線部材 (引張)

Pt = 155N / mm² 面積 = 2.43cm²

許用引張力

$$= \frac{155 \times 2.43 \times 10^2}{10^3} = 37.7 \text{ KN}$$

垂直部材 (작업하중)

$$= \frac{1159}{1437} \times 37.7 = 30.4 \text{ KN}$$

(7) 斜線部材 (壓線)

$$\frac{1}{r} = \frac{0.7 \times 1.437}{8.46} = 119 \text{ PC} = 61 \text{ N/mm}^2$$

許容壓縮力

$$= \frac{61 \times 2.43 \times 10^2}{10^3} = 14.9 \text{ KN}$$

垂直構成分子 (作業荷重)

$$= \frac{1159}{1437} \times 14.9 = 12 \text{ KN}$$

V. 基礎設計內容

가) 荷重狀態

(1) 지붕

活荷重	0.5
40mm thk conc. slab	0.85
斷熱材와 防濕紙	0.05
金屬 decking	0.14
space deck 自重	0.26
設備 (機械 및 電氣)	0.5
Total	2.3KN / m ²

(2) 바닥 (中二尺)

活荷重	4.0
칸 막이	1.0
마감	0.15
Conc. deck	2.85
金屬 decking	0.15
鉄骨作業	0.2
天障 + 設備	0.5
Total	8.85KN / m ²

(3) 바람

基本風速 = 44m / s

S₁ = 1.0 S₂ (2B : 7.5m) = 0.81

S₃ = 1.0

設計風速 = 36m / S ∴ q = 0.8KN / m²

나) 計算公式

(1) 符號

○ f_s: 鉄筋의 單位應力

○ f_c: conc 의 單位應力

○ A_s: 鉄筋의 斷面積

○ K: 中立軸表面의 有効 깊이까지의 깊이의 比

○ j: 한쌍의 저항의 有効 깊이까지의 팔의 比

○ P: 鉄筋比 (A_s / B. t)

○ q_s: 表土壓

○ r_s: 흙의 單位重量

○ r_c: conc 의 單位重量

○ r_{av}: 흙 및 conc 의 平均單位重量

○ v_c: conc 의 許容單位剪斷應力

○ u: 鉄筋表面單位面積當 接合應力

○ f_c': conc 28일의 壓縮強度

○ p: 活荷動

○ P_T: 總荷重

○ A: 基礎面積

○ h: F.F.L에서 基礎의 總두께

○ M: Bending Moment

○ d: t = 25mm

○ t: 基礎의 두께

○ B: 基礎 넓이 (길이)

○ V_s: 剪斷面積

(2) 計算을 爲한 주어진 狀態와 應力公式

(a) 計算을 爲한 주어진 狀態

i) 應力기둥面積 $300 \times 300\text{mm}$, $350 \times 350\text{mm}$

ii) 活荷重 : $p \text{ (kg/cm}^2\text{)}$

iii) $f'_c = 21\text{N/mm}^2 \rightarrow 21.4 \text{ kg/cm}^2$

$$f_c = 1/3 \times 21.4 = 7.13 \text{ kg/cm}^2 \rightarrow 65 \text{ kg/cm}^2$$

iv) $q_a = 5.5 \text{ ton/m}^2$

v) $r_s = 1.8 \text{ ton/m}^2$

vi) $r_c = 2.5 \text{ ton/m}^2$

vii) $f_s = 1,400 \text{ kg/cm}^2$

viii) $v_c = 0.03f'_c \approx 6 \text{ kg/cm}^2$

ix) $u = 0.08f'_c \approx 15 \text{ kg/cm}^2$

(b) 計算을 爲한 應用 公式

$$i) q_a = \frac{PT}{A} \quad P_T = \frac{P}{1 - \frac{h \times r_{av}}{q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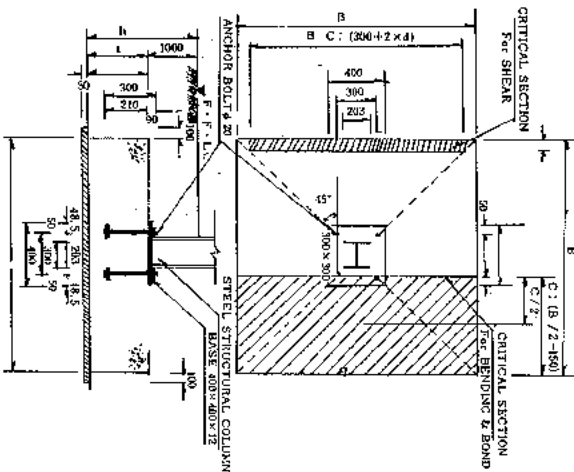
ii) $K = f_s \cdot p \cdot j$ or $1/2 \cdot f_c \cdot k \cdot j$

$$K = \frac{1}{1 + \frac{f_s}{N \cdot f_c}}$$

$$iii) t = \sqrt{\frac{M}{K \cdot B}}$$

$$iv) A_s = \frac{M}{f_s \cdot j \cdot d}$$

다) 計算式



(그림1)

(1) H-Beam, 볼트간격 300mm 일 때

● 基礎 F_1 :

① 最大活荷重 : $P = 2.346\text{kg}$

② ru (가정 $t = 30\text{cm}$)

$$r_{av} = \frac{\{r_s \times 1\text{m} + r_c \times 0.3\text{m}\}}{1.3} = \frac{\{1.8 \times 1 + 2.5 \times 0.3\}}{1.3} = 1.961 \text{ (t/m}^2\text{)}$$

③ P_T

$$P_T = \frac{P}{1 - \frac{h \times r_{av}}{q_a}} = \frac{2.346}{1 - \frac{1.3 \times 1.961}{5.500}} = \frac{2.346}{1 - 0.463} = \frac{2.346}{0.537} = 4.369\text{kg}$$

④ B (基礎幅)

$$A = \frac{4369}{5.500} = 0.794\text{m}^2$$

$$B = \sqrt{A} = \sqrt{0.794} = 0.891\text{m} \rightarrow \text{決定하다.}$$

$$B = 0.9\text{m}$$

⑤ 正味上向壓力

$$2.346 \div (0.9 \times 0.9) = 2.896 \text{ (kg/m}^2\text{)}$$

⑥ Moment 의 計算

$$M = 2.896 \times 0.9 \times \frac{0.30^2}{2} \times 100 = 11.729\text{kg} \cdot \text{cm}$$

⑦ 두께의 計算 : t

$$K = \frac{1}{2} \cdot f_c \cdot k \cdot j$$

$$K = \frac{1}{1 + \frac{f_s}{N \cdot f_c}} = \frac{1}{1 + \frac{1,400}{10 \times 65}} = 0.317$$

$$j = 1 - \frac{K}{3} = 1 - \frac{0.317}{3} = 0.894$$

$$\therefore K = \frac{1}{2} \times 65 \times 0.317 \times 0.894 = 9.21$$

$$t = \sqrt{\frac{M}{K \cdot B}} = \sqrt{\frac{11.729}{9.21 \times 90}} = 3.76\text{cm}$$

物工量에 따라 "t"는 30cm로 決定된다.

$$\therefore d = 30 - 2.5 = 27.5\text{cm}$$

⑧ 剪斷面積

$$B' + 2d = 30 + 2 \times 27.5 = 85\text{cm}$$

$$\text{그래서 } v_s = \frac{(0.85 + 0.9)}{2} \times 0.0025 \times 2,896 \div 63\text{kg}$$

$$v_c = 6 \text{ kg/cm}^2, j = 0.894$$

$$\therefore d = \frac{63}{27.5 \times 6 \times 0.894} = 0.43\text{cm} < 27.5\text{cm O.K.}$$

⑨ A_s 의 計算

$$M' = 11.729 \times 0.85 = 9.970\text{kg} \cdot \text{cm}$$

$$A_s = \frac{M'}{f_s \cdot j \cdot d} = \frac{9.970}{1,400 \times 0.894 \times 27.5} = 0.289\text{cm}^2$$

$$\therefore A_s = 1.131 \times 5 \text{ No.} = 5.655\text{cm}^2 > 0.289\text{cm}^2 \text{ O.K.}$$

⑩ 接合은

$$V_a = 0.8 \times 0.9 \times 0.3 \times 2.896 = 626\text{kg}$$

$$u = 15\text{kg/cm}^2$$

$$\text{그러면 } \Sigma = \frac{626}{15 \times 0.894 \times 27.5} = 1.697\text{cm}$$

⑪ 기둥 底面에 있어서의 方位角의 應力은 $2.346 \div (30 \times 30) = 2.61 \text{ (kg/cm}^2\text{)}$ (65kg/cm^2 O.K.)

(2) H-Beam, 볼트 간격 350mm 일 때

● 基礎 F_2 :

① 最大活荷重 : $P = 8.976\text{kg}$

② rav (가정 $t = 30\text{cm}$)

$$r_{av} = \frac{\{r_s \times 1\text{m} + r_c \times 0.3\text{m}\}}{1.3}$$

$$\frac{\{1.8 \times 1 + 2.5 \times 0.3\}}{1.3} = 1.961 \text{ (t / m}^2\text{)}$$

㉞ P_r

$$P_r = \frac{P}{1 - \frac{h \times r a v}{q_a}} = \frac{8,976}{1 - \frac{1.3 \times 1.961}{5,500}} = \frac{8,976}{1 - 0.463} = \frac{8,976}{0.537} = 16,715 \text{ kg}$$

㉟ B (基礎幅)

$$A = \frac{16,715}{5,500} \div 3.04 \text{ m}^2$$

$$B = \sqrt{A} = \sqrt{3.04} \div 1.74 \text{ m} \rightarrow \text{決定하다.}$$

$$B = 1.75 \text{ m}$$

㊱ 正味上向 壓力

$$8,976 \div (1.75 \times 1.75) = 2.931 \text{ (kg / m}^2\text{)}$$

㊲ Moment 의 計算

$$M = 2.931 \times 1.75 \times \frac{0.7^2}{2} \times 100$$

$$= 125,667 \text{ kg} \cdot \text{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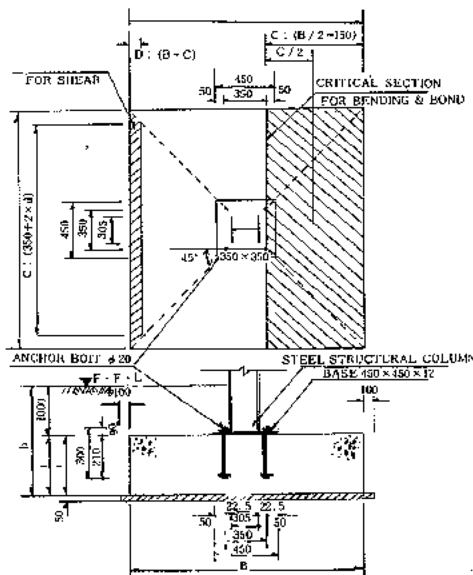
㊳ 깊이의 計算 : $t \quad K = \frac{1}{2} \cdot f_c \cdot K \cdot j$

$$K = \frac{1}{1 + \frac{f_s}{n \cdot f_c}} = \frac{1}{1 + \frac{1,400}{10 \times 65}} = 0.317$$

$$j = 1 - \frac{K}{3} = 1 - \frac{0.317}{3} = 0.894$$

$$\therefore K = \frac{1}{2} \times 65 \times 0.317 \times 0.894 = 9.21$$

$$t = \sqrt{\frac{M}{K \cdot B}} = \sqrt{\frac{125,667}{9.21 \times 175}} = 8.83 \text{ cm}$$



(그림 2) -)

物工量에 따라 "t"는 30cm 決定된다.

$$\therefore d = 30 - 2.5 = 27.5 \text{ m}$$

㊴ 剪斷面積

$$B' + 2d = 35 + 2 \times 27.5 = 90 \text{ cm}$$

$$\text{그래서 } v_s = \frac{(0.9 + 1.75)}{2} \times 0.425 \times 2.931 = 1.651 \text{ kg}$$

$$v_c = 6 \text{ kg / cm}^2, j = 0.894$$

$$\therefore d = \frac{1.651}{27.5 \times 6 \times 0.894} = 11.19 \text{ cm} < 27.5 \text{ cm O.K}$$

㊵ A_s 의 計算

$$M = 125,667 \times 0.85 = 106,817 \text{ kg} \cdot \text{m}$$

$$A_s = \frac{M'}{f_s \cdot j \cdot d} = \frac{106,817}{1,400 \times 0.894 \times 27.5} = 3.10 \text{ cm}^2$$

$$\therefore A_s = 1.131 (R^{1/2}) \times 10 \text{ No.} = 11.31 \text{ cm}^2 > 3.10 \text{ cm}^2 \text{ O.K}$$

㊶ 拾畚은

$$v_b = 0.8 \times 1.75 \times 0.7 \times 2.931 = 2,872 \text{ kg}$$

$$u = 15 \text{ kg / cm}^2$$

$$\text{그러면 } \Sigma = \frac{2,872}{15 \times 0.894 \times 2.75} = 7.79 \text{ cm}$$

㊷ 기둥低面에 있어서의 方位角의 應力은 $8,976 \div (35 \times 35) = 7.32 \text{ (kg / cm}^2\text{)} < 65 \text{ kg / cm}^2 \text{ O.K}$

VI. 指定된 英國의特殊資材

(1) space deck

前言한 pyramid 形態의 逆 Arch 鉄骨構造

B.S 449 C.P.3 (V障)

B.S 4360 & B.S 970製造處는 N.C.I

(2) Decking plate

0.7mm THK 의 47mm 깊이와 207mm 간격으로된 Dec King plate에 fluorinated polymer (PV f₂)된것으로 製造處는 A.C.T

(3) Wall cladding

外壁 cladding으로 一名 "Formawall"이라고도 하며50 mm 두께의 foam으로 채워져 斷熱된 넓이 600mm의 panel 로 外部는 porcelain enamel로 마감된 것으로 製造處는 H.H. Roberson (VK) Ltd.

Export Division, Crown, Morden, surrey, England.

(4) Rooflights

모든 Rooflight는 Hit & Miss shutter ventilato & solar glass dome 形態로 製造處는 Messrs Greenwood Airvac Ventilation Ltd., "Maxadome" type HM.

VII. 結言

海外工事現場에서 겪은 몇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 과 같이 말할수가 있다고 본다.

(1) 韓國의 建設業者가 그 동안 海外에서 많은 工事를 다루어 왔지만 실상 아직도 鉄骨造工事를 하는때는 뒤떨 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그래서 막상 큰 現場의 鉄骨造는 下請 方式이 有利 하다고 느껴지며 製備面이나 잘 숙련된 기능공이 모자라 고 있음을 느낀다.

(3) SAUDI 地域에서는 地域에 따라 다르겠지만 흙속에 塩分과 酸分이 많이 섞여있다. 그래서 基礎conc는 R.S. C (Type 5 Cement)를 使用한다.

(4) SAUDI 地域에서의 모래에는 土分이 많이 섞여있으

며 粗骨材는 비교적 強度가 弱하다.

(5) Block 은 製作보다 구입하는 便이 저렴하며 구입이 용이하다.

(6) Terrazzo 220板은 300×300, 220×220 등을 많이

使用 托록 設計되었다.

(7) 資材의 구입이 용이치 않다.

끝으로 海外工事에서의 特殊한 資材는 早期發注로 工期에 맞도록 공급해야 한다고 본다. <*>

* 6월인터뷰

朴 弘씨 / '81 봄 国展 建築部門大賞作家 /

建築教育의 요람 “아키토피아”



□ 현대건축의 非人間性을 우려하는 朴 弘씨

「요즘의 건축물은 비인간적이고 유물론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할까요……」

• 올 봄 国展 建築部門에서 大賞을 受賞한 朴弘(中央大 建築科 조교수)씨가 말하는 현대 건축에 대한 견해다.

“아키토피아”로 큰상을 받은 朴弘씨는 이 작품을 제작하게된 根源的인 動機도 역시 건축의 인간성상실에서부터 비롯된것이라고 말한다. 건축교육의 不合理도 큰 動機가운데 하나라고…….

현행 우리나라 건축교육은 건축하면 곧 工業만을 생각하는 結論 받아로 되도록 짜여져있다는 것이

朴弘씨의 主張이다. 건축은 어느 한 部分만의 藝術이 아니라 종합 예술이며 특히 디자인중심의美的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點에 비추어 볼때 「건축=공학」이라는 교육정책은 건축문화의 장애를 위해서도 꽤 위험한 것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大學에서의 건축학과는 工科大学쪽에 있으나 建築美術学科은 예술대학쪽에 있어 건축과 미술의 일체성을 교육에서부터 부정하고 있는 實情임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建築美術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2개 대학에 불과하다고 해서 理想的 建築教育, 理想的인 建築文化를 실현하는 方案으로 그 殿堂을 꾸며본 것이 바로 “아키토피아” 즉 건축전문대학이다.

그는 이번 작품을 구성함에 있어 건축을 기능과 구조의 해결을 전제로 하는 3차원적인 空間造形의 世界라고 못박고 이 계획을 건축대학(school of Architecture)의 提案으로서 일반적인 건축계획상의 상식적 범주를 탈피한 自由분방함을 造形的으로 추구하여 Total Designer로서의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한 「유토피아」의 건축의



□ 大賞수상작품 「아키토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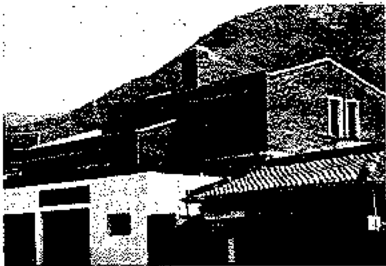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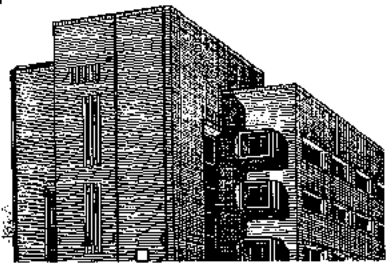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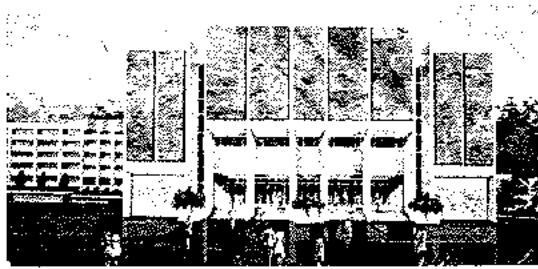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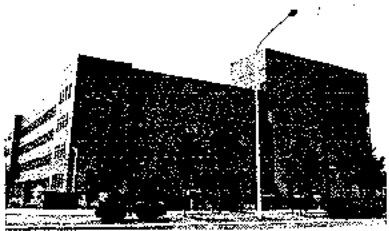
매개공간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을 마무리지으며 그는 저금 한국의 건축교육은 건축의 藝術의정신을 잃어버린채 誤導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정책의 졸속, 철학의 빈곤, 운영의 난조와 인식 부족 등으로 우리들의 신앙과도 같은 건축언어들이 퇴색되는 상황과 도전속에서 건축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場」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강조하고 이 계획안은 건축의 「토탈리티」와 건축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큰 규모의 綜合大學보다는 작은 규모의 건축대학이 보디 더 효율적이기때문에 내놓은것이라고 한다.

지난 79년에도 文公部長官賞(을지로 재개발계획)을 받은 바 있는 朴弘씨는 中央大에서 건축계획, 외장설비, 건축특론을 강의하고 있다.

이번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학교강의준비하랴, 각종 공식석상에 참석하랴등, 좀처럼 틈을 내서 차분하게 作業을 할 수 없어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다고.

앞으로의 계획도 계속 作品활동을 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外國에 나가 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한다.<*>



	新聞社 李 喜 泰
	学 校 安將元・崔義俊
教 会 羅 永 均	
体育館 俞 培 根	
	会 館 金 武 權
	住 宅 金 仙 豆
住 宅 林 八 岩	住 宅 安 承 在



동아일보 여의도 사옥

李 喜 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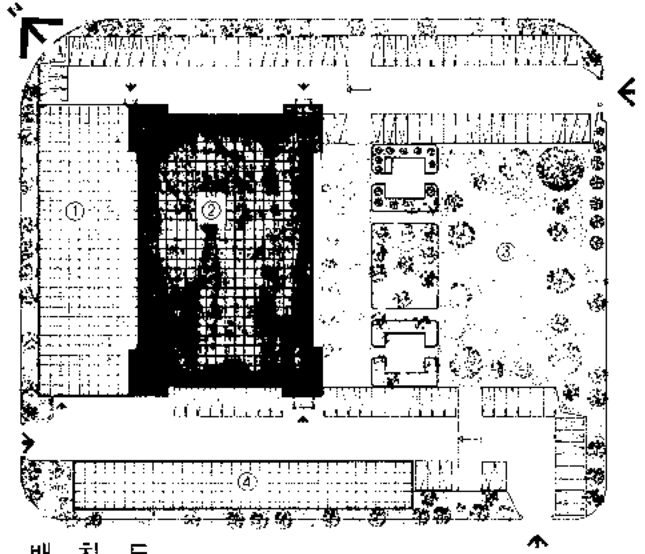
((주) 영·이 건축연구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지면적/12,247㎡
연면적/14,424.81㎡ (대수선(7층):7,906.95㎡. 증축:
6,517.86㎡). 건축면적/4,359.77㎡. 층수/지하층 지상
5층.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설비/중앙공급식 냉난
방 용도/신문사 외장마감재/외장용 자기질타일

■ 設計概要

본 건물은 여의도 5.16광장에 면하고 주변에 K.B.S, 국회 의사당등 주요 건축물이 위치하는 주요 요충지로서 설계 진행 방침을 주위 마관에 조화되도록 외관을 단순화한 온도에 음영이 강조된 MASS로서 처리하였다.

당초 기존 건물의 평면 및 종고와 최신 시설의 운전기 등 각종 기기 설치에 증축부분의 층고 등이 맞지 않아 기존 건물의 일면 대수선이 불가피 하였으며 신문사 특수 기능의 동선 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었으며, 건물의 세부적인 디테일, 마감재료, Color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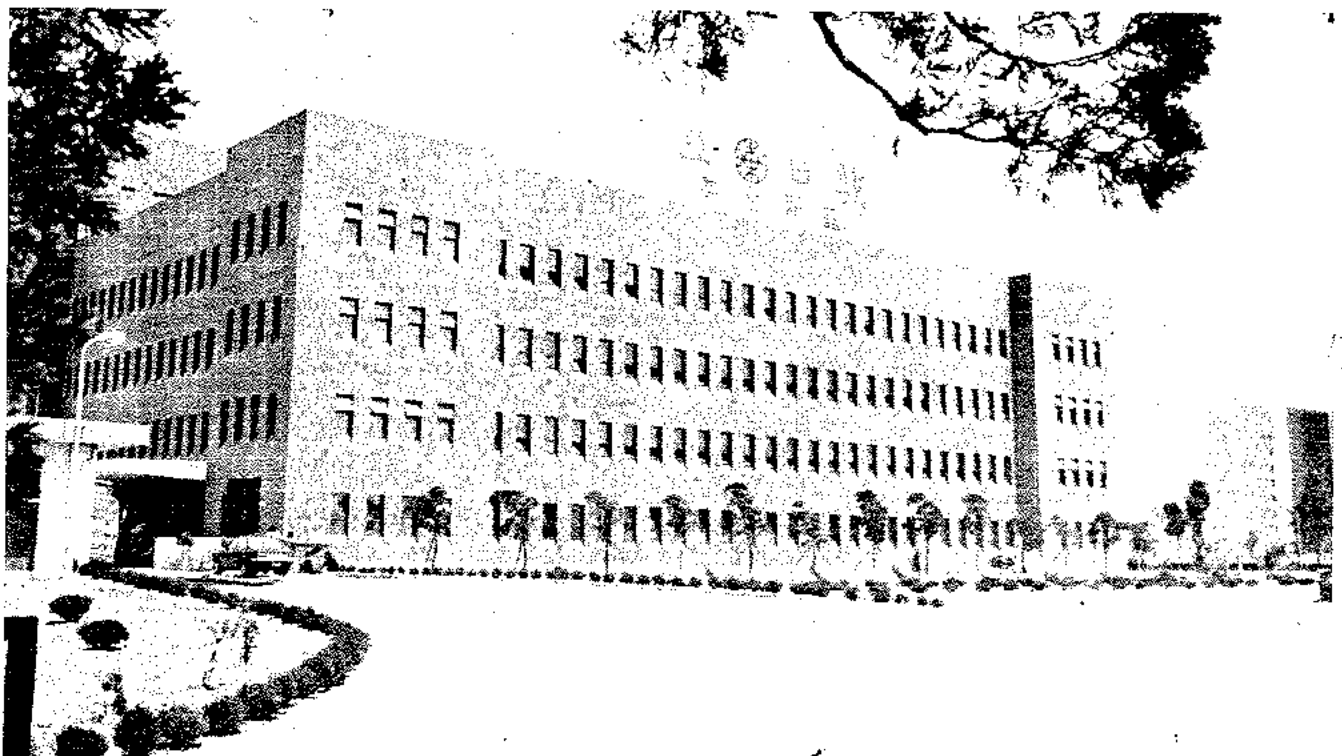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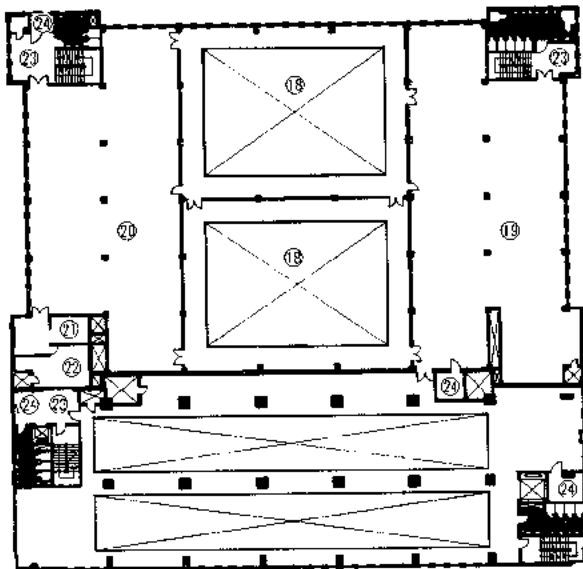
- ① 증축건물
- ② 기존건물
- ③ 녹지대
- ④ 부속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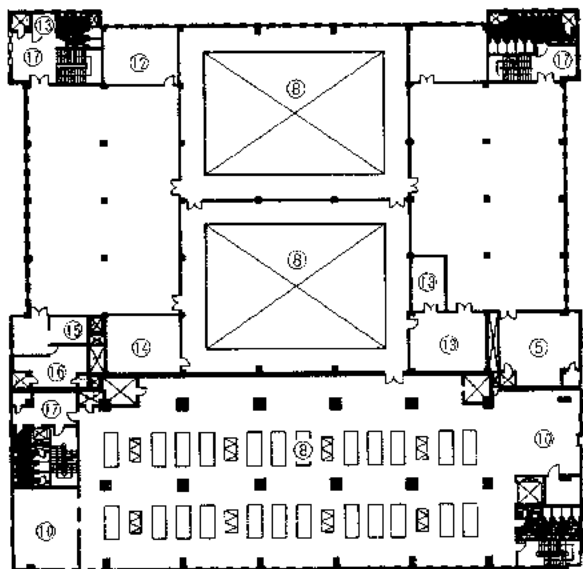
증축전전경

증축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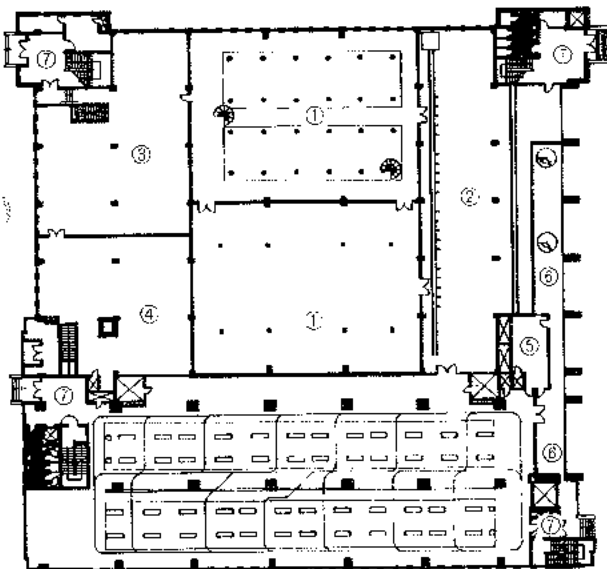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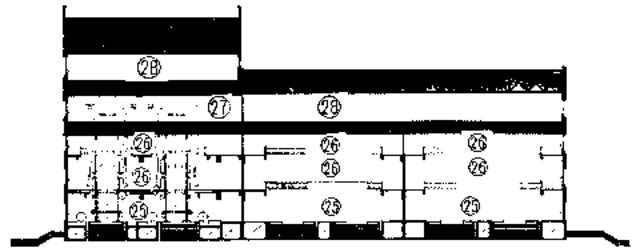
3층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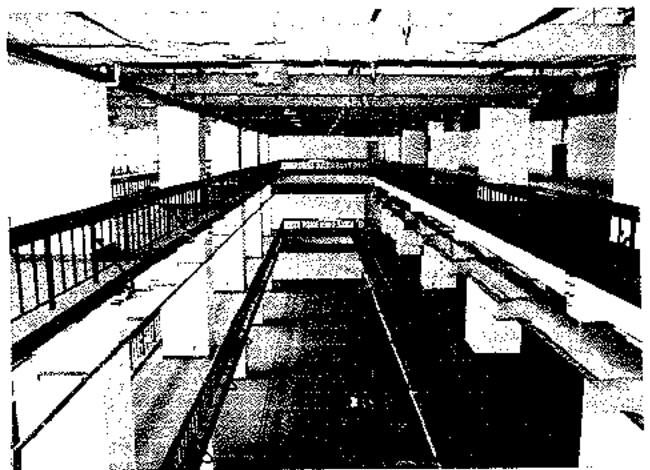


1층평면도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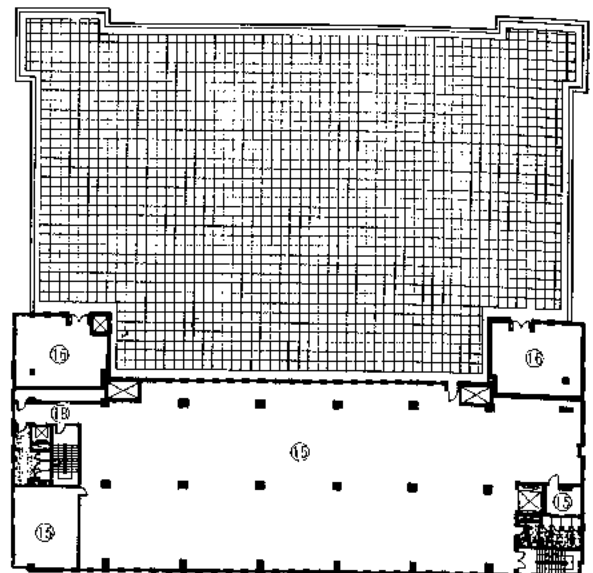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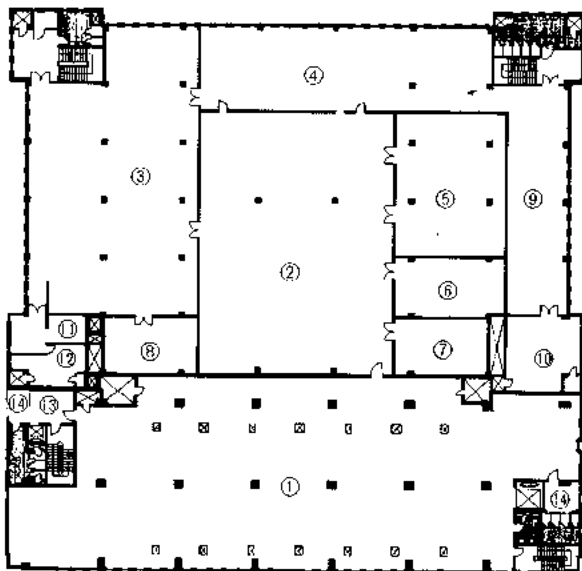
- | | |
|---------|-----------|
| ① 금지실 | ⑮ 탈의실 |
| ② 금지창고 | ⑯ 욕실 |
| ③ 잔기실 | ⑰ 홀 |
| ④ 기계실 | ⑱ 인쇄실 |
| ⑤ 방송사무실 | ⑲ 광고실·판매실 |
| ⑥ 발송덱크 | ⑳ 제판실 |
| ⑦ 홀 | ㉑ 탈의실 |
| ⑧ 인쇄실 | ㉒ 욕실 |
| ⑨ 발송실 | ㉓ 홀 |
| ⑩ 사무실 | ㉔ 창고 |
| ⑪ 연판실 | ㉕ 금지실 |
| ⑫ 주조실 | ㉖ 인쇄실 |
| ⑬ 창고 | ㉗ 포장실 |
| ⑭ 휴게실 | ㉘ 사무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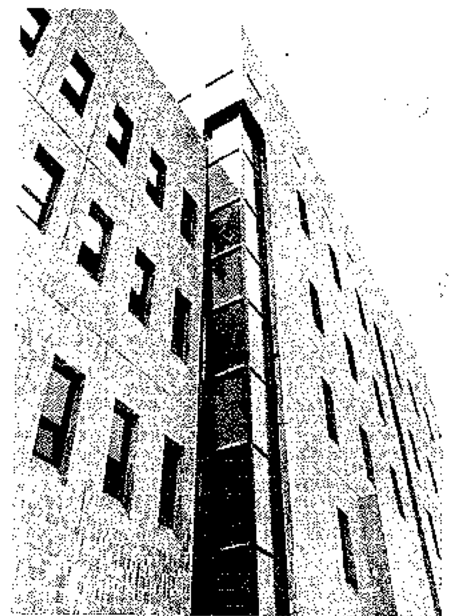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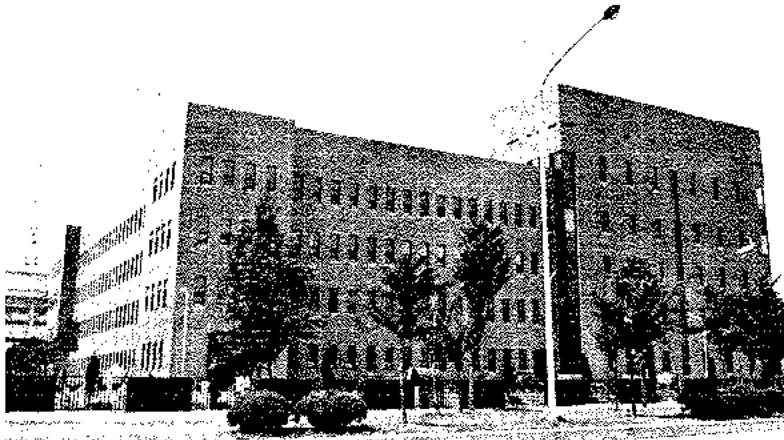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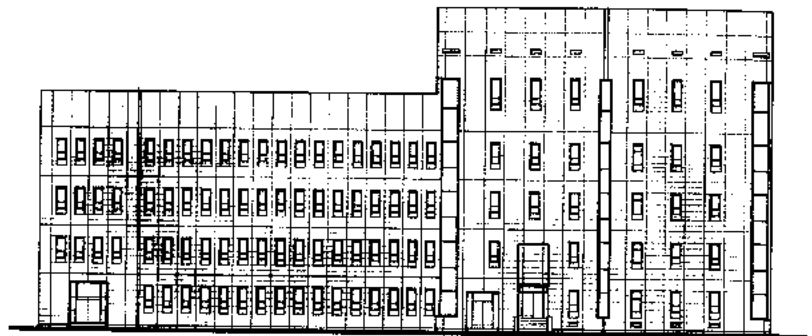
내부전경



동측입면도



- ① 포장 시설
② 편입 시설
③ 조판 시설
④ 증액 시설
⑤ 자료 시설
⑥ 양 시설
⑦ 회의 시설
⑧ 주조 시설
⑨ 다기 시설
⑩ 교량 시설
⑪ 배의 시설
⑫ 모 시설
⑬ 물 시설
⑭ 장 고
⑮ 사 무 실
⑯ 공조기
⑰ 장 고
⑱ 물





安城農專大合同강의동

安將元 · 崔義俊
(新亜建築研究所)

소재지 / 경기도 안성군 안성농원 캠퍼스내 연면적/1,316.88㎡
규모 / 지층 120.42㎡, 1층 771.48㎡, 2층 424.98㎡ 계1316.88㎡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관재료 / 적벽돌 처장일부 본타일
시공 / 화신토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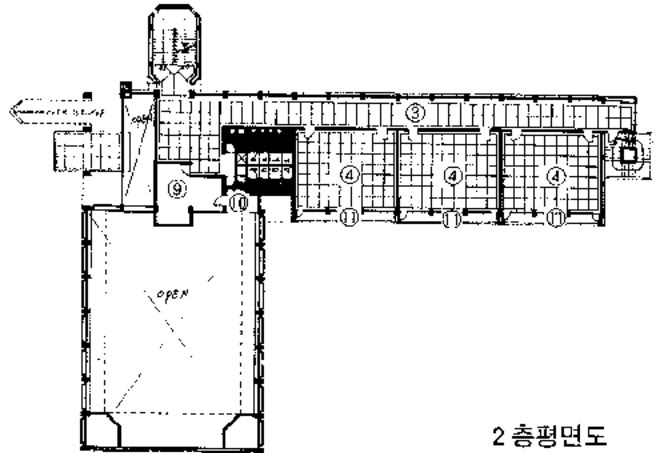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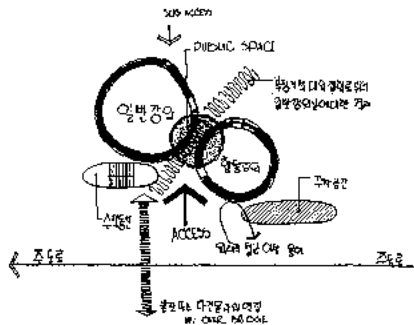
■ 設計概要

모든 프로젝트가 풀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측의 요구는 좁은 면적에 많은 학생을 수용한다는 1차원적 요구에 장래의 성장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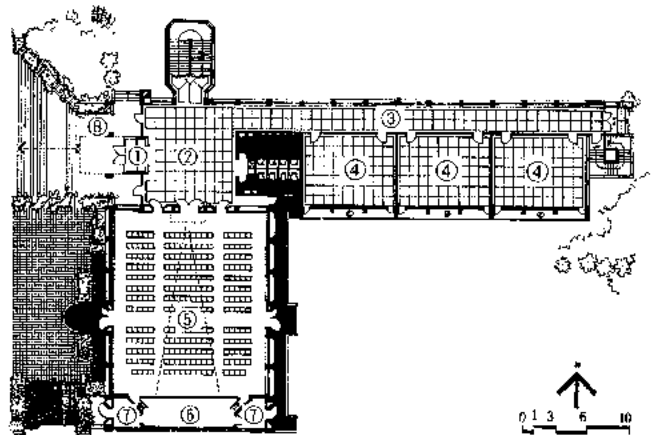
일반 강의실에 수용되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별다른 특성이 없으나 합동강의실의 기능은 합동강의 및 교내외에 개방되는 성기, 부정기적 용도가 평면 기능 해결의 주된 요소였다. 수직적 성장은 일반 강의실에 극한되었으나 현관홀의 상부 OPEN 두에 OVER BRIDGE가 연결되도록 고려되어 종합 발전 계획과 결합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었다.

캠퍼스 특유의 LOCALITY를 확립시키는 것이 주된 의도로서 붉은 벽돌과 본타일로 단순화시키고 외부공간의 분위기 조성은 기존 수목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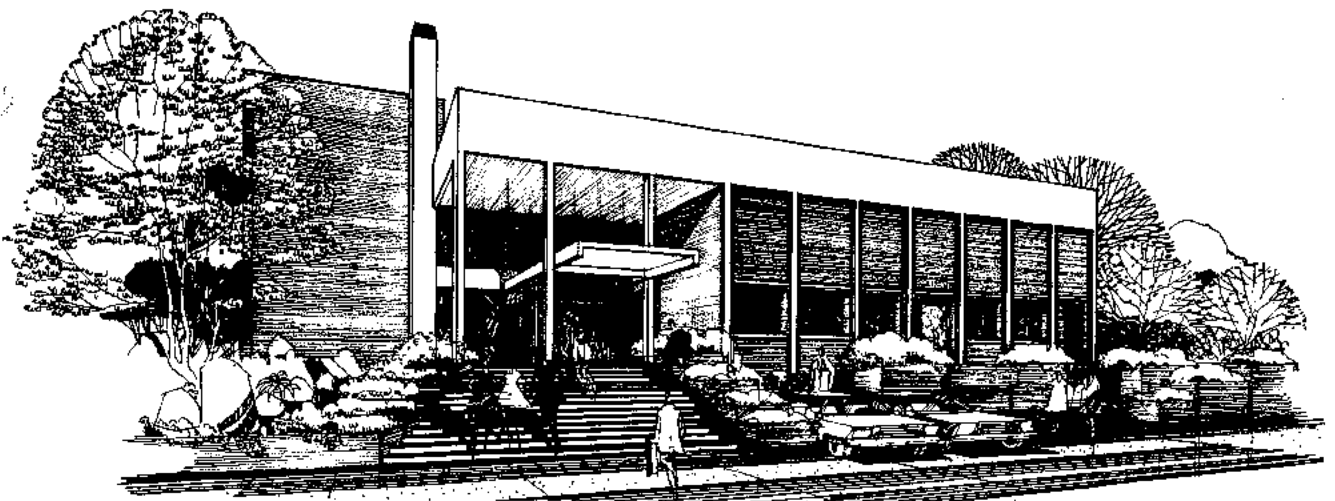
- ① 현관전실
- ② 현관홀
- ③ 복도
- ④ 강의실
- ⑤ 합동강의실
- ⑥ 무대
- ⑦ 주보실
- ⑧ 데스크
- ⑨ 영사실
- ⑩ 부속장고
- ⑪ 발코니



2층평면도



1층평면도





鷹 岩 教 會

羅 永 均
(東新建築綜合設計)

소재지 / 서울은평구응암동68-1. 규모 / 대지 2,030㎡ 기존교육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43㎡. 신축1층 706㎡. 연면적 2,306㎡ (지하1층 지상3층) 건폐율/47%. 용적율/160% 구조 / 申鍾淳, 외장 / 姜炳根, 음향 / 信義電子, 설비 / (株) 金門 시공 / (株) 鮮京綜合建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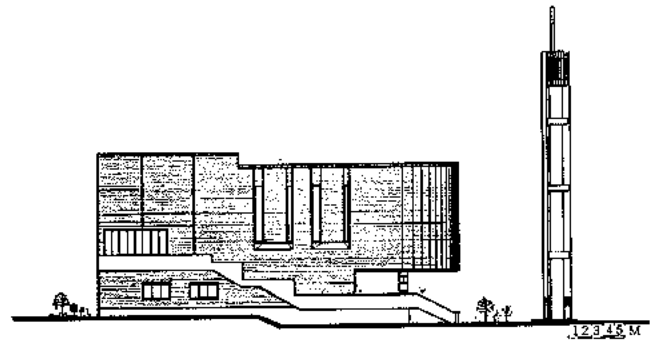
■ 設計概要

住宅街 한복판에 위치한 教會로써 既存教育館이 대지 中央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화된 예배당을 配置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대지조건이었으나 要求하는 室面積을 充足시켜 보려고 노력하다보니 平面이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모습을 그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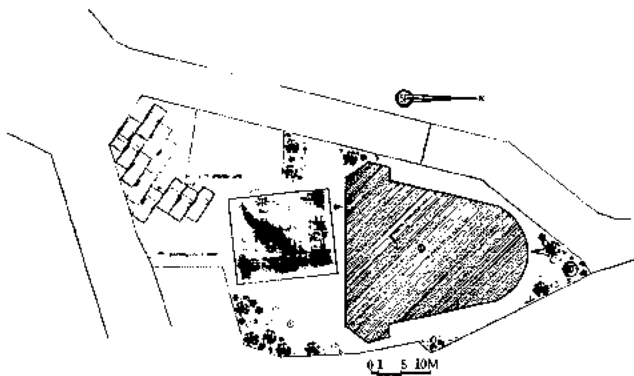
주위에 밀집된 住宅街에 教會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外壁面에 窓을 없애고 天窓을 設置하였음. (현재, 보이는 벽장은 스탠드그라스를 設置한 곳으로 祭壇관계상 임시로 투명유리를 설치하였음).

기존교육관과 신축예배당과의 동선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층고를 조정하여 연결교를 설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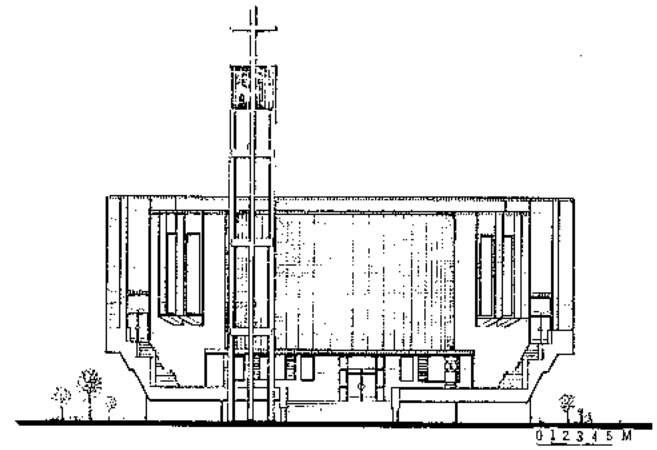
내외부벽을 붉은벽돌치장쌓기로 하였으며 내부의 음향 관계로 천정과 후면벽에 방음재를 사용하였음.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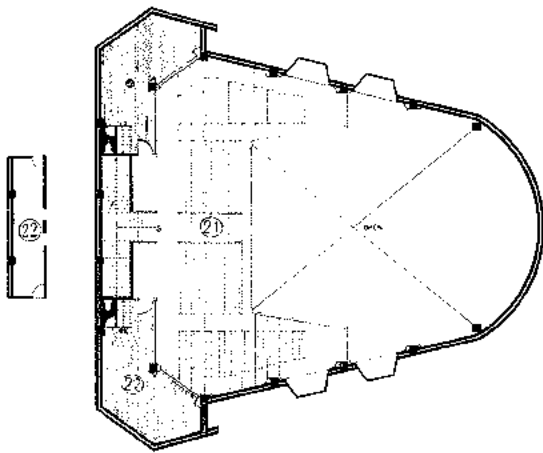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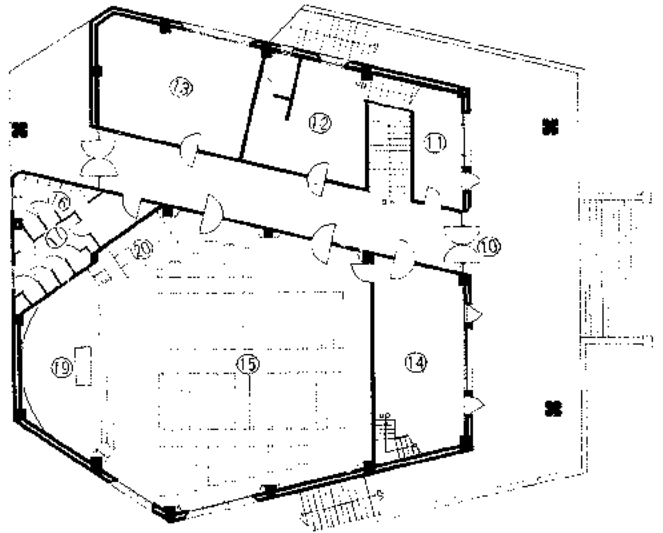
정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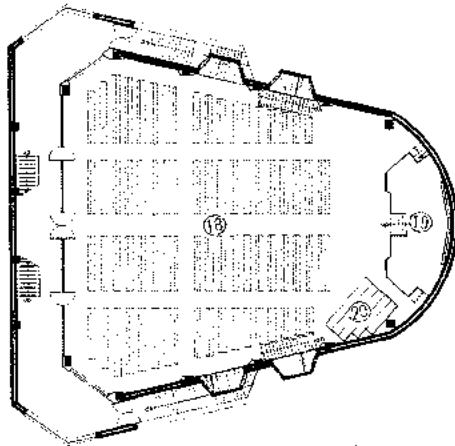
3 층평면도

0 1 2 3 4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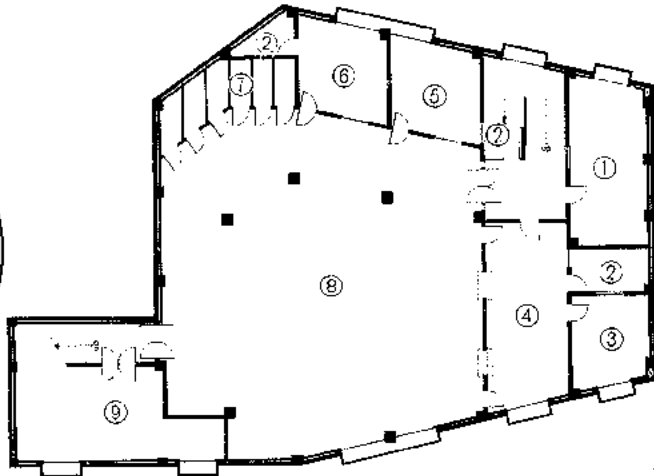


1 층평면도

0 1 2 3 4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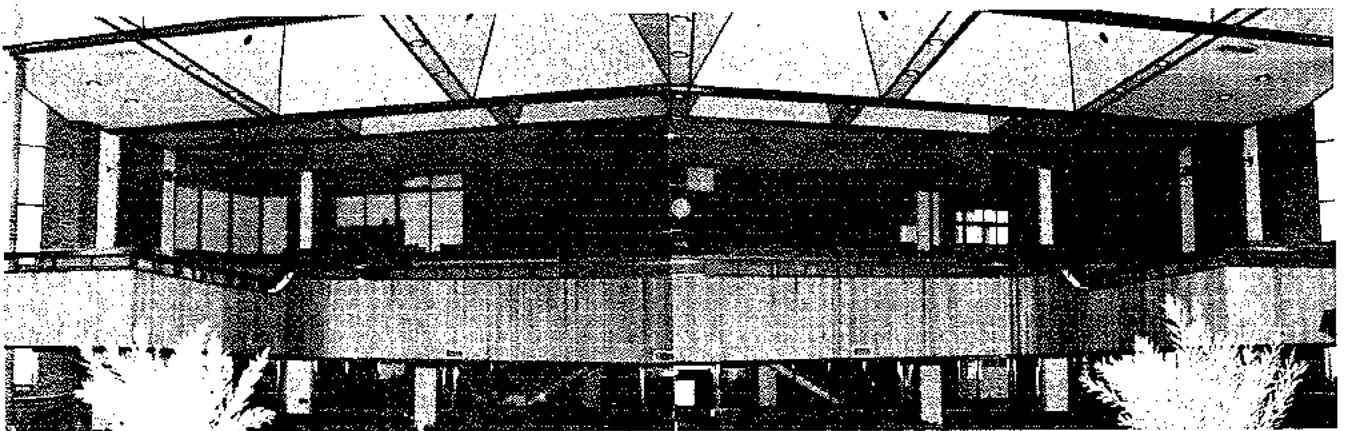


2 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 | | | | |
|---------|-----------|----------|---------|
| ① 전 교 실 | ⑦ 기 노 실 | ⑬ 소 회의실 | ⑲ 강 단 |
| ② 창 고 | ⑧ 식당겸대회의실 | ⑭ 성가대연습실 | ⑳ 성가다식 |
| ③ 방 | ⑨ 기 계 실 | ⑮ 소예배실 | ㉑ 예 버 실 |
| ④ 주 방 | ⑩ 현 관 | ⑯ 남자화장실 | ㉒ 영 이 실 |
| ⑤ 고등부실 | ⑪ 사 무 실 | ⑰ 여자화장실 | |
| ⑥ 중등부실 | ⑫ 목 양 실 | ⑱ 대예배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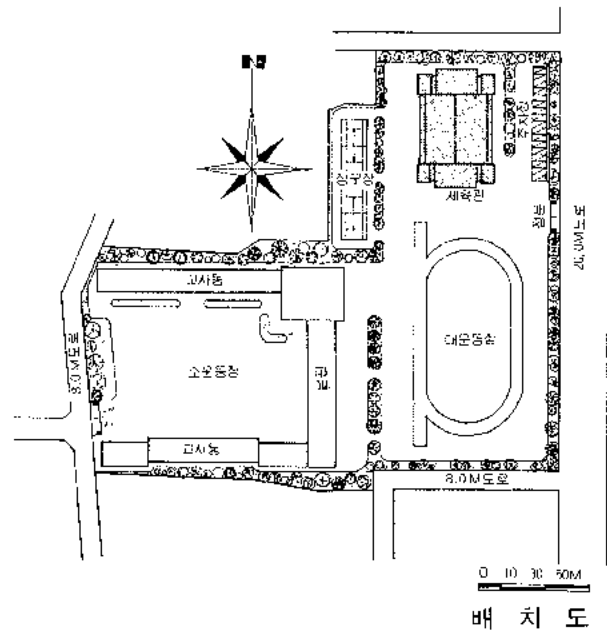
정화여중 · 고체육관

俞培根
(도시건축)

소재지 / 대구시 동구 상동80-13 대지면적 / 25,333㎡ 건
측면적 / 1,635.84㎡ 연면적 / 지층 : 8,772㎡ 1층 :
1446.26㎡ 2층 : 1446.36㎡ 3층 : 705.29㎡ 4층 : 67.70
㎡ 계 : 4542.9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4층 지하 1층
외관재료 / 변색버들, 진카 드샷쉬 계획 / 김인구 설계 / 김
익래 이종원 구조 / 황동현 기계설비 / 배재술 전기설비 /
정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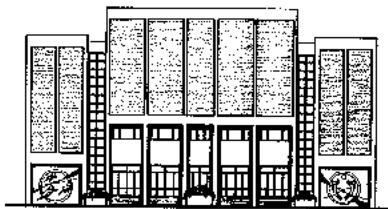
■ 設計概要

본교는 기독교계의 야학교로서 체육관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기독교계의 집회 시설과 학교의 주요 행사 및 연극, 음악등을 발
표하는 장소로서도 기능이 적합하도록 고려해달라는 요구에
어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채택 계획하는 아를 두고 고심했었
다. 따라서 체육관의 그 본래 목적 이외에 종교 집회 및 예능
발표를 위한 집회장이며 지층, 일층은 무용, 탁구등 예·체능
계의 특별 교실로 제공되고 이층 삼층은 체육, 예능 시설로
서 기능에 적합하도록 고려했다. 다수인이 동시 출입할 것을
고려하며 계단실을 CONER마다 배치하여 어느쪽에서도 출입
이 기능하도록 고려했었다. 대규모 경경 및 집회실을 그려 TV
중계석과 합장단석을 두었으며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자봉재료
는 원더팔발로 한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으며 입면은 MASS
자체를 명확하게 분할함으로써 남성적인 체육관의 외관을 여
성화했고 체육관으로서의 이미지도 부여하고 그 외의 기능에
도 부합할 수 있는 입면 처리를 고려했으며 좀더 시간을 두고
계획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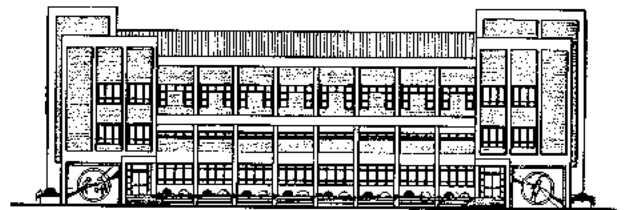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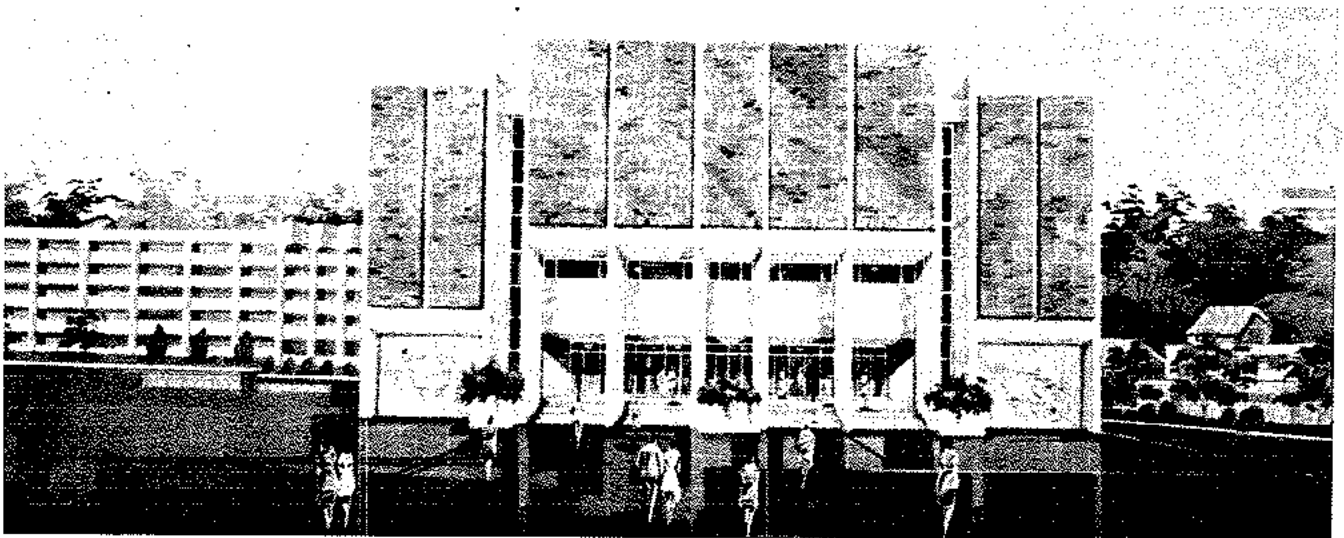
- ① 교사동
- ② 소운동장
- ③ 후문
- ④ 정구장
- ⑤ 체육관
- ⑥ 주차장
- ⑦ 정문
- ⑧ 대운동장
- ⑨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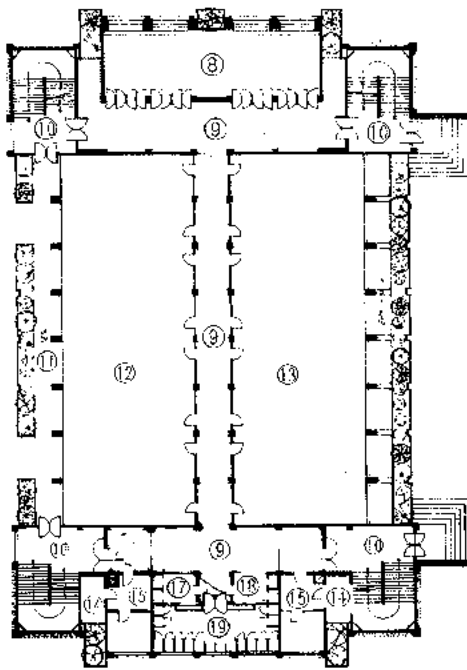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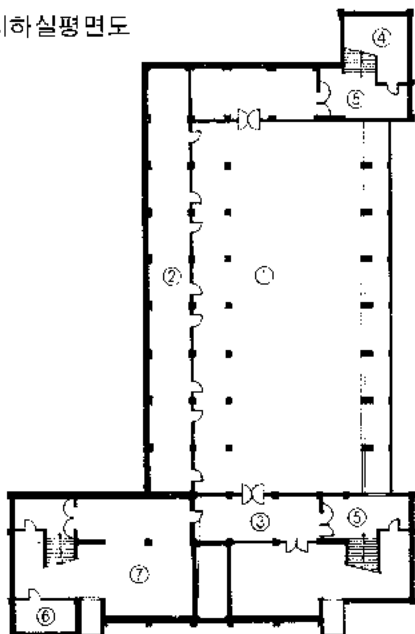
측면도





1 층평면도

지하실퍼면도



- ① 시청각실
- ② 도시실
- ③ 복도
- ④ 창고
- ⑤ 계단실
- ⑥ 오일탱크실

- ⑦ 보일러실
- ⑧ 현관홀
- ⑨ 복도

- ⑩ 계단실
- ⑪ 외부복도
- ⑫ 무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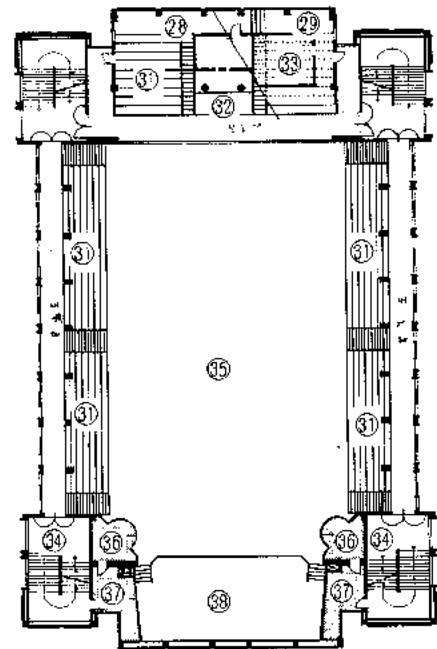
- ⑬ 소강당
- ⑭ 창고
- ⑮ 탈의실

- ⑯ 샤워장
- ⑰ 직원화장실(남)
- ⑱ 직원화장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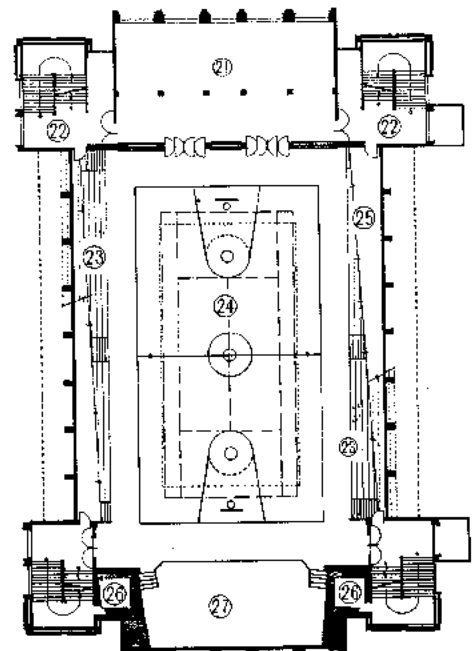
- ⑲ 화장실
- ⑳ 드라이에리어
- ㉑ 홀

- ㉒ 계단실
- ㉓ 스탠드
- ㉔ 운동경기장

- ㉕ 스탠드하부창고
- ㉖ 대기실
- ㉗ 무대



3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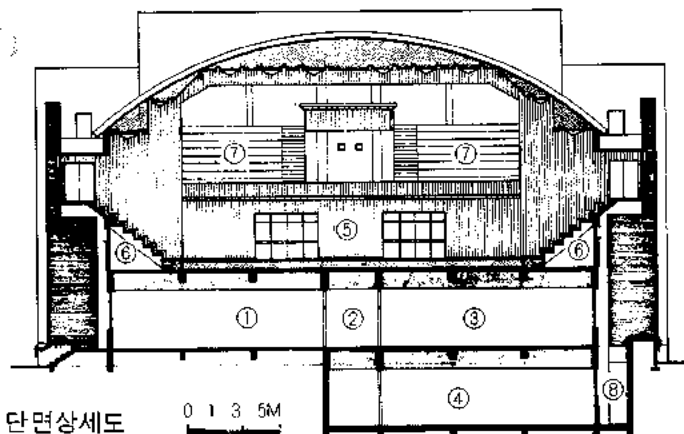
2 층평면도

단면상세도

- ① 무용실
- ② 복도
- ③ 강당
- ④ 시청각실
- ⑤ 체육관
- ⑥ 창고
- ⑦ 스탠드
- ⑧ 드라이에리어

- ㉘ 복도
- ㉙ 통로
- ㉚ 영사실
- ㉛ 스탠드
- ㉜ 귀빈석
- ㉝ 스탠드하부창고

- ㉞ 계단실
- ㉟ 경기장상부
- ㊱ TV중계실·합창단석
- ㊲ 준비실
- ㊳ 무대상부



단면상세도





대구 건축 사회관

金 武 權
(현대건축설계연구소)

소재지 / 대구시 범어동 1 - 8 대지면적 / 832.40㎡ · 건축면적 / 지하 353.48㎡ 1 층 : 358.03㎡ 2 층 : 318㎡ 3~5 층 : 325㎡ 옥상 : 21㎡ 연면적 : 2,025.51㎡ 구조 / 철근 콘크리
트라멘조 외벽재료 / 붉은벽돌치장쌓기

■ 設計概要

아름다운形態, 便利한 空間創造
이것들이 우리의 숙명이라면 여기 우리의 표상이며 安息의場인 대구건축사회관을 계획해본다.

도로면에 접한면이 좁고 긴대지에서 전면 Approach를 위해 도로에서 7m 정도 후퇴하여 건물을 배치했고, 건물우측에 1개 span을 피로티로 처리하여 후면마당으로 통하는 주차 통로 및 비상통로를 겸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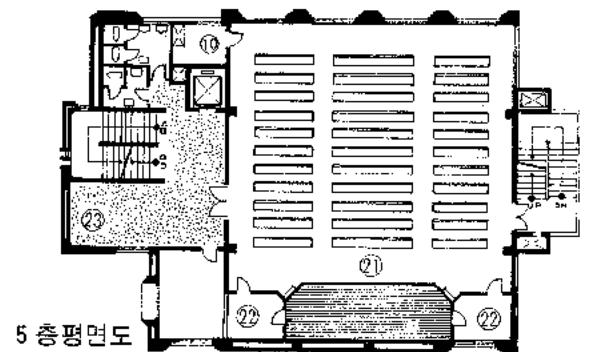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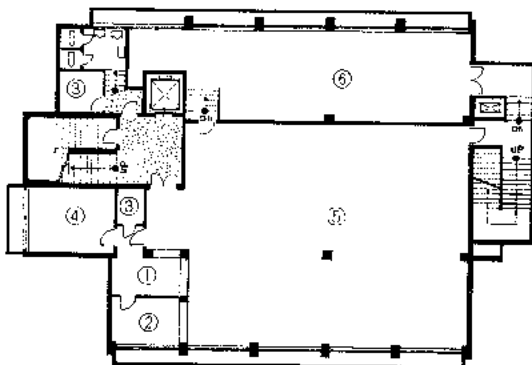
외관은 북쪽으로 면한 전면을 작은창 및 무장으로하여 편화된 Mass가 조화를 이루게 하였고, 오장재료는 붉은벽돌 치장쌓기를 하므로 건축사회관이라는 건물의 대상을 부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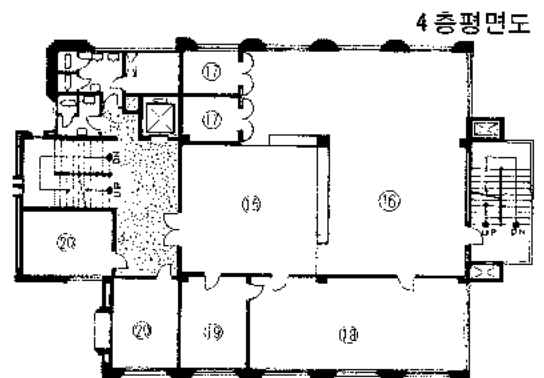
투 시 도

- ① 안 내
- ② 주 방
- ③ 창 고
- ④ 빙
- ⑤ 거실·전시실
- ⑥ 기 계 실
- ⑦ 건축지재전시실
- ⑧ 수 우 설
- ⑨ 수식 실
- ⑩ 공 조 실
- ⑪ 피 로 티
- ⑫ 현 관 홀
- ⑬ 시 두 실
- ⑭ 홀
- ⑮ 대 기 실
- ⑯ 지부사무실
- ⑰ 서무장고
- ⑱ 지부장실·수화의실
- ⑲ 청고도서실
- ⑳ 건축학회·건축가사무실
- ㉑ 회 의 실
- ㉒ 준 비 실
- ㉓ 로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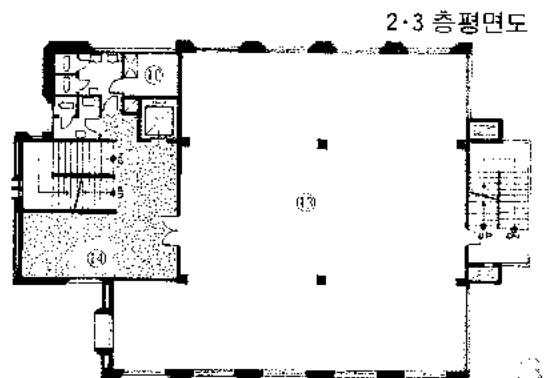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5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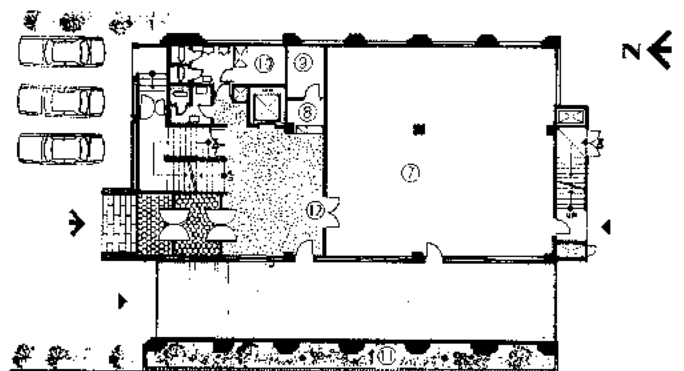


4 층평면도



2·3 층평면도

1 층평면도





H 씨 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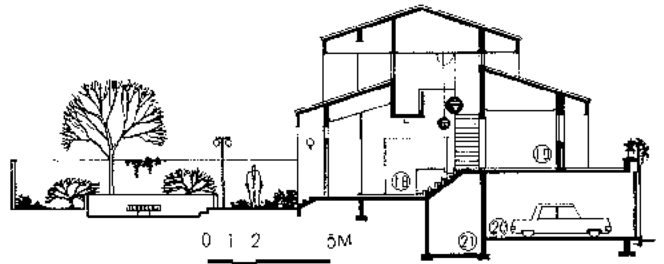
金 仙 堧
(합동건축연구소)

소재지 / 대구시남구대명동713의1 대지면적 / 498.4㎡ 건
축면적 / 166.㎡ 연면적 / 265㎡ 구조 / 벽돌조 슬래브위 스
페니쉬 기와

■ 設計概要

북측에 15m 복개도로를 둔 대지로서 계획당시 현관 줄은의 위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건축주의 강력한 남측 현관 요구에 순응하다 보니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APPROACH가 상당히 좁고 길어졌으나 바닥의 PAVING과 나무들로서 분위기를 느끼면서 연결되도록 했다.

남측과 북측의 대지 고저차를 SKIP FLOOR로서 해결을 시도했고, 내루에는 일층개단실과 이층 가족실과의 OPEN으로 넓은공간을 느끼도록 연출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정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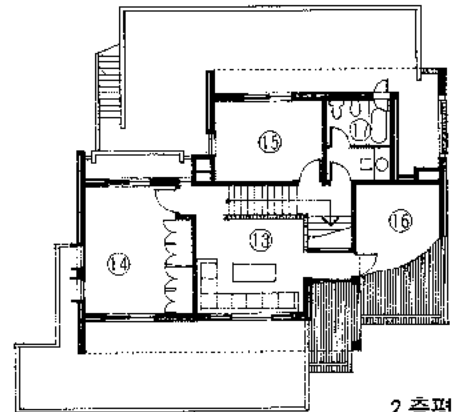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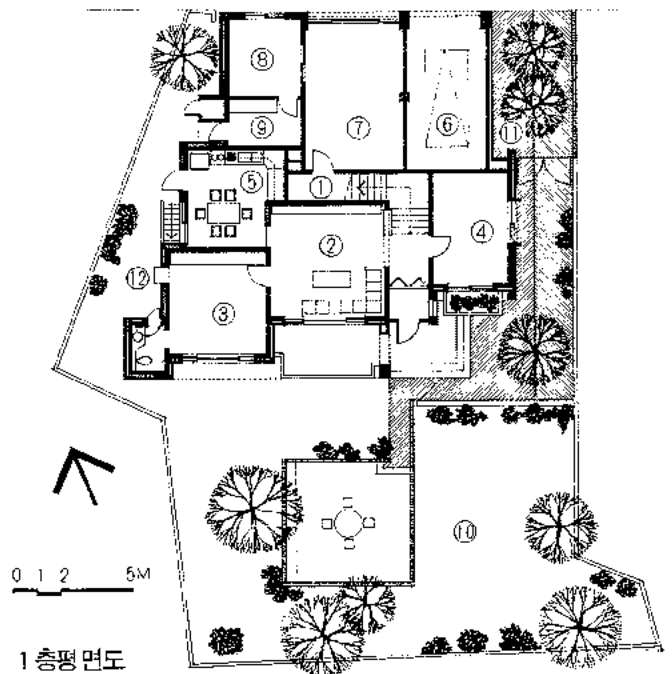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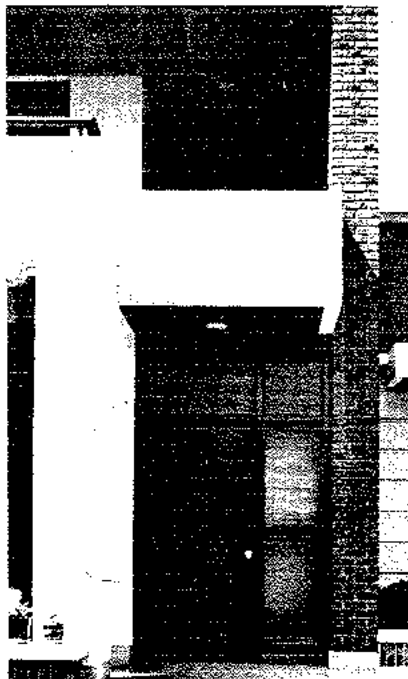
- ① 현 관
- ② 거 실
- ③ 주 인 방
- ④ 간 실
- ⑤ 주방 · 식당
- ⑥ 차 고
- ⑦ 정 포
- ⑧ 방
- ⑨ 누
- ⑩ 정 원

- ⑪ 창 고
- ⑫ 서비스야드
- ⑬ 가 족 실
- ⑭ 노학생방
- ⑮ 여학생방

- ⑯ 다 락 방
- ⑰ 회 장 실
- ⑱ 현 단
- ⑲ 욕 실
- ⑳ 차 고
- ㉑ 보일러실



2 층평면도



1 층평면도



K 씨 住 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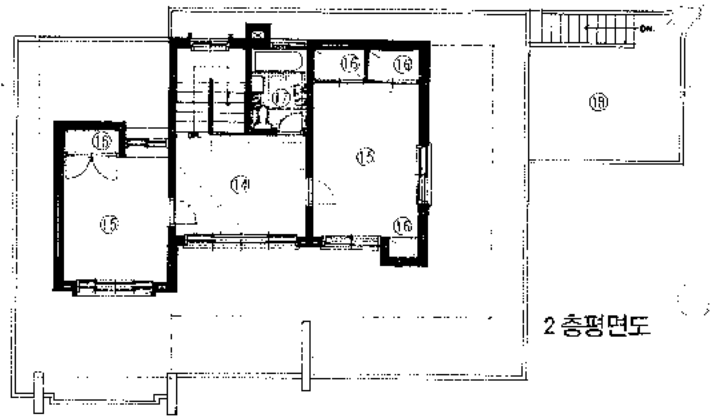
安 承 在
(신한지건축설계사무소)

소재지 / 대구시 남구 대봉동, 대지면적 / 394.20㎡, 연면적 / 239.88㎡ 지하층 : 19.44㎡, 1층본원 : 132.24㎡ 차고 : 21.60㎡ 2층 : 66.20㎡ 구조 / 벽돌조, 슬래브지붕기와잇기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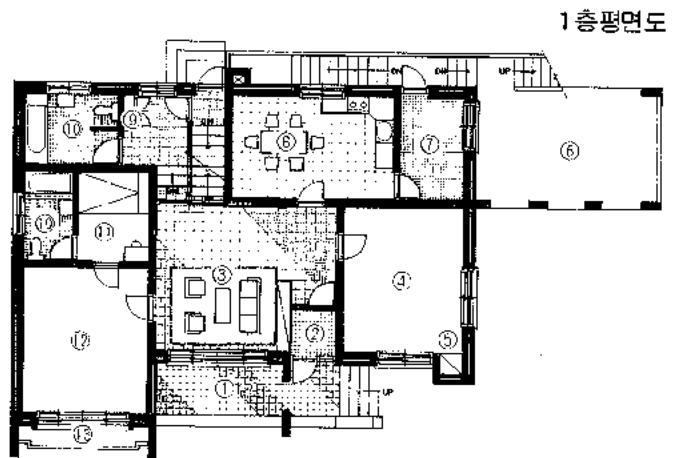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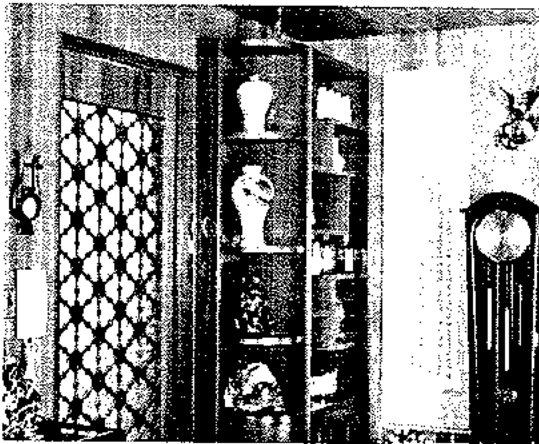
본 주택은 50대부부와 세 자녀를 둔 5인 가족의 보금자리인 단독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입지조건은 주거지역의 폭 6.0M 소방도로에 접한 도시 중심지의 주택으로서 학교와 시장에 거리가 가까운 위치로서 도시 주택지로서는 좋은 위치이다.

본 설계의 주안점으로서 정원의 흥취를 거실에 유도하기 위하여 1층 바닥 높이를 낮게 설계하였고 주부의 행동반경을 최대한 줄이고 계단실에 개폐와 자율성을 높여 거실의 아늑함을 고려하고 계절에 따른 가족생활의 취미에 적응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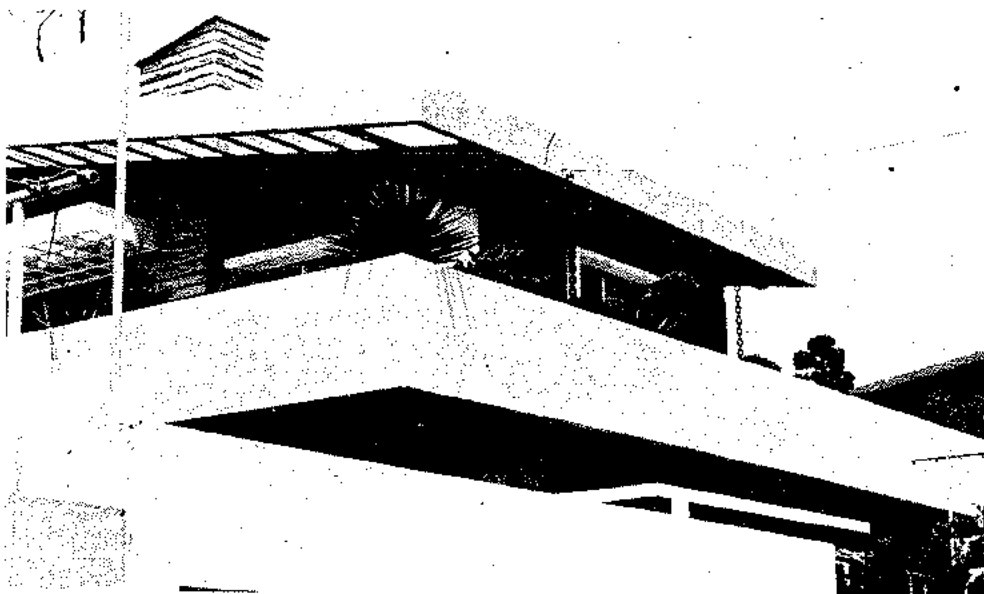


2층평면도

거실에서 식당쪽



1층평면도



- ① 테라스
- ② 현관
- ③ 거실
- ④ 방
- ⑤ 안장
- ⑥ 차고
- ⑦ 다용도실
- ⑧ 주방겸식당
- ⑨ 물품고
- ⑩ 욕실
- ⑪ 침실
- ⑫ 주인방
- ⑬ 화장실
- ⑭ 바
- ⑮ 방
- ⑯ 반
- ⑰ 욕
- ⑱ 장



신 교수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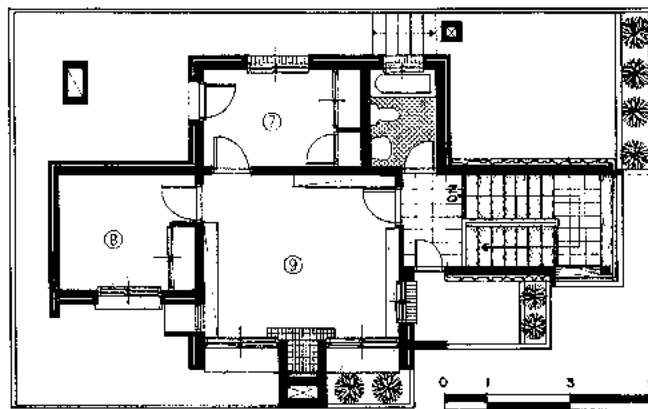
林 八 岩
(동인건축)

소재지 / 대구시 수성구 중동 대지면적 / 283.8㎡ 건축면
적 / 104.1㎡ 연면적 / 213.11㎡ 구조 / 조적조 외벽-오
지벽돌 설비 / 온수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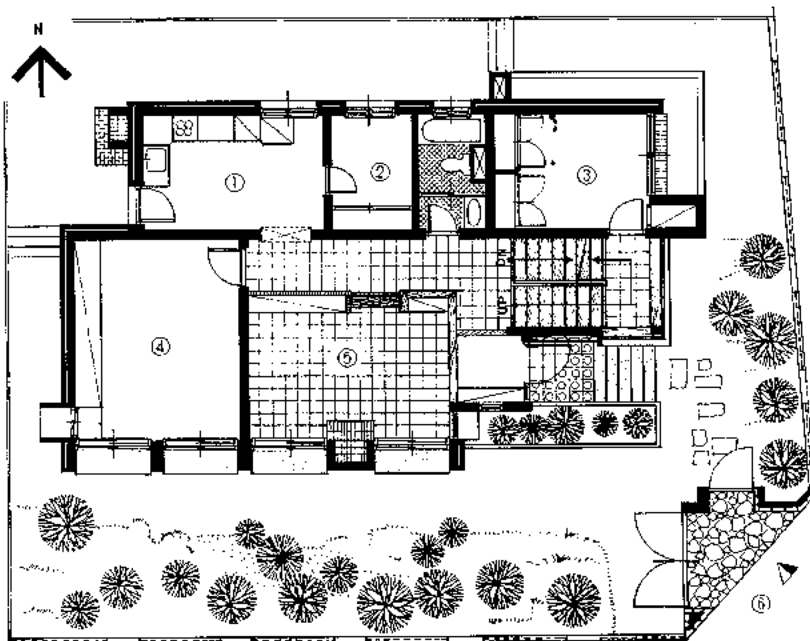
■ 設計概要

새벽별 부름 소리에 잠깨어 서재에 들면 서재
깊숙히 찾아 오는 햇빛 한아름
禪하고 앉아
詩의 世界로 잠적하다.

동측 외관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정면 외관

- ① 식당부엌
- ② 방
- ③ 아 들 방
- ④ 내 실
- ⑤ 거 실
- ⑥ 대 문
- ⑦ 방
- ⑧ 방
- ⑨ 서 재

“아직도 建築文化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출생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55번지 /학력/ 동경 조도
진대학 高工建築科졸업 / 주요경력 / □ 漢陽工大강사 □
건축학회이사 □ 梨大·大法院강사 □ 弘益大학교교수 □
국전초대작가 □ 국전종합심사위원장 □ 전설부주책자
문위원 □ 서울시행정(기술) 자문위원 및 재개발위원 □
U·I·A 4 지역회의참석 / 受賞경력 / 錫器산업훈장 및 다
수 / 주 요작품 / 공군본부·企業銀行본점·남서울컨트리
·크립하우스·선화예술학교 및 강당·세종문화회관·대
한교육보험사옥·호림롯데 및 백화점·동일교문화 센터
(미착공)·제2 종합청사(공사중)

◎ 対談 / 尹 鳳 源 < 본지 편집위원 >

□ 「오존」이 풍부한山中…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대형 항공사진과 곳곳에 놓여있
는 대규모 모형판에 들어선 白雲의 작은 집들이 굽이돌아
호르는 검푸른 강물과 푸른 산 빛 속에서 그대로 살아있
다.

그 색깔들로 해서인가-. 들어선 사무실은 「오존」이 풍
부한 깊은山中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그山中(?)에 살면서 허허로운듯 혹은 그냥 그런대로
사는듯. 그러나 늘 끊임없이 자연을 사랑하고 그 질서를
가다듬고, 터득하고, 다스리는 山主人 嚴德紋씨.

정리하기엔 너무 벅차고 놓아두기엔 안타까운 세월의 찌
꺼기를 툴툴히 떨어버리는 순박한 어투에서 元老라기보다
는 행동하는 젊은이의 기백마저도 엿보인다.

헤어져 돌아서는 객(客)들을 악수대신 문밖까지 배웅하
는 한국인 원로건축사 嚴德紋씨.



□ “하다못해 流行歌도 작사작곡가 이름을 밝히는데
종합예술작품인 건축물엔 누구작품인지 이름 한 줄
못넣게 하나…”

□ 윤 오랜동안 건축계에서 활동하셨는데 그동안의 애
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내용 뒤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후배들도 도움이 될테니까요.

□ 엄 그런 얘기라면 대개 두가지로 집약되겠는데, 하
나는 내 자식에 관한것과 또 하나는 사회 혹은 주변에 대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건축은 푸대접을 받
아왔습니다. 한가지 예입니다만, 부산 피난시절에 文化
人 등록을 하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뭘하는 사람이나고 문
길래 건축을 한다고 했더니 당신이 무슨 文化人이라고 대
뜸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문전에서 싸운 일도 있습니다.
미생이, 목수에 지나지 않는다는거죠.(웃음).

이런 인식이 최근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상
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 까지 있다 이겁니다. 얼마전
에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인들이 모인다는 문화진흥원 개
관식엔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회관을 누가 설계해서 지
은건지 정초석에 새겨놓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말한마디
없어요. 매스컴에서도 그것에는 전혀 무관심해요.

하다못해 유행가에도 누가 작사하고 작곡했는지를 꼭
알려주는데…, 이래서야 건축한 보람이 있겠습니까? 어
떤 회의 같은걸 느끼게 되더군요.

國展에서도 建築은 다루지 않았었죠. 그걸 제가 주장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회화만 美術이 아니다. 조각, 건축
이런것이 모두 미술영역에 들어가는걸 모르는지…, 닐센
스죠. 우스운 얘깁니다만, 그래서 우리 지식인들이 건축가

□ “근년에 들어 수준급의 작품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후세에 부끄럼지는 않을 것으로…”

되겠다는걸 말렸읍니다. 이런 풍토에서 올바른 작품활동이 되겠습니까?

□ 윤 제가 느낀것도 바로 그런겁니다. 예를 들자면 방송을 11년째 하고 있는데 담당 PD가 건축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대담을 나눌땐 건축설계사, 또는 건축설계자라고 해요. (웃음) 한테, 이런 풍토가 된테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되요. 정립이 안됐다고 할까요. 우리의 단체를 중심으로해서 권익보호내지 홍보활동등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니까요.

□ “문화, 문화하면서 건축문화는 왜 그렇게 모르는지…”

□ 엄 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죠. 많은 넉센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넉센스 속에서 살고 있는것 같아요. 文化, 文化하면서 건축문화는 왜 그렇게 모르는지….

□ 윤 작은것부터 우리 스스로가 고쳐나가면 머지않아 地位向上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특히 협회를 통해 공동보조를 취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되리라 믿고, 또 선배분들이 앞장서면 후진들에게 큰 힘이 될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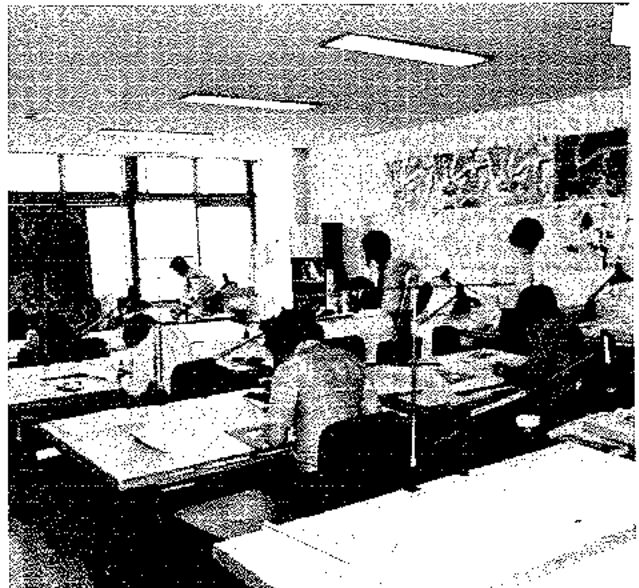
□ 엄 그렇죠. 힘을 합쳐야죠.

□ 윤 문화적인 측면에서 건축계의 현황, 다시 말해서 도시가 콘크리트로 뒤덮혔다고 악평도 하는데 未來의 건축문화는 건축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엄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는 안 봐요.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얼굴을 못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준급의 작품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4, 5년전 부터 좋은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건축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예전에는 없었느냐하면 그런건 아니죠. 신라, 고구려, 백제 때도 역시 훌륭한 선조들이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해방이후 요직전 까지 왜 공백기간 있었느냐하면 그건 경제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건축문화는 정치, 종교, 기후, 풍토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당시 우리나라 GNP가 얼마였읍니까? 불과 몇불 안됐잖아요. 그러니 좋은 집 지을 엄두내겠읍니까. 그러니까 근 부터는 달라졌다 이겁니다. GNP가 높잖아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건축가는 설득력이 있어야겠어요. 건축주는 땅이 생긴대로 다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싸우고, 설득하고 해야 되더군요. 힘들죠.

□ 윤 네, 전 그런것을 民度라고 봤읍니다. 민도가 낮으면 제아무리 돈이 많아도 별수없죠. 좋은 예로 브라질 수도를 건설할 때 건축가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훌륭한 선생수도를 만들어 냈지만 국민들이 민도가 낮아 이사를 안가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 엄 그래요. 그래도 돈이라도 있으면 훨씬 수월하죠. 그런데 돈도없고 민도도 낮으면 건축가가 좋은 작품하긴 무척 어려워요. 선진국들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스케일이 작다는 겁니다. 워낙 땅덩이가 좁아서도 그렇겠지만… 造景이라는 것을 전혀 무시하려고 들어요. 물론 「건물+조경」이면 1백프로지만 형편상 그럴수는 없고 주어진 여건속에서의 조경마저도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조명을 비추고 멋있는 쇼 케이스에다 진열하면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나무하나를 심어도 분위기에 맞는 나무를 심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안돼요.

□ 윤 그런점은 도시건축물에만 국한된건 아닌것 같아요. 조경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농촌형주택이라는 것 말인데요. 영 예전의 농촌이 아니더군요. 전문 건축가의 그것은 아니라고….

□ 엄 네 바로 보셨읍니다. 그런 농촌주택이 세워질 수 있다는것 부터가 넉센스입니다. 건축은 건축가에게 맡겨야되고 학자는 학문을 해야죠. 국가 건축분야를 학자

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건축가가 당연히 맡아야죠. 사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축정책의 不在라고 생각합니다.

□윤 앞으로의 건설정책은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겠지요. 선생님 그동안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 이것만은 소개할만한 작품이다. 하고 말씀하실만한 作品 두어가지 소개해 주시죠.

□엄 소개할만한 作品이랄것까지는 없습디만, 뭐 그동안 롯데호텔, 세종문화회관, 대한교육보험사옥을 했다고는 하지만... 학교로서는 소개할만한 것은 리틀·앤·젤스학교, 그러니까 선화예술학교를 말 할 수 있겠읍니다. 또 하나는 남서울 컨트리·클럽 입니다. 이 두가지가 내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큰 건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돈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런대로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소개해드린 두곳은 내 個性과 哲学이 담긴 作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화예술학교는 韓國的인 정서가 깃들인 현대적인 학교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강당이 준공되는데 학교강당만으로는 아깝고 자그마한 文化殿堂이라고 하는 편이...

□윤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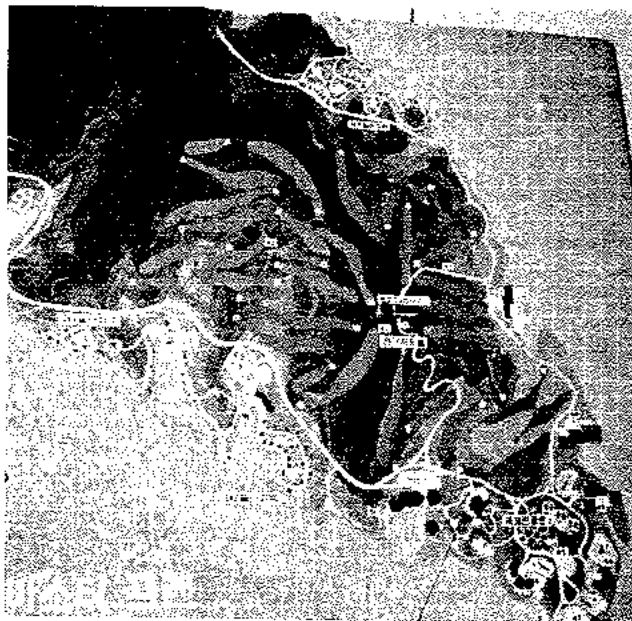
□엄 그렇죠. 공개할겁니다. 그 무대라던가 그밖에 모든 것이 대단합니다. 한때 학교측에서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 센터의 貴族의 분위기를 내려고 해서 한국적인 정서를 다소 빼앗겼읍니다. 아뵤든 모든 계획은 제가 했고, 나름대로 내부나 복도, 교실의 모듈 등은 나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作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작품을 대하는 눈이 애매한 경지에서 확고한 경지로 되더군요.”

□윤 이제 환진갑 다 지나셨는데 요즘은 여가선용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요?

□엄 우선 건강이 문제더군요. 몸이 생각을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극성스럽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명예욕도, 돈에 대한 욕심도 다 버리고 또 공식적인 활동도 거의 안하고 있죠. 되도록이면 쉬고 편하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作品에 대한 의욕은 오히려 젊었을때 보다 더 있지 않은가 생각돼요. 이제는 作品을 대하는 눈이 확고해진것을 느껴요. 옛날 젊었을 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애매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애매한 경지에서 확고한 경지로 되었다 이겁니다. 年輪이 준 지혜라고 할까...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할까요. 그밖에는 가끔씩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윤 그러시다 보면 作品쪽으로 더 기울리시겠네요. 또 사무실을 운영하시려면 보조원 문제등도 신경을 쓰셔야 할텐데요.

□엄 네, 다소... 그러나 일을 따려고 뛰어 다니지는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 문제때, 우리나라 풍토가 그래요. 5, 6년 지나면 내걸을 떠나요. 그 사람들이 나가면 소장도 되고 사장도 되는데 붙잡을 수도 없고, 사실은 한 10년이상 함께 있어야 내 뜻이 제대로 전달돼서 作品이 제대로 나올수 있는건데... 그런 저런 문제로 또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기도 하군요.

□윤 마지막으로 협회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좀...

□엄 잘들 하고 계신데... 여러가지 일이 있겠읍니다만, 모두가 협조할 때 우리 스스로의 권익도 옹호되겠고 지위향상도 이루어 지는 거겠죠.

□윤 그렇죠.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뒷전에만 계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보다 나아질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안타까워요.

협회도 최근에 면모를 달리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긴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



支部巡訪

경북지부편

問：地域社会開發方向？

答：1 大邱都市計劃区域

1. 大邱 都市計劃 区域

規模는 1市와 隣接 4郡 一部가 包含된 735,983km²로
서 그 中 開發可能面積은 97,068km²이며 開發制限 区域
이 531,020km²를 차지하고 있다.

(1) 大邱의 位置와 使命

- ㉠ 嶺南地方의 政治, 經濟, 文化, 交通의 中心都市 ㉡
- 內陸 工業開發의 據點 都市 ㉢ 國土計劃上 大邱
- 中圈의 核心 都市 ㉣ 地域開發의 主導的 中心都市
- ㉤ 韓國 3大 都市

(2) 都市性格 및 目標

- ㉠ 嶺南地方의 中樞管理 都市 ㉡ 商工業 都市
- ㉢ 教育文化都市

2. 2,000年代 長期綜合計劃

國土經濟 成長과 産業 高度 發達에 따른 2,000年代 都
市의 各種 弊害를 防止하고 均衡의 計劃의 開發을 為 하
여 다음과 같이 長期計劃을 樹立하였음.

(1) 基本 目標

經濟社会的 發展에 따라 展開될 大邱 都市像 定立

- ㉠ 土地基盤에 適合한 都市 開發의 方向 提示 ㉡
- 適定 都市人口의 收容과 適定 施設의 開發 ㉢ 都
- 市 特性의 開發과 都市 産業의 振興 ㉣ 生活 環境
- 과 福祉基盤의 整備

(2) 開發指標 (2000年代)

- ㉠ 人口：300萬 ㉡ 面積：1,040.360km² ㉢ 道
- 路：529km (中路以上) ㉣ 都市電鉄：78km (2個路
- 線) ㉤ 住 宅：712,500棟 (보급율95%) ㉥ 上水
- 道：600ℓ (보급율98%) ㉦ 下水道：3.600km (보
- 급율 90%) ㉧ 公園：61.52km² (62⁹坪/人) ㉨ 遊園地
- ：9.03km² (0.91坪/人)

3. 直割市 昇格

大邱는 直割市 昇格에 따라 行政区域이 179,720km²에
서 456,680km²로 확장되었으며 都市의 過密化를 防止하고
均衡있는 都市 發展을 為하여 다음과 같이 都市計劃再整
備를 樹立中에 있음.

(1) 計劃概要

- ㉠ 人口：2,465천명人 ㉡ 区域：既定：735.983km²
- 變更-公山, 高산면 編入 ㉢ 基本年度：1980年㉣
- 目標年度：1991年

(2) 計劃의 方向

- ㉠ 既存計劃의 再檢討 및 問題點 抽出 ㉡ 上位計

- 劃의 投影 ㉢ 合理的인 土地利用計劃 ㉣ 交通体
- 系의 再整立 ㉤ 地下鉄 및 電鉄網의 基本構想 ㉥
- 円滑한 住宅供給計劃 ㉦ 教育 文化 福祉施設의
- 合理的인 배치 ㉧ 공원녹지확충

問：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집단개발방향？

答：■ 아파트지구 및 택지개발：6 個지구로서 754千평
中 255千평은 개발완료되고 잔여지에 대하여 잔선시설
을 설치지원하고 기본계획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계획
이며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松峴지구에 163千 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것입니다.

■ 구획정리사업：24개지구 1,100만평을 시행하였으
며, 현재 2 개지구 231,000평을 시행중이며, 장차 4
개지구 173만평을 계획중입니다.

■ 재개발지구：현재 26個지구가 지정되어 10개지구
가 완료되었으며 잔여지구는 타당성 재검토와 함께
주민 숙원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 추진
할 것입니다.

問：建築文化 暢達을 為하여 다같이 努力해야 할 事項
이 있으시다면？

答：建築文化가 단순한 構造物이 아니라는것은 가장 人
間的이라는 點에 있다고 봅니다. 지나친 合理主義나
紀念碑的 傾向, 고집스런 造形의 追求에는 문제가 있
읍니다. 特히 都市 안에서 建築問題는 建築主나 建
築士의 주장만으로 될수 없으며 좁은 視野로 일사백
호에 偏重한다면 두고두고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人
間의 心性을 포용할 수 있는 건축문화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問：시정방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은？

答：建築士가 이미 建築行政에서 보답하고 있는 責務는
매우 크기 때문에 誠實하게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支
援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의 업무는 個人的이기
때문에 全体(協會)를 通하여 成長하여야 할 것입니다.

問：建築許可過程에서의 시정 방침？

答：當市에서는 建築許可業務用을 6 個 区庁에 委任하
고 있으므로 剛一性있는 建築民願의 處理를 為하여 定
期, 隨時로 確認指導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 편입되
는 읍면에 대한 行政上 標準化를 爲하여 市民 弘報와
관계인의 教育에 힘써 나아갈 것이며 지역지구 상호
간, 建築用途 相互間의 모순을 없애고 不適格 建築物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관계법규의 온전한
理解를 通한 予先의 방침으로 適法, 量質의 建築物이
되도록 努力할 것입니다.

問：建築審議對象物의 審議節次

答：建築法上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외에 아래와 같은 主
要 건축물의 허가시에는 区庁의 심의 신청을 本庁에서
週一圖 심의하고 있습니다.

審議對象建築物- 6 층이상 / 옥내주차를 요하는 건축물
연면적 2000m² 이상 (공장은 3000m² 이상) 共同住宅 (*)

대구시 건축 조례

제 정 (1980. 6. 23. 조례 제1283호)
 전면개정 (1981. 5. 1. 조례 제134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구시의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외의 재해위험구역을 포함한다)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제3조 (용도제한) 풍치지구내에서 영제 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기재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 공 장
2. 창고시설
3. 운수시설
4. 교정시설
5. 영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조 (전폐율 등) ①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3/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주거지역내에 지정된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4/10로 한다.

② 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6/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 주거지역내에 지정된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평방미터로 한다.

제6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1미터

제7조 (용적율)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9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2. “제2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3. “제3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4. “제4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5. “제5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한 경관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제10조 (건축심의) ①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의 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용도제한) ① 제1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 시장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전재상, 공구상, 철물점
3. 공 장
4. 창고시설
5. 교정시설
6.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7.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8. 묘지판면시설
9. 자동차 판면시설
10.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② 제2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기재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 제3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기재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 제4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기재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 제5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기재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미관지구 : 330명방미터
2. 제 2 종 " : 200 "
3. 제 3 종 " : 200 "
4. 제 4 종 " : 165 "
5. 제 5 종 " : 200 "

제13조 (대지안의 공지) 미관 지구내의 건축물의 주전면 도로 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에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1. 제 3 종미관지구	2 미터
2. 제 4 종미관지구	"

제14조 (건축물의 높이) 제 4 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 한다)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 인접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 종미관지구	15	8
제 2 종 "	10	6
제 3 종 "	15	9
제 4 종 "	-	-
제 5 종 "	10	6

② 제 1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계기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평방미터)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 층 이 하	100
4 ~ 10 층	150
11 ~ 15 층	400
15 층 이 상	500

제16조 (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 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미관지구내에서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천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미관지구내에서는 골목, 환기 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 4 장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8조 (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최저고도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표에 계기하는 범위 이상으로 한다.

구 분	건 폐 율 (퍼센트)	용 적 율 (퍼센트)
높이의 최저 한도를 10미터미만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	3 / 10	100
최저높이를 10미터이상 20미터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	4 / 10	200

제19조 (최고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최고고도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미터 이내에서 지정한 최고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폐율 : 5 / 10
2. 용적율 : 600%

제 5 장 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0조 (용도제한) 교육 및 연구지구 내에서는 영제147조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건축물은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 장
2. 운수시설
3. 교정시설
4. 영부표 제 4 항 (근민생활시설) 중 제 6 호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 6 장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1조 (용도제한) 업무지구 내에서는 영제148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 장
2. 종교시설
3.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4. 운동시설
5. 교정시설
6. 자동차 관련시설 (차고, 세차장을 제외한다)
7. 동물관련시설

제22조 (특정업무지구내의 용도제한) 영제148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 공고한 업무지구 내에서는 제21조에 계기한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운수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제 7 장 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3조 (전폐율)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2 / 10
2. 제 2 종 " : 3 / 10
3. 제 3 종 " : 4 / 10

제2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500평방미터
2. 제 2 종 " : 400 "
3. 제 3 종 " : 200 "

제25조 (대지안의 공지) ① 제 1 종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4 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2 미터

② 제 2 종 및 제 3 종 공지지구 내에서 건축할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미터 초과 도로변 : 1.5미터
2. 4 미터 이하 도로변 : 1.0미터

제 8 장 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6조 (용도제한) 공항지구 내에서 영재1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화학공장

제27조 (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 장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8조 (용도제한)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2. 농수산물 시험장 및 검사소
3.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에 관련되는 연구소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자의 주거용 건축물
5.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6. 근린공공시설
7. 일용품 소매점, 이용점, 미용원, 약국의원, 간아음식점, 공중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생활 시설

제10장 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9조 (건축제한) 재해 위험구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동차 관련시설
2. 동물관련시설
3. 근린운동시설, 운동시설
4.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준치기간 6 개월이내의 가설 건축물

제11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30조 (벽면의 위치) 영재1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건축물으로부터 1 미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1조 (담장의 구조) 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 파편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시계획구역내의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담장의 높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담장 및 벽면의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장 대지내의 조경

제34조 (대지내의 조경) 영재168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 재 밀 도 (평방미터)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2 본 이상	상 록 수 40 낙엽 수 6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0.4 본 이상	-

제35조 (조경공사비의 예치) 영재168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 기술 자격취득자 2 인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13장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 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36조 (적용의 범위) 이장의 규정은 법제53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 완화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7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는 3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다음각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40미터 이상 도로변 : 1/2
2. 40미터 미만 도로변 : 1/3

제14장 건축위원회

제38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은 영제17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39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 -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게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의 위원회의 의결로 가결하기로 할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결할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포항시건축조례

(포항시조례제925호1981. 4. 21공포)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조례는 포항시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외의 재해위험구역을 포함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2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3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관광이 직접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4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5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4호에 계가한 경우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제4조 (건축심의) 1.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그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용도제한) ① 제1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가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 시장
2. 철물기타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전채상, 공구상, 철물점
3. 공장
4. 창고시설
5.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치료소
6.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7. 교정시설
8. 묘지관련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
10.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② 제 2 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9 호에 제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 제 3 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 1 항 내지 제 8 호에 제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 제 4 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 제 5 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제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6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미관지구 300평방미터
2. 제 2 종 미관지구 200평방미터
3. 제 3 종 미관지구 200평방미터
4. 제 4 종 미관지구 150평방미터
5. 제 5 종 미관지구 200평방미터

제 7 조 (대지안의 양지) 미관지구내의 주거용 건축물은 주전면도로측의 건축선으로 부터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지리이상을 뛰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에의 증축 또는 일부 개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 1 종 미관지구 2 미터
2. 제 2 종 미관지구 2 미터
3. 제 3 종 미관지구 2 미터
4. 제 4 종 미관지구 2 미터
5. 제 5 종 미관지구 2 미터

제 8 조 (건축물의 높이) 제 4 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3 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제외한다)은 다음표에 제기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위 : 미터)

층 의 수	건 축 면 적	비 고
3 층 이 하	100	
4 층 - 10 층	150	
11 층 - 15 층	200	
15 층 이 상	600	

② 제 1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제기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위 :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 종미관지구	10	8
제 2 종미관지구	8	6
제 3 종미관지구	8	6
제 4 종미관지구		
제 5 종미관지구	8	6

제10조 (건축물의 노양)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는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규칙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미관지구내에서는 새etak물 전조대, 장독대, 천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는 그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주된 건축물의 외벽과 이에 대항하는 대지 경계선과의 사이에 있는 대지부분의 면적의 1/8 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2조 (최저고도 지구내의 건축제한) 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물,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범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률 : 3 / 10
2. 용적률 : 100%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300평방미터

제13조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률 및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미터 이내에서 저정한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률 : 6 / 10
2. 용적률 : 800%

제 4 장 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4조 (용도제한) 임항지구내에서는 영 제14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해운항만청,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축항사무소, 항만공사사무소, 항만보안관제사무소, 항만용역사, 도선사무소와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및 차고, 소방시설, 보안시설
2. 임항철도에 부수되는 건축물, 조선소, 선박수리공장, 선가대, 간선거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3. 해상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의료 시설, 합숙소, 급식소, 공중욕탕, 이발소, 휴게소 및 바닥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의 유키장)
4. 임항창고(냉동창고, 싸이로, 연료저장소) 선객이용관계 시설, 급유시설, 수(소)화물 취급소

제5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15조 (벽면의 위치) 영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폭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을 1층의 벽면을 건축선으로부터 0.5미터이상 피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제16조 (담장의 구조) ① 도시계획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파편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시계획 구역내의 담장의 높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관공서, 아파트, 공동주택, 은행은 투시담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담장 및 벽면의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대지내의 조경

제19조 (대지내의 조경) 영 제16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 등 조경은 다음표에 제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수고 2미터이상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평방미터)	상록비율 (%)
교 목 (줄기가 굵고 높 아지라는 나무)	0.4본 이상	상록수 60 낙엽수 4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 별이 분명하지 않 고 키가낮은 나무)	0.6본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치) 영 제16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사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7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21조 (적용범위) 이정의 규정은 법제53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완화 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전폐율: 전폐율의 최대한도는 10분의 9 이하로 한다. 다만, 조거전용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공치 지구 및 공치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 제18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전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한다.

제23조 (용적율) ①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 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소한도는 당해지구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로 한다.

②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에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것으로 한다.

$$* 배수 = \frac{\text{대지면적의 최소한도면적}}{\text{당해대지면적}}$$

제24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5조 (대지이외공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피위야할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16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피어야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기능상 부득이산중축)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 실, 설비등은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과 규정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폐지조례) 포항시 조례제645(77. 1. 10) 공치지구 건축조례
조례제645(77. 1. 10) 임항지구 건축조례
조례제645호(77. 1. 10) 비관지구 건축조례
조례제508호(73. 5. 11) 건축공사 감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이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중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로서 기존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경주시건축조례

(경주시조례 제900호 1981. 5. 1 공포)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라 함은 영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2종 미관지구”라 함은 영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3종 미관지구”라 함은 영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 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 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4종 미관지구”라 함은 영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한국 고유의 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5종 미관지구”라 함은 영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4호에 계기한 경우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제4조 (건축심의) ①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용도제한) ① 제1종 내지 제2종 미관 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3.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장의사, 가족병원, 다만 종합병원에 부속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자동차 관련시설(차고지를 포함한다)
5. 연탄공장, 저탄장, 창고시설
6. 제재소, 목재판매소, 목공소
7. 양곡가공업소, 다만 제과점은 제외한다.
8. 석물가공공장
9. 정육점, 세탁소
10. 옥외 작업장을 갖는 건축점
11. 공장
12.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② 제3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영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 계기하는 건축물

2.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③ 제4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영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 계기하는 건축물

2.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④ 제5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 불국사 주변에 지정된 제5종 미관지구내(이하 “불국사 제5종 미관지구”라 한다)에서는 “별도1”에서 지정하는 가구별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불국사 제5종 미관지구내 지정된 요식 및 여관가구와 여관 및 주거가구내에서는 단일용도를 선택 건축하여야 한다.

제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330평방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330평방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165평방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② 대지의 주위가 건축물 또는 도로,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간이 있어 대지의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대지안의 공지) ① 제3종 내지 제5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주택용 건축물(점용 주택과 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변의 미관에 조화될 수 있는 설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불국사 제5종 미관지구내에 지정된 용도별 가구내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거가구, 호텔가구, 주거 및 여관가구 : 10분의 5
2. 점포가구, 업무가구 : 10분의 7
3. 요식 및 여관가구
 - 가. 여관 용도의 건축물 : 10분의 5
 - 나. 요식업 용도의 건축물 : 10분의 7

제8조 (건축물의 높이) ①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종 및 제2종 미관지구 : 2층이상 다만, 용도상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의 미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종 미관지구 : 1층이하,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지 아니한다.
3. 제4종 미관지구 : 1층으로서 7미터이하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종 미관지구 : 1층이상
5.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국사 제5종 미관 지구내의 건축물은 “별도2”에서 지정하는 가구별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층 건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종 및 제4종 미관지구내의 1층건물은 그 높이를 5.4미터 이상 7미터 이하로 처마 높이를 3미터 이상 3.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9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의 단독주택의 건축면적은 6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제180조 제4항

제3장 자연환경보전지구내의 건축제한

의 규정을 적용받은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은 40평방 미터로 할 수 있다.

② 미관지구내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미관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인 경우로서 전단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길이의 10분의 7 까지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1종 및 제2종 미관지구	8	6
제3종 미관지구	10	6
제4종 미관지구		
제5종 미관지구	10	6

③ 제1종 제2종 및 제5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위 : 평방미터

층 의 수	건 축 면 적
2 ~ 3 층	100
4 ~ 5 층	150
6 층 이 상	200

제10조 (부속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주된 건축물의 일면과 외벽과 이에 대향하는 대지 경계선과의 사이에 있는 대지부분의 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내의 본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 중 그 구조 및 형태가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이고 도로변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건축물의 모양) ①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대칭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탑 이외의 것은 건축할 수 없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및 색채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의 건조대, 장독대, 기타 유사한 시설물은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용도제한)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에서는 다음 자호에 계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2. 농수산물 시험장 및 검사소, 양어장(옥내)
3.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5.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6. 군립 공공시설, 종교시설
7.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약국, 의원, 간이음식점, 공중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군립 생활 시설

제4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14조 (벽면의 위치) 도시계획 구역내의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1층의 외벽 각부분을 건축선으로부터 0.7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30조 제2항 또는 영제168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제3종 내지 제5종 미관지구내의 대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담장의 구조) 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파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시계획 구역내의 제1종 내지 제5종 미관지구내에서의 담장의 높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담장 및 벽면의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대지내의 조경

제18조 (대지내의 조경) 영제1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평방미터)	상록비율(퍼센트)
교목(줄기가 크고 굵으며 높이가 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상록수 60 낙엽수 4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4본 이상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치) 영제16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6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20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제53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 완화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 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전폐율) 전폐율의 최대한도는 9/10으로 한다. 다만 주거 전용지역, 자연 녹지지역 및 생산 녹지지역과 풍취지구 및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제 18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전폐율에 1/10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22조 (용적율) ①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2 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 이하로 한다.

②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2를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text{※배수} = \frac{\text{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text{당해 대지면적}}$$

제23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4 이상으로 한다. 단, 미관지구내에는 10분지 5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 할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서 영제16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떨어져 할 거리의 1/2 이상으로 한다.

제25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 부설, 설비등은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과 증전 규정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7장 건축위원회

제26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제17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27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과 건축담당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33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5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제 5 조 제 5 항,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각단서, 제 10 조 제 2 항, 제 11 조 제 1 항 단서, 제 12 조 제 3 항의 규정은 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경주시 조례 제 569 호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경주시조례 제 568 호 경주시 자연환경보전지구 건축조례, 경주시 규칙 제 230 호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을 적용한다.
-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제 180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구미시 건축 조례

(구미시 조례 제 250 호 1981. 3. 16 공포)

제 1 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용도제한)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매시장, 시장
2. 철분, 기타 폐물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전채상, 공구상, 철물점.
3. 공장
4. 창고 시설
5. 교정 시설
6.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치료소
7.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8. 묘지관련 시설
9. 자동차 관련 시설
10. 단독주택 (단 공판과 2층 이상에 있는 단독 주택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제 7 조 (대지안의 공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대지안의 공지) 미관 지구내의 건축물은 주전면 도로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각호에 제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에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 | |
|--------------|------|
| 1. 제 2 종미관지구 | 2 미터 |
| 2. 제 3 종 " | " |
| 3. 제 5 종 " | " |

제 8 조 (건축물의 규모) 제 2 항중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 지구내에”를 “제 2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내에”로 한다.

제 13 조 (용도제한)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
2. 종교시설
3.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4. 운동시설
5. 교정시설
6. 자동차 관련 시설 (차고, 세차장을 제외한다)
7. 동물 관련 시설

제 15 조 내지 제 20 조를 삭제하고 제 1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5 조 (벽면의 위치) 영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폭 8 미터 이상의 도로에 변하는 건축물은 1 층의 벽면을 건축선으로부터 0.3 미터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제 21 조 내지 제 25 조”를 “제 16 조 내지 제 20 조”로 하고 제 21 조 내지 제 35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석한다.

제 21 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 53 조의 7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 3 장 내지 제 5 장의 규정 완화 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명 공고하는 간선 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 22 조 내지 제 25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전폐율) 전폐율의 최대한도는 10 분지 8 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공공지구 및 공지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 제 180 조 제 4 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전폐율에 10 분지 1 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 23 조 (용적율) (1)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2 분지 1 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 배로 한다.

(2)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2 분지 1 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 1 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text{배수} = \frac{\text{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면적}}{\text{당해 대지 면적}}$$

제 24 조 (대지면적)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30 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4 분지 1 이상으로 한다.

제 25 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0.5 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 168 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 분지 1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 실, 설비 등은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과 중전 규정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27조 (기능) 건축 위원회는 영 제17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28조 (조직)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 (소위원회) (1)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에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게 한다.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5) 소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전문위원) (1)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 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3)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결함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 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5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 (비밀준수) 위원회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 (시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중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로서 기준 면적의 10분지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4)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100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가들과 자라는 20여년

기술문화사 도서안내

★ 새로운 구조 설계의 실제 <철근콘크리트조편> ₩ 8,000

내용

1. 구조설계실무자료 2. 구조제책 3. 하중 4. 응력산정 5. 단면의 설계 6. 기초설계 7. 설계에 및 준공 슬래브

※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계산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의 계산으로 보기드문 짜임새 있는 편집.

★ 최신 建築綜合問題集 ₩ 7,500

내용

※ 건축사, 기사, 기타 시험에 완전대비 건축설계, 제도, 계획, 구조, 구조역학, 법규, 실비, 작문, 실재물재문제(부록)를 체계있게 엮인 된 문제를 해설과 함께 편집하였음.

★ 住宅計劃과 디자인 ₩ 15,000

※ 최우수 입선작 및 실례 400여종을 대지의 조건, 가족상태, 방향을 고려한 평면도시도를 함께 수록하였음.

★ 建築의配筋 ₩ 4,000

내용

설계 및 현장시공상의 참고용으로서 설계사진과 함께 근래 보기드문 配筋상태를 자세히 도면과 이력으로 엮어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꾸며졌음.



기술문화사

중구 을지로5가 77-1 무궁화BD205%

TEL : 266-7776 (을지전화국)

月間建築情報

主要工団 工場入住 활발 - 경기회복 조짐

올들어 36社, 相談진행 業体도 104社

4월11일, 商工部가 분석한 주요 工団의 입주현황에 의하면, 半月工団의 경우 80년도 입주분양실적이 31社(59,310평)에 불과했으나 81년에 들어 3月末까지의 1·4分期 실적은 16社(62,500평)가 분양을 마치고, 또 현재 상담중인 업체도 90여사를 넘고 있어, 34만평의 분양이 예상되고 있다.

昌原工団의 경우 80년도에 3社가 입주했는데 81년에는 이미 3社가 신청을 마쳤고 4社가 신청중이며 2社가 상담중 등, 80년에 비하면 한층 활기를 띠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龜尾·馬山·禪里工団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景氣回復의 조짐을 직접 알려주는 현상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86년까지 養老院 500개소 新築

보호대상 老人 5만여명 수용 - 보사부

81. 4. 11 ~ 5. 10

4월11일 保社部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老人은 전체 국민의 3.9%인 146만명이며, 이중 보호시설에 수용해야할 보호대상노인은 전체 노인 중 3.5%인 5만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보호대상 노인들을 수용할 養老院施設을 연차적으로 擴充하기로 하고 오는 86년까지 1개 시설당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養老院 500개소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분산, 신축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財源조달에 나섰다.

政府工事 都給下限線 확정

上位 142社는 「5,000만원이하」 못말라

4월13일 建設部가 中小建設業체를 육성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81년도 建設工事都給下限線」의 1건당 최저선은 5,000만원(80년도 4,000만원)이며 최고 도급한도액 소유자의 도급한선은 5억원(80년도 3억원)으로 결정됐다.

都給下限線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土木·建築·土建등 일반건설업 면허자 503개사중 142개사(도급한도액 40억원이상)로, 이들 업체는 5,000만원 미만 공사는 도급 받을 수 없다.

建設部는 이들 142개사를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19개 群으로 나누어 群別下限線을 따로 정했다.

따라서 81년도 도급한도액 7,010억원인 現代建設(1群)은 5억원 미만 공사를 맡을 수 없으며, 도급한도액이 3,000억원 이상인 東曲·大林·韓國重工業은 3억원 이하의 공사는 맡을 수 없게 됐다.

都給下限線制度가 적용되는 공사는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이 발주하는 일반공사에 한하며 민간이 분주하는 공사들은 제외된다.

서울 江南(汝矣島~蠶室), 地域暖房 적합

熱併合發電所건설 適地조사 - 動資研

4월13일, 動力資源 研究所가 UNDP의 협력 아래 연구한 「地域暖房 및 熱併合發電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1차개발 대상으로 서울 汝矣島·東部二村洞·盤浦·永東·蠶室을 연결하는 江南地域이 가장 적합하며, 이 지역에 대한 熱源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唐人里發電所 外에 露室地域에 1개의 熱併合發電所를 건설해야 될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 江南地域이 이같이 대상지역으로 적합한것은 ① 방대한 熱需要 및 기존 火力發電 인접 ② 氣候條件의 적합 ③ 中央集中暖房方式 보급 ④ 높은 人口密度 및 신규주택 위주의 住宅型態 ⑤ 配管 시스템에 적합한 평탄한 지역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動資部는 이같은 研究調査結果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韓電·서울시등과 협력,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된다.

地域暖房이란 住宅·商店·病院 또는 工場등에 蒸氣 또는 溫水를 1개 또는 수개의 집중된 熱源플랜트로부터 配管을 통해 熱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熱併合發電의 용도는 크게 나누어 産業体 工程 熱供給과 지역난방용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업은 지역난방용을 위한 熱併合發電의 이용에 해당된다.

工事費 절감 등에 技術開發補償費 지급

서울시, 節減額의 50% 범위 내에서

4월13일, 서울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발주 시공중인 施設工事に 새로운 技術工法등을 사용, 工事費의 節減, 工事期間의 短縮등 효과가 뚜렷한 경우에는 設計審査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당해 節減額의 50%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技術開發補償費를 지급키로 제도화 하였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각 공사발주 부서별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적극 시행, 추진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했으며, 시설공사계약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공사발주부서에서 기술개발 보상대상 공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청 관리관에게 보고토록 조치했다.

非業務用 土地 2,200萬坪 年内完却

정부-企業 非業務用不動産 처분계획 확정

4월1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80년 不動産申告對象企業, 1,198개 업체가 가진 신고한 4억5,300만평(토지 4억4,300만평, 건물 1,000만평)중 非業務用 800만평과 業務用중에서 非業務用으로 판정된 1,400만평등 모두 2,200만평을 年内에 매각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정부는 不動産景氣가 크게 침체돼있어 企業이 내놓은 不動産의 願買者가 거의 없을것으로 보고, 土地開發公社에 매각할것에 대비, 81년 발행키로한 2,500억원의 土地債券(土開公 자체운영자금 500억원을 포함)을 필요에 따라 증액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韓國銀行本店新築 年内着工 예정

第一銀·住銀本店 등도 新築할 예정

韓國銀行은 현재 本店 위치에 빈땅 일부를 활용, 20층 짜리 현대식 매머드 빌딩을 신축한다는 계획아래, 지난해 公募를 통해 선정한 設計를 토대로 實施設計 마면에 한창인데 이르면 年内에 착공하리라 한다.

第一銀行도 현재 신세계백화점옆 本店 건물이 너무 협소해 鍾路 신신백화점 자리에 20층짜리 건물을 신축할 계획 아래

백화점측과 이미 土地賣買契約를 체결, 주부관서의 事業施行認可 및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新築工事に 들어갈 계획이라 한다.

住宅銀行은 汝矣島에 本店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나 土地가 좁아 고심 중인데 市内에 마땅한 土地가 물색되지않는한, 여의도에 신축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韓一銀行은 南大門路 2가에 신축중인 本店 건물이 거의 완공됨에 따라 오는 7월께 옮겨갈것을 서두르고 있다.

7 개市 460萬坪 宅地開發予定地区로 告示

自然綠地地域 400萬坪, 住居地域 44萬坪

4월14일 정부는 서울·釜山·仁川·大邱·水原·安養·城南 등 7개 도시의 12개 지역 460만 1,000평을 宅地開發 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予定地区로 지정 고시했다.

건설부가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告示한 宅地開發予定地区는 △서울이 開浦地區 245만 2,000평, 高德地區 90만평 등 344만 2,000평으로 가장 많고, △釜山이 多大 1·2地區, 安樂·堂甘·萬德 등 5개地區 46만평, △仁川 住佐地區 15만5,000평, △水原 梅離地區 6만평, △安養 浦-地區 30만평, △城南 下大院地區 2만 1,000평, △大邱 松峴地區 16만 3,000평으로 채웠다.

건설부는 당초 81년부터 86년까지 필요한 公共部門 小宅地 4,225만평을 모두 宅地開發予定地区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1차로 住宅不足率이 심각하고 土地供給이 어려운 서울 등 7개 도시에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予定地區를 도시계획구역상 用途地域별로 구분하면 自然綠地 401만 4,000평, 住居地域 43만 7,000평, 商業地域 15만평으로 정부가 대규모의 自然綠地를 풀어 宅地로 만드는것은 해방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00년까지 300萬戶 건설해도 住宅難

경제기획원-長期展望

4월15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長期人口展望은 앞으로 經濟社會開發政策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미래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크다.

이중 住宅問題에 대해 본다면, 주택 문제는 86년까지 138만호를 건설하더라도 不足率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며 87~2,000년에 294만 6천호를 공급하더라도 부족율은 오히려 늘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核家族化가 계속돼 가구당 평균인원수가 86년에는 80년의 4.6명에서 4.3명으로 낮아질 전망이고, 주택부족이 두드러지고 있는 서울·釜山 등 대도시의 人口集中도 가세해 住宅難이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住宅不足率은 全國의으로 80년 25.5%에서 86년에는 21.4%로 낮아질것이지만 대도시도 그렇게 될지는 극히 의문이다.

2,000년에는 住宅不足率이 현재보다도 높은 26.3%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학교의 공나물교실은 中高校까지 확대될 뿐 아니라 大學進學人口도 현재 추세대로 늘어간다면 86년에는 현재의 수용능력보다 5배나 배 과외등 해묵은 社會問題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嶺南・湖南 일부지방에 地震

浦項은 震度 4, 벽 금가고 굴뚝 넘어져

4월15일 상오11시47분40초 부터 약 1분간 慶北浦項 東쪽 65km 바다밑 (북위 35°7' 동경130°1')에서 地震이 일어나 大邱・安東・浦項・金海등 秋風嶺 이남지역과 光州지역 등에서 집과 참문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었다.

震央地에서 가장 가까운 浦項지방에서는 震度 4의 中震이 일어 일부 주택가에서는 벽이 갈라지고 굴뚝이 넘어지기도 했으며 어떤 아파트에서는 주민의 대피소동도 빚었다. 浦項 시내의 백화점과 아파트 선반의 물건들이 모두 떨어지고 평음이 있었으나 정확한 피해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大邱地方은 이날 상오 11시47분40초부터 약 3초동안 震度 2의 지진이 있었고, 安東地方에서는 상오11시49분30초부터 5초간격으로 3차례 震度 3을 기록했다.

이밖에 蔚山地方은 震度 3의 지진이 4~5초, 古里地方도 震度 3을 기록했고, 金海에서는 약 10초동안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어, 관측자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고했다.

中央觀象臺는 이번 地震이 서울의 地震計에도 震度 1로 기록됐으며, 濟州道를 제외한 南韓 전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이나 정확한 지진의 규모는 각 測候所의 보고를 받아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있었던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지진은 震度 5를 기록했던 78년10월 7일 저녁~8일 사이의 忠南洪城의 지진이었다.

障礙者의 學校 11개소 建立 - 문교부

86년까지 총 697억원 투입

문교부는 4월15일, 내년부터 오는 86년까지 697억원을 투입, 장애자를 위한 11개의 特殊學校를 신설하고 760개의 特殊學級을 증설하여 장애자들의 就業率을 크게 높여기로 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特殊教育振興方案」에 따르면, 이같은 특수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로 현재 23.1%에 불과한 장애자의 취학율을 86년까지 60%로 높이고 강도 장애자의 취학율도 현재의 3.71%에서 30%로 높인다.

서울市 - 都市計劃事業에 따른 補償 개선

土地・建物보상 - 최근 鑑定價의 100%까지

4월17일 서울시에 의하면 土地 및 建物補償에 있어서 중진에 민원의 소지가 크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컸던 보상계획・시기・방법・절차 등을 폭 넓게 개선한 새로운 都市計劃事業補償節次方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같은 보상업무개선방안은 道路・上下水道・地下鉄・公園・市場・住宅등 서울시가 벌이게 될 53개의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土地 및 建物補償에 있어서 ① 시보에만 게재, 공람을 개별 통지해온데다가, ② 보상가격도 심하면 감정후 1년 이상이나 지나서 보상하거나 ③ 그것도 감정가격의 40~60%밖에 보상하지 않았으며, ④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거나 심지어 보상도 끝

나지 않은채 공사에 착공했으며, ⑤ 협의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을 지체, 직・간접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민원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都市計劃事業이 확정되면 사업내용을 비로 보상계획・시기・방법등을 土地 및 建物所有者 개인별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도 공고키로 했다.

또 補償金도 보상시점 1개월 이전의 감정가격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그 보상협의기간도 2개월 이내로 못박아 이 기간안에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무리 짓도록 했다.

84년까지 職業訓練院 5개소 建立

身體障礙・女性專門・工藝등 - 노동부

정부는 신체장애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직업훈련을 전담할 身體障礙者訓練院 2개원과 女性專門訓練院 2개원, 工藝訓練院 1개원 등 5개의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4월20일 밝힌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特殊職業訓練院 設置事業計劃에 따르면 이들 5개 훈련원은 오는 82년부터 착공, 84년까지 완공하며 주로 대도시와 산업체 또는 관광단지 인접지역에 설치하며 훈련기간은 1년정도로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들 5개 훈련원・건립 소요자금 전액을 借款으로 충당할 방침이라 현재 아시아開發銀行(ADB) 측과 약 1,000만달러(한화 67억원) 상당의 차관도입교섭을 추진중이다.

80년도 國內建築工事実績 1조8,358억원

建設協會조사 - 전국 508개業체

4월22일 大韓建設協會가 분석한 80년도 國內建設動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건설업의 계약실적은 土木부분에서 9,088억 8,400만원, 建設부분 1조8,358억700만원, 特殊工事業부분 830억1,600만원등으로 집계되었으며, 業體당 평균 55억6,635만원의 계약실적을 보였다.

이는 79년도의 계약실적 2조8,860억3,000만원에 비해 2% 감소한 수준인데 이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建設業체가 전체의 75.5%를 계약했으며, 慶北이 5.6%, 釜山 4.3%, 京畿 2.5%, 全南, 慶南등의 순이다.

海外建設輸出 계속 好調

1.4分期受注額 19억 1,000만달러

지난1.4분기(1~3월)중 海外建設受注額은 19억1,900만달러로, 작년 同期의 7억9,900만달러에 비해 2.4배로 늘었고, 올해 年間目標 70억달러의 27.4% 진도를 보이고 있다.

4월15일 建設部에 따르면 이같은 建設輸出 好調는 국제물가 상승으로 工事單價가 오르고 있는데다 海外建設業체들이 受注活動을 강화한데 따른것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 올해 年間 建設輸出額이 작년실적 82억5,000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駐車場 用途變更－集中團束 서울시, 1 차로 都心圈 건물대상

4월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물 부속 駐車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사무실·점포·창고 등으로 용도를 바꾼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시정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斷電·斷水와 建物使用制限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사대상 건물 2,400여 가운데 1단계로 鍾路·中區동 도심권의 건물 390개를 4월말까지 조사하고 나머지 2,000여 건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駐車場整備地区 완화시책 차질?

서울시 관련부서간에 異見을보여

駐車場整備地区의 완화문제를 놓고 서울시의 관련부서들이 서로 異見을 보여, 당초 7월초부터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그 완화시책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駐車場에 관한 운영 및 관리책임부서인 서울시 교통국은 駐車場法(79년 7월공포)에 따라 서울시 전역(자연녹지·그린벨트 제외)을 주차장 설치기준이 엄격한 駐車場整備地区로 지정한 것을 무리라고 지적, 都市計劃局에 그동안 주차 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를 개정, 교통이 혼잡하지않은 外廊地域에 대해서는 駐車場整備地区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都市計劃局은 해제지역에 대한 심사가 어려운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어 駐車場整備地区의 완화문제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都市計劃局內의 책임부서인 都市計劃課는 그동안 교통국에 건의와 많은 시민들의 완화에요청에 따라 駐車場整備地区의 완화를 검토했으나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바 완화조치후 혜택을 받지못한 주민들로부터의 항의를 우려, 완화조치 필요성은 인정된 채 작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 규정에 따르면 駐車場整備地区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계없이 150m² (45평)마다 차량 1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연면적 1,000m² 이상일 때 150m²마다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商業地域이나 연면적 2,000m² 이상일 때 400m²마다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토록된 他地域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違法建築처벌, 監理者 외 建築主·施工者도

모범建築士들은 표창키로－서울시

서울시는 違法建築物이 적발되었을때 종래 工事監理者 위주로 처벌해오던것을 監理者를 비롯 建築士와 施工者도 함께 처벌하고 建築賞을 새로 제정, 模範 建築士나 施工者·建築主등을 표창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서울시내에 위법건축물이 늘고있는 原因이 監理者만 일방적으로 처벌받고 建築士와 施工者는 罰金刑 정도의 가벼운 처벌때문이라고 판단한것이다.

서울시는 警察과 合同團東班을 편성 4월27일부터 5월20일까지 서울시내 건축물에 대한 一齊調査를 실시,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같은 강력한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國民住宅 宅地 坪당 10만원이하로 공급 도시주변 綠地 해제 불가피－李 建設차관

李 建設부차관은 앞으로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宅地坪은 평당 10만원 이하로 공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 차관은 4월27일 KBS-TV와의 대담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렴한 宅地坪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 이같이 말했다.

宅地坪을 평당 10만원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주변의 녹지 해제가 불가피하다.

李 차관은 또 국민주택도 살 수 없는 최저 소득계층을 위해 민간업체의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建設協會－設計·施工 一括發注를 촉구

中小建設業의 수직적 系列分業化도

5월 4일 大韓建設協會는 「韓國 建設業 그 잠재적 可能性」이란 논단을 통해, 현행 建設業法上 건설업은 단순히 設計圖에 따라 물리적 시공, 그것도 土木과 建築部門만을 시공케 배이고, 企劃·調査·計劃·設計·監理·試運轉등은 技術用役育成法上의 技術用役業者가, 그리고 電氣 및 通信工事등은 또 다른 면허업체들이 시공토록 돼있으나 우리가 指向하는 技術集約의 分野란 모두가 企劃·調査서부터 設計·施工·試運轉에 이르는 一括發注의 터연키이 베이스의 사업들이며, 여기에는 電氣와 通信도 불가분의 部分이 되었다고 지적 이같이 촉구했다.

이 논단에서는 綜合建設業의 育成과 함께 고도로 전문화된 中小建設業을 키워 서로서로 系列化된 수직적 分業이 가능토록 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稅制上의 誘引策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大氣汚染 好轉기미를 보여

低硫黃油 공급따라－환경청

5월 6일 環境庁에 따르면 서울의 아황산가스(SO₂) 오염값은 80년초부터 8월말까지의 평균치가 環境保全法上 기준치인 0.05 p.p.m의 배를 넘어선 0.105p.p.m이었고 환경기준을 과한 날도 100일에 72일꼴이었으나 4%의 高硫黃分대신 0.3%의 低硫黃分 병커C油가 80년9월부터 서울火力(당인리발전소)에 공급된 후 80년 한해동안의 아황산가스 평균치가0.094 p.p.m으로 두 배 떨어졌고 혼탁한 날도 100일중 65일꼴로 호전되었다.

환경청을 勸資部의 협조를 얻어 81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서울지역에 유황분 4%의 병커C油대신 1.6%의 저유황유를, 유황분 1%의 輕油대신 0.4% 함유분을 공급키로 했다.

한편 80년말 현재 기타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치를 보면 부산이 0.058p.p.m 울산 0.053p.p.m, 대구 0.038p.p.m 이었고 혼탁한 날도 부산이 100일중 41일, 울산 47일, 대구 23일 꼴로 나타났다.

大企業들 - 大型社屋 · 빌딩 新築 再開

景氣回復기대, 事務室需要 늘어

5월 8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한 회사나 사무용 빌딩의 신축을 미루어 오던 大企業들이 경기회복의 기미가 뚜렷이 엿 보이고 자금이 풀려, 건설비 확보가 가능해지고 기업규모 확대로 사무실 수요가 증가될 것에 대비, 올81년에 들어 빌딩신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新東亞그룹의 大韓生命이 여의도에 60층규모의 국내 최대 사무실용 빌딩을 착공한데 이어

연면적 9,800평의 지상22층 빌딩을 가진 럭키그룹은 여의도에 33층 사옥을 드린 타워빌딩형(쌍둥이 빌딩)을 건설키로 했다. 서울시에 건축허가신청한 럭키의 여의도社屋은 연면적 48,000평 규모 내외자 700억원을 들여 오는 8월에 착공, 84년 7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現代그룹은 지상17층 연면적 7,800평의 자가빌딩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 5,000여명이 부족, 敎保빌딩 788평을 임차하여 大韓알이눔과 亞細亞商船을 수용하고 있는데, 前 微文高 자리에 연면적 20,000평 규모의 社屋新築을 계획하고 있다.

사옥이 없어 주력 4개회사를 비롯 대부분의 계열기업이 전세임차하고 있는 國際그룹은 漢江路에 확보된 2,800평 대지위에 연면적 20,000평 社屋을 신축키로하고 社屋建設팀을 구성, 외국 전문업체에 設計를 맡겨놓고 있다.

빌딩 5동을 운영하고있는 韓進그룹은 西小門소재 旧社屋 자리에 지상15층 지하3층 규모의 사무실용 빌딩을 80년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금년중에 착공키로 확정했다.

또 三星그룹은 3동의 빌딩 35,000여평을 가지고 있으나 太平路 再開 發地域을 매입하여 현재 三星빌딩보다 큰 규모의 새 빌딩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社屋이 있으나 사무실이 부족, 전세임차하고 있는, 鮮京그룹 등 재벌그룹과 대기업들도 대규모빌딩 신축을 검토하고있고, 자체빌딩 사정이 넉넉한 대기업은 大宇그룹을 비롯하여 大韓電線·三星·韓國火藥·雙龍·曉星·新東亞그룹 등이다.

새 國際空港 86년에 着工計劃

利川·水原·君子·南陽중 択一

尹子重교통부장관은 5월 8일, “현 金浦空港시설로는 8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현 金浦空港은 활주로 1개를 증설 확장하고, 86년에는 首都圈에서 國際空港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尹장관은 또 “현재 新空港후보지로 5개 지역을 놓고 立地여건등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國際空港후보지로는 서울 南쪽에 위치한 京畿道利川·水原·始興郡君子面·華城郡南陽面등 5개 지역중 1개소가 될것이라는데, 이중 利川이 가장 有力한 후보지로 등장하고 있다.

교통부는 그간 한국 과학기술연구소에 새 空港建設에 대한 用役을 주어 타당성 조사를 끝낸것으로 알려졌는데, 후보지중 君子와 南陽지역은 것팔이어서 難工事に 예상되고, 利川지역은 많은 農耕地를 収用해야 하며, 水原은 또다른 어려움이 있는등 모두 문제점이 있어, 후보지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이나.

교통부는 후보지가 선정되고 空港建設基礎作業이 끝나면 86년에 총규모 8,000억원으로 280여만평의 대지에 새 空港建設 工事を 착공, 91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이다.

國家技術資格취득자 76만 5 천명 - 80년말

技術士는 土木·建築부문이 70% 점유

5월 7일 韓國技術檢定公団에 의하면, 80년12월말 현재 技術士·技師·技能士 등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技術人力은, 765,040명에 달하고 이들 技術人力 가운데, 技術士는 2,722명, 技師 1 급은 61,075명, 技師 2 급은 146,625명, 技能士: 1 급은 30,875명, 技能士 2 급은 418,956명, 技能士補는 104,787명이다.

따라서 技術系는 모두 207,700명, 技能系는 모두 554,61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技術士資格取得者の 경우 분야별로 살펴보면 機械·金屬분야 229명, 電氣·電子·通信이 106명, 土木 1,167명, 建築 740명, 産業應用 128명, 國土開發 52명, 纖維 46명, 鑛業 46명, 造船 24명, 情報處理 17명, 에너지분야 15명 등이다.

土木·建築분야가 1,907명으로 기술사 자격취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82년에 初中高 141校 新設 - 문교부

5월 8일 문교부는 82년도에 신설될 국민학교 71개교, 중학교 45개교(공립 43, 사립 2), 고등학교 25개교(공립 18, 사립 7)에 대한 設立計劃을 承認했다.

지역별로 보면 國民學校는 서울 28, 부산 10, 경기 10,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남 4, 경북 9, 경남 5, 제주 1 개교 등이다.

中學校는 서울 13, 부산 6, 경기 8, 강원 2, 충남 2, 전북 4, 전남 6, 경북 2, 경남 2 개교이고, 高等學校는 서울 3, 부산 1, 경기 5, 강원 2, 충북 1, 충남 2, 전북 4, 전남 2, 경북 2, 경남이 3 개교이다.

地下鉄駅과의 地下通路 설치許可 - 서울

工事費는 建築主부담, 協約즉시 工事併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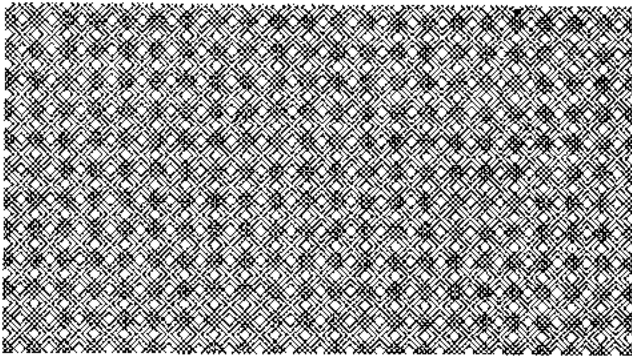
5월 7일 서울시 地下鉄建設本部가 확정된 地下鉄入口의 인근건물내 설치계획에 따르면, 地下鉄 2,3,4 호선상의 駅舍와 乙支路區間(2 호선)의 지하보도를 인근건물과 地下通路를 통해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건설비는 희망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希望者와 受託工事に 관한 협약을 맺는 즉시 地下鉄工事와 함께 실시하고 공사가 끝나면 건물내의 通路部分을 제외한 全通路施設物은 서울시所有로하고 管理도 서울시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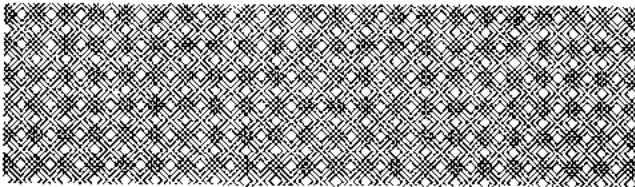
地下通路의 규모는 폭 4m 이상, 높이 3.2m 이상으로 하되, 연결부분은 地下鉄內 通路와 신축건물의 지하 1층 또는 지하 2층으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일단 설치된 出入口는 建物主가 임의로 폐쇄할수 없도록 하고 建物登記時 地下鉄連結通路 및 出入口의 명칭과 면적을 명시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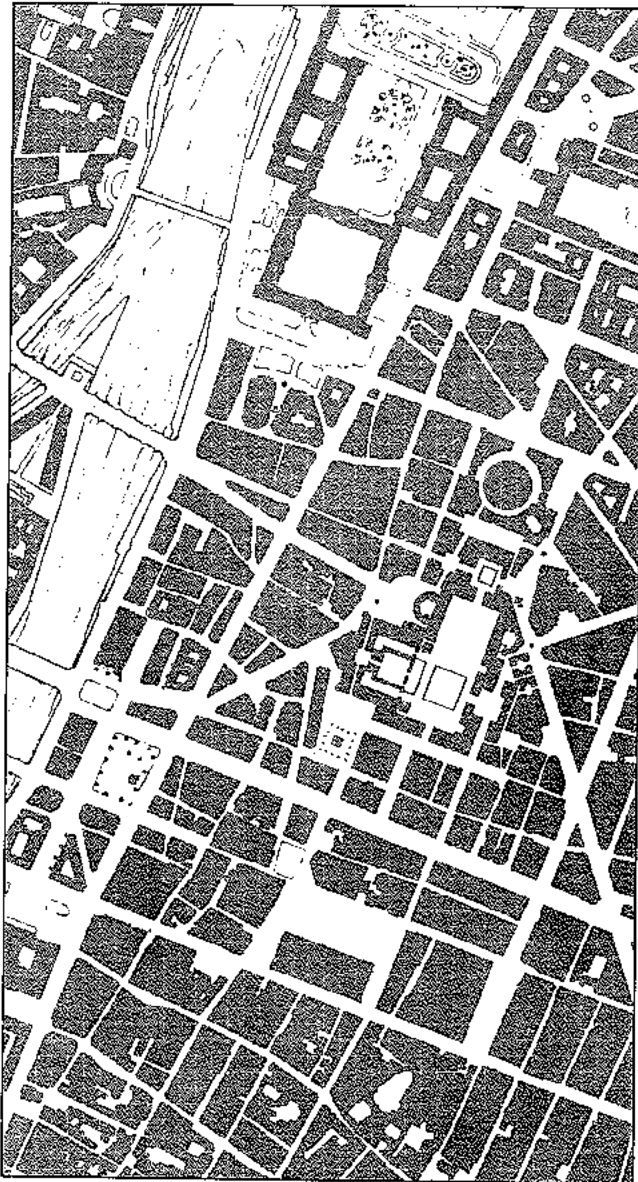
서울시는 地下通路의 건설비를 m당 300만원으로 계산해놓고 있다.



建築行政相談



1981. 4. 11 ~ 5. 10



－ 建築法에 관한 事項 －

문 1 : 공동주택의 개구부가 없는 측면은 대지경계선에서의 $\angle$ 정거리는 얼마인가요?

답 : 정북방향의 높이제한 규정에 저촉여부확인하고 기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거리명시가 되어있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문 2 : 15평대지내에 7평의 소규모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신고로 가능 한지요?

답 : 신고는 9평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일 경우만 가능하며 대지면적최소한도 전폐율 대지안의 공지등 건축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건축이 불가합니다.

문 3 : 주거지역안에서 주택(기존)에 별도도로 점포를 증축할 수 있는지요?

답 :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용도의 별도 점포는 기타 건축법의 제한에 지장이 없을 때는 증축이 가능합니다.

문 4 : 용적을 산정에 있어 지하대피소도 포함산정합니까?

답 : 건축법 22조의 3 규정에 의한 지하층은 용적을 산정시 제외됩니다.

문 5 : 주거지역내 대지 100평인데 타인이 10평을 침범하였는데 침범된 부분을 분할치 않고 90평 대지에만 건축할 수 있는지요?

답 : 분할을 하여 대지안에 공지등을 확보토록하여 건축을 하여야하며 분할치 않은 경우에는 기존건물을 철거하시거나 기존건물 면적을 포함하여 증축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 6 :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대지내 조정공사가 늦어져서 준공이 안 될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 : 조정기준도 건축법상 규정으로 당연히 조정공사가 완료되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건축조례 3조에 의거 준공후 조정공사비를 예치할 경우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7 : 재개발예정지구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지역내 20평정도의 기존단층주택을 2층으로 증축할 수 있습니까?

답 : 재개발지구 이외라면 건축법 주차장법등 건축관계 제법 규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증축 가능합니다.

문 8 : 기려가밭아 공사중인 건물을 연면적의 1/10범위내에서 1개층을 증축하는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신고로서가 가능합니까?

답 : 공사중인 건물의 연면적 1/10범위내에 설계변경은 신고도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처럼 동수가 변경되는 설계변경은 새로운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문 9 : 노선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는 어느지역으로 적용하는지요?

답 : 2개지구가 결할때는 과반이상이 걸친 지역이나 때 모 양의 상업지구는 전체상업지역으로 적용함.

문10: 15M 높이의 건축물에서 저층부(8 M이하)에서는 얼마를 띄어야 하나?

답 :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대지경계선으로 띄어야 합니다.

문11: 6 M도로를 사이에 두고 기존 교회건물이 있는데 허가가 되는지요?

답 : 규정상 허가가 안될 사유가 없음.

문12: 병원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허가사항인지요.

답 : 예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 建築法施行令에 관한 事項 －

문 1 : 상업지역내 12m이하의 건축물이 인접경계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 : 시행령 111조 및 112조의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문 2 : 피난계단 거리는 얼마입니까?

답 : 시행령 104조에 의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30m이하이어야 합니다.

문 3 : 여관의 중앙부도폭은 얼마로 하면 됩니까?

답 : 200m²가 넘는 층에 있어서 160cm 이상입니다.

문 4 : 남, 북중에 일조권 적용 배제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답 : 남쪽은 일조권 제한이 없습니다.

문 5 : 주유소는 인접경계로부터 얼마나 띄워 건축하여야 하나?

답 : 외벽은 4.0M
처마끝은 3.0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문 6 : 9,000m²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주위 3 m 확보 후 화단을 만들수 있습니까?

답 : 3 m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하므로 화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문 7 : 주거지역내에 220m²이상의 택시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 주거지역내 150m²이상의 차고는 불가능합니다.

문 8 : 대지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건물 높이 산정시 어느곳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답 : 대지의 고저차가 있을경우는 가장 평균의 지반선을 산정함.

문 9 : 교회건물의 증축으로 1,000m² 이상될때 6 m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지요?

답 : 예 시행령 139조에 의해 6 m도로에 6 m이상 접해야 됩니다.

문10: 상업지역인데 건축대지면적이 40평인데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60평인데 기하 분할된 대지로 7할인 42평이상이어야하므로 이에 미달되어 건축을 할수가 없습니다.

문11: 인근북측에 10평 대지가 있는데 건축물이 없습니다. 건축을 할 때 이 대지경계선에서도 일조권에 필요한 거리를 띄어야 하나?

답 : 띄어야 합니다.

문12: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식당이나 의원은 면적한도는 없는지요?

답 : 면적제한 없습니다.

문13: 피난계단의 단폭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답 : 피난계단의 폭은 90cm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14: 15m도로에 2 면에 접한 대지상의 판매시설 (1,500m²)을 건축시 2면도로로부터 각각 4 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지요?

답 : 주 출입도로에서만 4.0m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단, 기타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문15: 8 m길이의 막다른 골목인데 도로폭은 얼마를 확보해야 됩니까?

답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미만인 경우는 도로폭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16: 경사진 대지에 4 면중 일면이 노출되어 차고를 설치할 경우 지하실로 볼수 있는지요?

답 : 4 면중 일부분이라도 그 총고높이에 3분의 1 이상이 지상으로 노출되면 지하층이 아닙니다.

문17: 주거전용지구에서 대지경계선에 띄우는 거리는 얼마인가요?

답 : 전북방향에 대하여는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과 관련이 있고 대지경계선에서는 1.5m추녀끝에서는 1 m이상임.

－ 建築條例에 관한 事項 －

문 1 : 2 중미관지구 주거지역내 4 층건물 200평 200평 정도를 지으려하는데 건물모양은 아취형으로 가능한지요?

답 : 가능하나 미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 2 : 지상보도에 연면적 1,000m²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입니까?

답 : 서울시의 경우 주차장 연면적 정비지구임으로 150m²이상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 3 :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하 기계실이 있을 경우 주차장면적 계산에서 제외되는지요?

답 : 옥내 주차장 면적 이외에는 주차장 면적 계산에서 제외시킬수 없으므로 기계실은 주차장 면적계산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

문 4 : 강북지역 주거지역에서 용적률·건폐율은 얼마입니까?

답 : 건폐율 50%, 용적률 250%를 적용합니다.

문 5 : 울지로 2 가 대지 80평에 상업용 건물을 지으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 대지의 도시계획권을 구청에서 확인하여 상업지역이면 건축사에 의뢰 지을수 있으며 그 지역은 미관지구내 일 것으로 사전 본 청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 6 :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면적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 : 각 용도별로 산정하여 합계면적으로 합니다.

문 7 : 주차장의 옥내에 설치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입니까?

답 : 옥내주차장은 소요면적의 50%만 가능합니다.

문 8 : 주차장 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어야 하는지요?

답 :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문 9 : 주차장 대수 산정시 예식장인 경우에는 얼마로 해야 하나?

답 :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방안으로 다중집중인 예식장은 건물 연면적 20평당 1 대의 비율로 산정해야 됩니다.

문 10 :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코자 할 때 소요주차대수 산정을 어떻게 하나?

답 : 용도변경코자 하는 부분이 종전용도 보다 주차수요가 더러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문 11 : 기존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타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 : 주차장법상 주차장 용도부분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 12 : 4 대문내에 전폐율은 얼마입니까?

답 : 간선도로변은 40% 간선도로변 이외는 45%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문 13 : 2 중미관지구내 점포가 9 개정도인데 변소의 남녀구별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 : 법령등 규정된 바는 없으나 건축물의 이용상 편리하고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하여야 하는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문 14 : 미관지구내 4 층정도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1 개층 면적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요?

답 :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200m² (60평) 이상이어야 함.

문 15 :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자투리땅을 건축하고자 할 때 대지 최소한도는?

답 : 지역지구에 합당한 면적에 4 분지 1 의 범위내에서 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문 16 : 주차장의 통로를 5.5m 이상 확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규정은 어떠한지요?

답 : 서울시 주차장조례에 1,000m² 이상의 주차장 진출입 통로 5.5m 확보하고 그 이하는 3.5m 확보하면 됩니다.

문 17 : 풍치지구내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전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은 어떤지요?

답 : 풍치지구내에서는 전폐율 20% 용적율 60% 높이는 2 층 또는 8 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 18 : 기존 2 층 건물을 5 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데 주차장은 증축하는 부분만 설정하는지요?

답 :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 건물을 포함하여 150m 당 1 대의 비율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문 19 : 주거지역 4 중미관지구내 지목이 담이고 80평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답 : 토지형질변경을 건축허가와 동시 시행하여 건축가능 합니다.

문 1 : 옥상의 해리포트를 설치할 경우 H자의 골자폭이 1.5cm 인지 또는 15cm 인지요?

답 : 착륙대의 중앙부분에는 4m를 지름으로 하는 "㉠" 표시를 배색으로, 착륙대의 한계선은 폭1.5m의 두께의 배색선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문 2 : 건물의 유지관리보고서 도면작성은 어떠한 것을 하는지요?

답 : 건물의 변경전 후 평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문 3 : 공동주택의 동별간격산정시 에레베타 130X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답 : 계산하여야 합니다.

문 4 : 300평의 건물을 지으려하는데 식수면적은?

답 : 10% 이상 30평은 지어야 합니다.

문 5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습니까?

답 : 외국인 토지법이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6 : 연립주택에 대하여 3 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한지요, 전폐율은?

답 : 불가합니다.

50세대 이상인 경우 30%, 50세대 미만인 경우 40%.

문 7 : 공중목욕탕과 학교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답 : 학교정문에서 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 8 : 등촌동 아파트지구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 하는데 전폐율, 용적율은 얼마인지요?

답 : 아파트 지구내 6 층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 전폐율은 18%, 용적율은 180%입니다. 다만 5 층이하의 아파트의 경우는 전폐율 20%이며 연립주택을 건축할시는 전폐율 30%, 용적율 10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문 9 : 건축이 불가한 그린벨트(지목:임야)에 인접한 대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도 대지경계선까지의 이력거리를 띄어야 하는지요?

답 :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0.325배를 띄우는 취지는 주변의 주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건축이 불가한 공원, 주차장 또는 그린 벨트에 인접할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는게 합리적입니다.

문 10 : 착공전 명예변경이 가능합니까?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요?

답 : 가능합니다. 민원편람을 참고하십시오.

문 11 : 아파트지구와 인접하여 기존학교가 있을때, 아파트 사업승인전에 학교측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나?

답 : 학교와 인접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일조권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서울시에서는 학교, 인근 아파트와 입지상의 배는 교육위원회 관계자를 참여토록하고 있습니다.

문 12 : 상업지구 방화지구내에서 내부창과 반자돌림대를 목조가 가능한가요.

답 : 반자돌림대와 창호는 불연재로 하는 규정이 없음.

— 其他規程에 關한 事項 —

문13 : 지방의 주차장 정비지구의 조배가 없는 도시에서는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는지요?

답 : 조배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차장법 및 동 시행령에 규정대로만 적용하면 됩니다.

문14 : 여관으로 3층 149평일때 건축허가시 소방설비를 하여야 되는지요?

답 : 여관용도이므로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15 : 연립주택의 급수시설을 하여야 하는지요? (상수도 미급수지역임)

답 : 급수시설은 꼭 되어야하며 상수도 설치가 안될시에는 자가수도로 용량 및 수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문16 : 주택내 담장높이를 넘지않는 20m²의 차고를 지으려 하는데 옆집과의 띄워야 할 거리는?

답 : 50cm이상입니다.

문17 : 아파트단지내 2종미관지구인데 쇼랑센터가 허가가 되는지요?

답 : 아파트 지구내인 경우 아파트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문18 : 지하실은 주택채권을 사지않는 것으로서 작업장 용도도 사지않는지요?

답 : 지하실내에 거실은 주택채권을 사야하므로 작업장도 거실에 포함됩니다.

문19 : 연립주택의 세대당 대지면적의 한계평수가 있는지요?

답 : 연립주택의 대지면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문20 : 허가를 득한후 허가증사본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답 : 전기, 수도, 정화조 공사나 벽돌, 자재 판매확인등의 경우 허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문21 : 전과 장애지역내 건축물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답 : 전과장애지역내에서 35m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전과관리국에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합니다.

문22 : 건설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할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답 :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연면적의 특수건물 150평 이상 일반건물 200평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문23 : 연립주택의 대지경계선에서의 소정거리는?

답 : 건물높이의 0.625배 입니다.

문24 : 지적상 도로가 아닌 현제도로를 적용 건축허가시 시행령 138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까?

답 : 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없는 도로라하더라도 시장군수가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라면 동 조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문25 : 연약지반으로 지하실 구축시 인근건물에 피해가 극심할 경우 지하실 설치규정의 예외는 없습니까?

답 : 없습니다.

문26 :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답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의무시설이므로 그 건물의 사용자, 방문객, 임차자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과 관계없는 외래인의 경우는 사용료로 매 30분당 230원을 내고 있습니다.

문27 : 주택채권매입 대상에 지하실 면적도 포함되는지요. (이하 5.0평 정도)

답 : 네. 지하실면적도 포함하여 구입하셔야 합니다.<※>

서울支部電話番号変更

(81. 6. 6. 변경)

종전	변경
72-7653	722-7653
72-7685	722-7685
73-6258	723-6258
73-6392	723-6392

73-8059 723-8059

74-0334 724-0334

74-0748 734-0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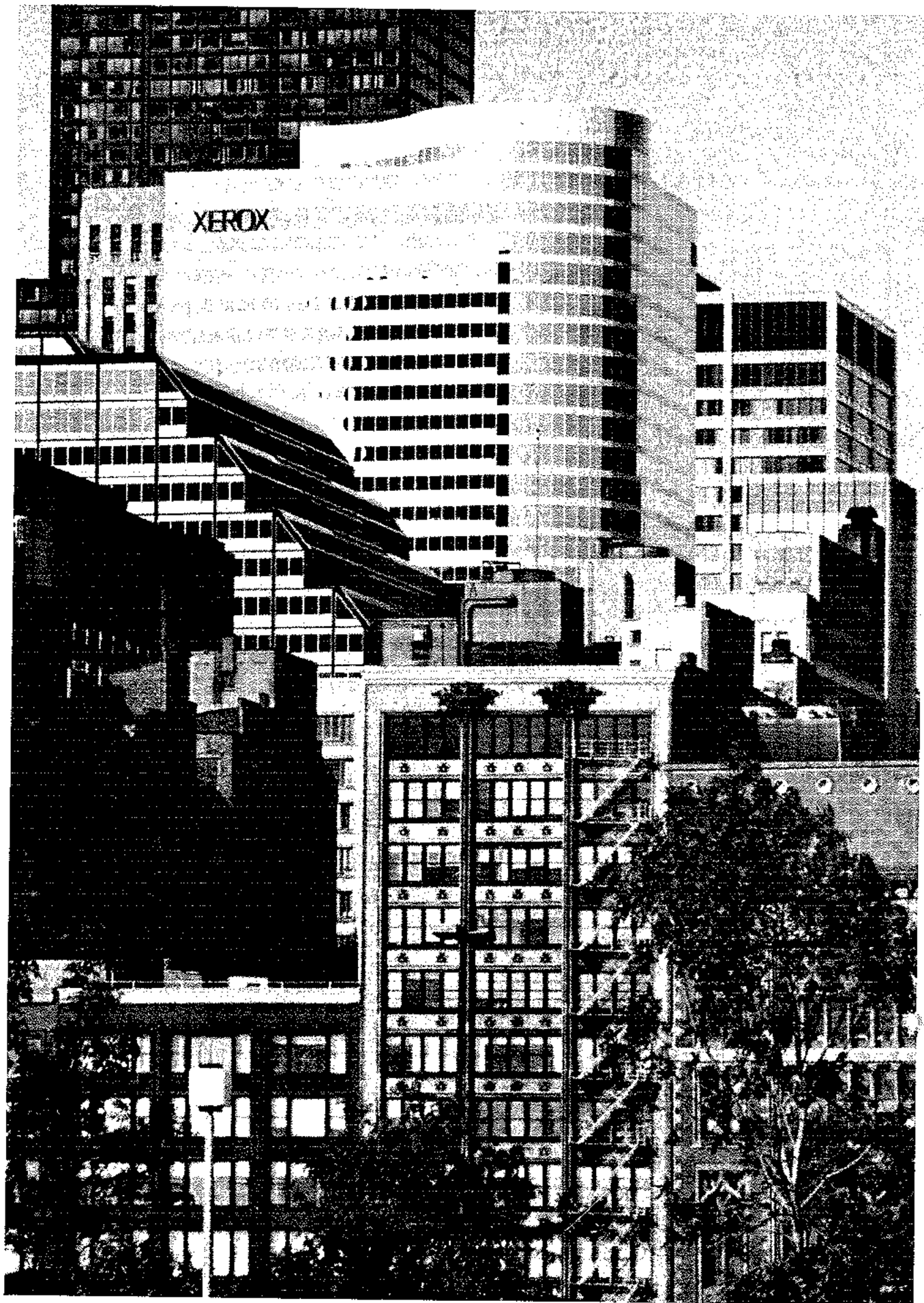
74-8524 724-8524

建築行政相談室電話番号変更

72-7653 722-7653

72-7685 722-7685

海外作品



XEROX CENTRE — Chicago, Illinois

Helmut Jahn (C. F. Murphy Associates)

所在地: Chicago, Illino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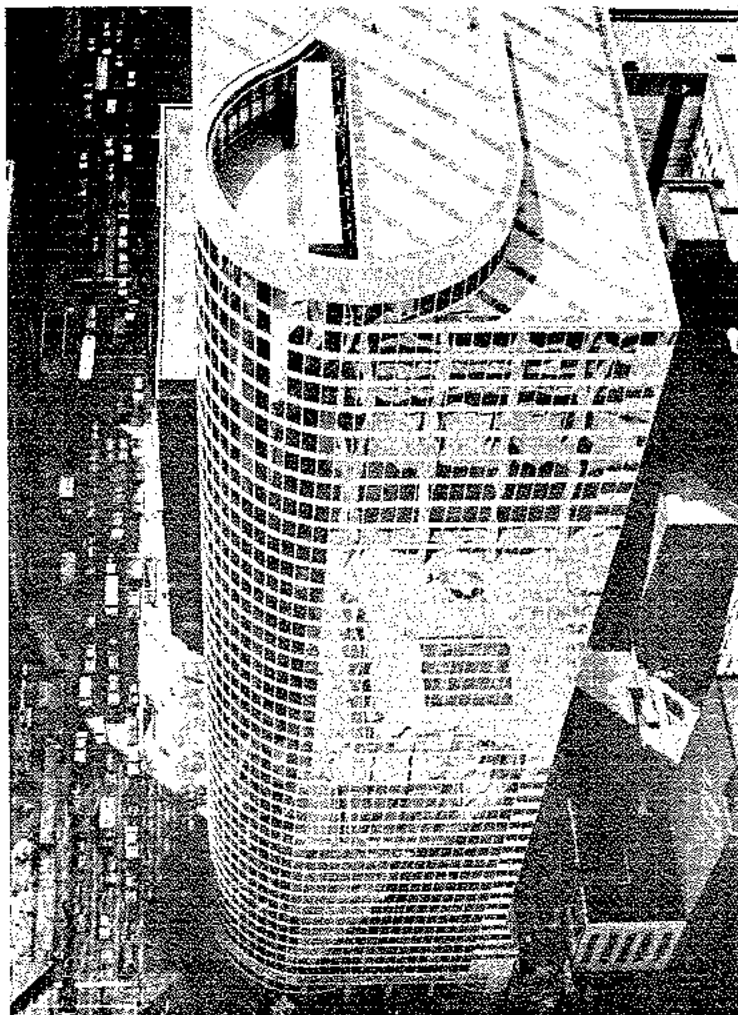
設計: Helmut Jahn (C. F. Murphy Associates)

延面積: 880,000平方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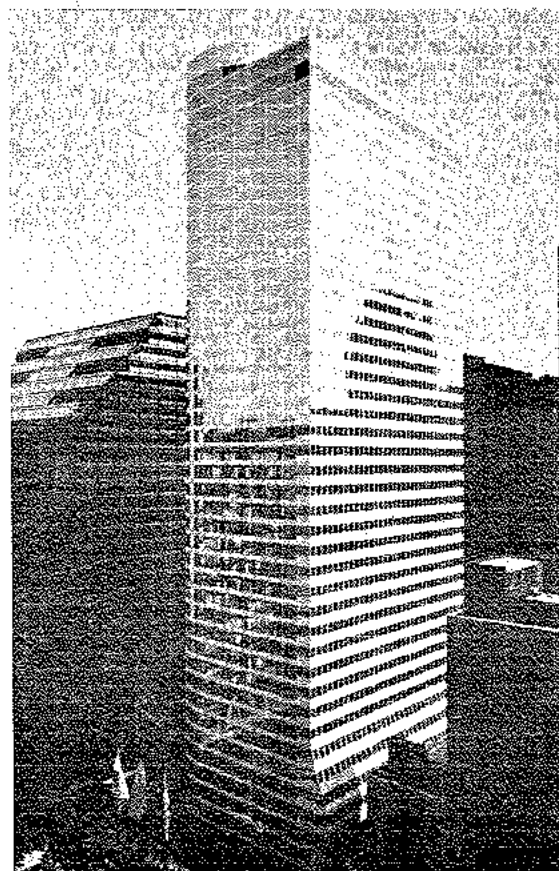
基準層面積: 21,600平方呎

構造: 鉄筋콘크리트 20×20F 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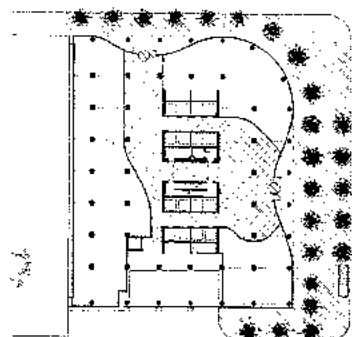
工期: 1977年 10月~1980年 5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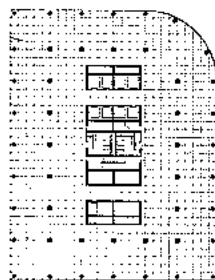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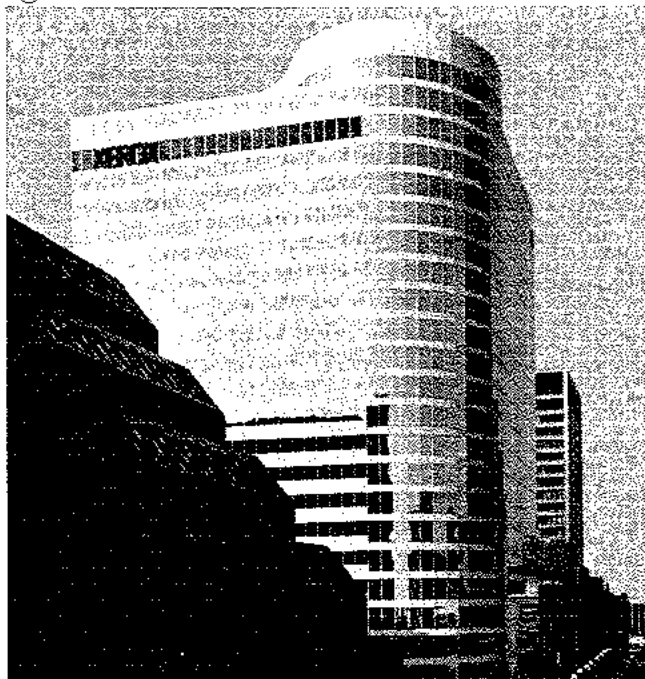
③



⑤



⑥



④

P. 82

① 東쪽에서 바라 본 경치

P.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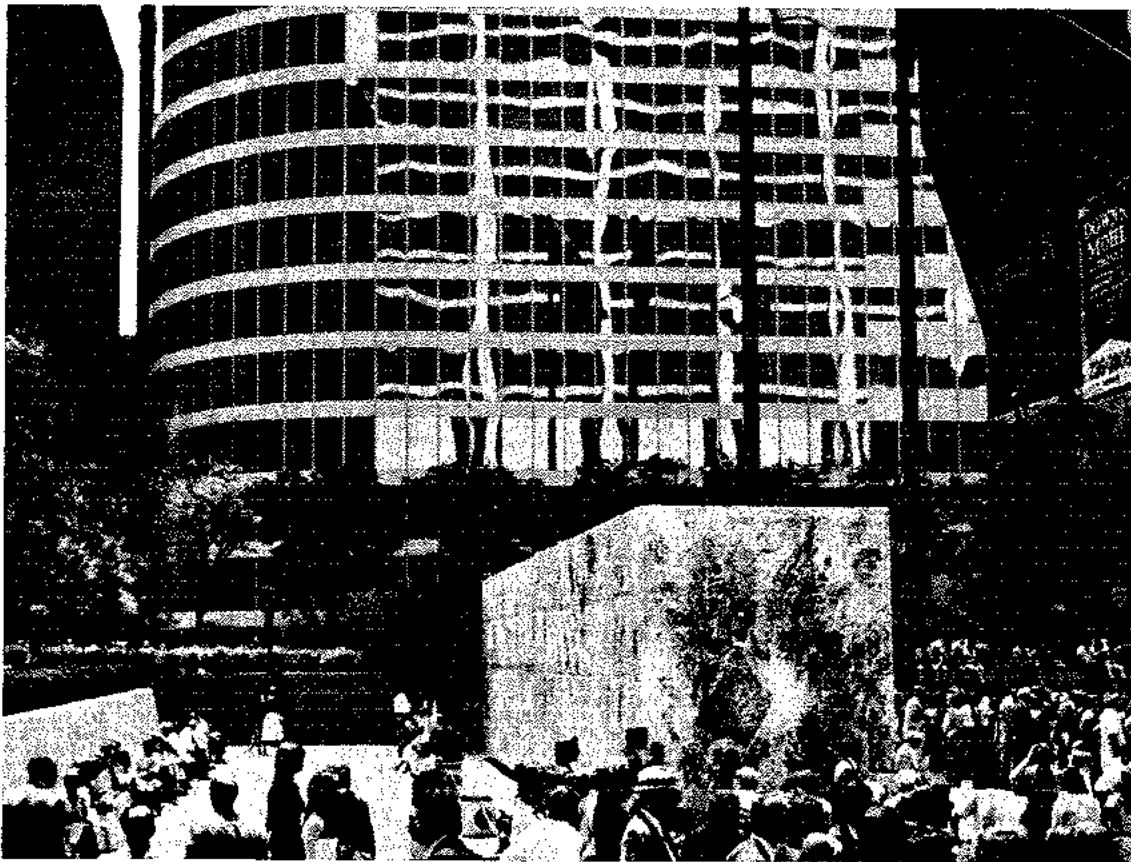
② 空中에서 내려다 본 경치

③ 北西모서리

④ 東側

⑤ 1層 平面圖

低層平面圖



⑦

⑦ Dearborn Street Plaza에서 바라본 경치

⑧ 配置図

1. Dearborn St. 2. Monroe 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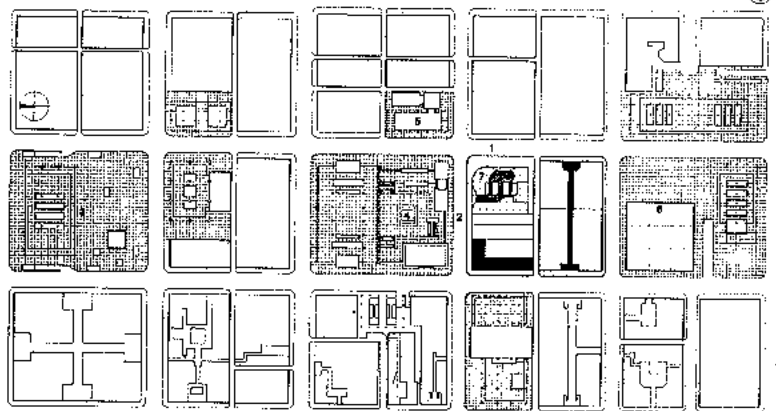
3. Chicago Civic Center

4. Dearborn St. plaza 5. Inland St. Building

6. Federal Center. 7. Xerox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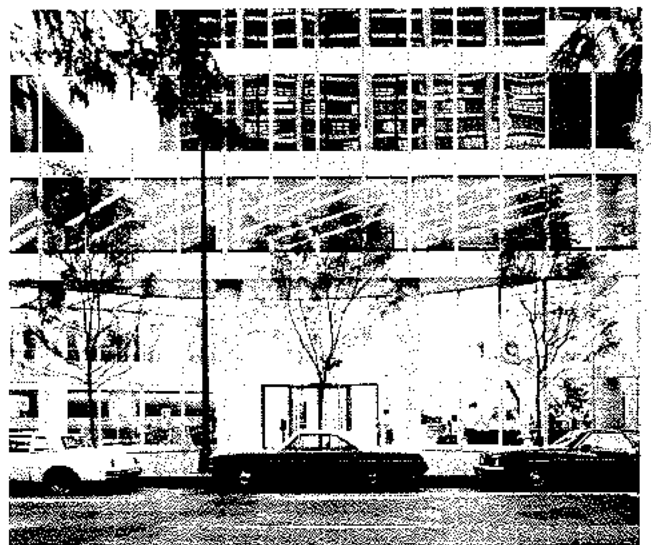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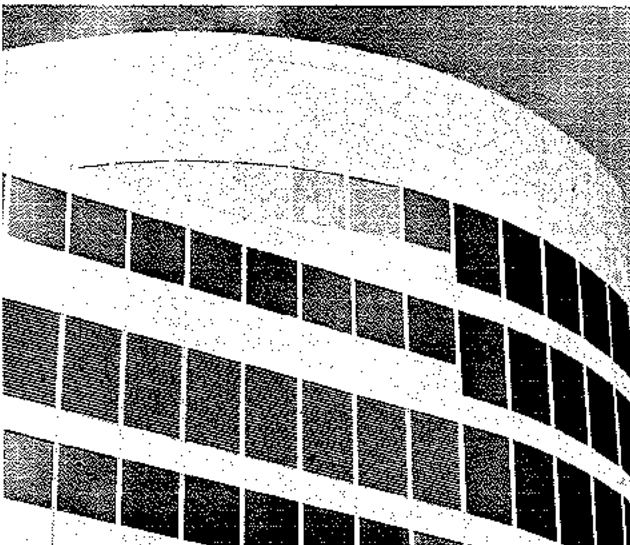
⑨ 알루미늄판과 유리에 의한 外壁의 構成

⑩ 北側入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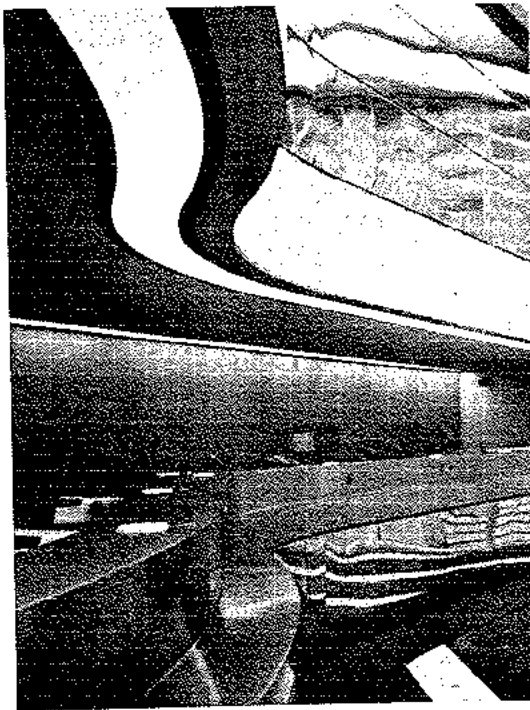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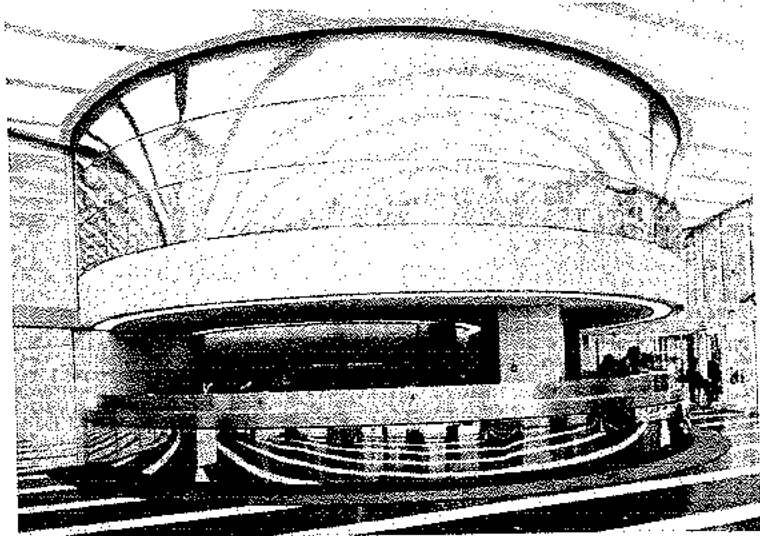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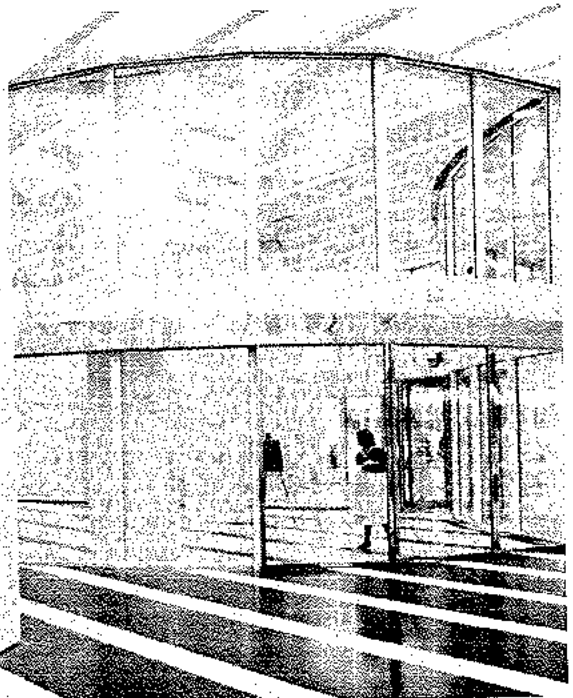
⑨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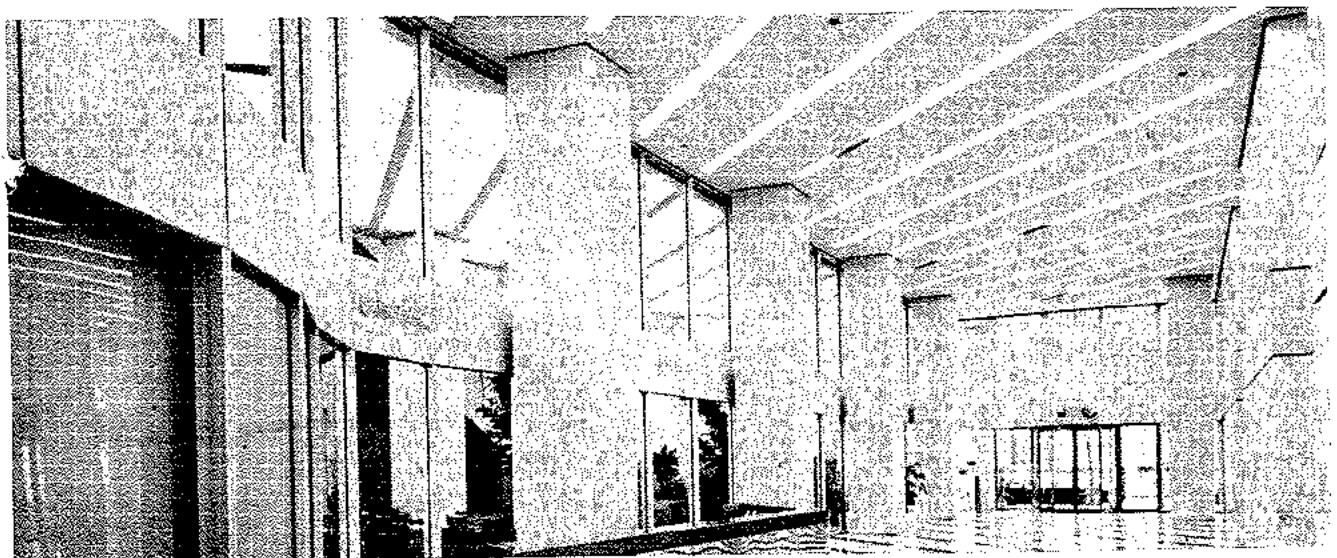


⑪



⑫

- ⑪ 1層 事務室에서 東側入口方向을 바라봄
- ⑫ 1層 事務室의 카운터
- ⑬ 로비에서 바라본 北側入口
右側에 에레베이터가 있다.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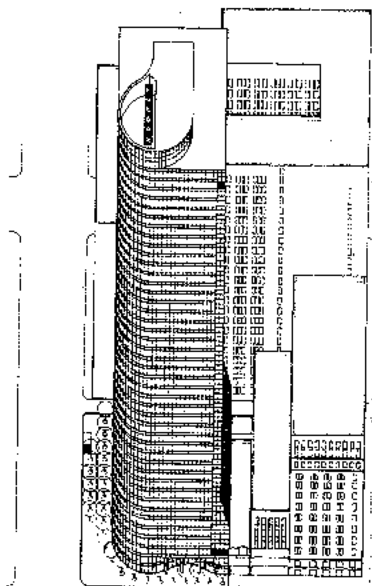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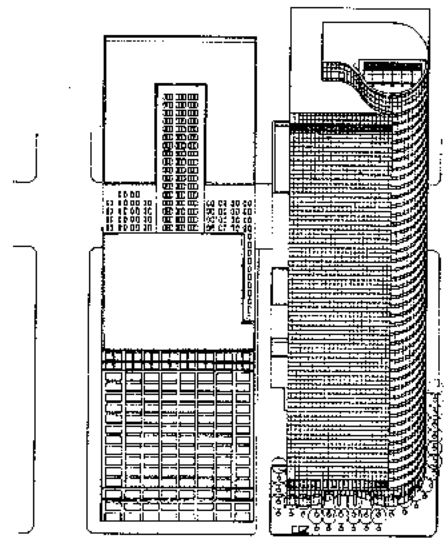
웬지 모르게 크리스탈한 헬무트·온, 그리고 나

지금 한창인 消費文明을 맞아, 어떤것도 適合性을 갖춘 日本風の 最近 建築을 웬지 모르게 크리스탈한 것이라고 불리울 것 같으면서도, 헬무트·온은 作品에서 받는 印象이 웬지 모르게 크리스탈하다는 느낌이 든다. 처음부터 主義主張을 말할 必要없이, 可能한 것과 不可能한 것을 잘 區別하여, 그때 그때마다 自己의 感覺을 貴重하게 살려, 場所에 어울리고 또 한 깨닫는 建築을 하고 있다고 生覺된다.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말은, 直進하는 빛이 몇번이고 컷트(斷切)함에 따라 屈折하는 모양을 比喻한 것이 틀림은 없으나, 밖에서는 그 모양이 엇보여서, 底辺이 얇은 것을, 반은 擲擲한 것으로, 取할수 없는 것도 있다. 헬무트·온의 極히 最近의 Illinois州 Center Building이나 Chicago의 Business Counter의 増築計劃 또는 완·사우즈·왓가 計劃이나 Northwestern Terminal 計劃은 모두 巨大한 유리壁 取扱을 課題로 한 것으로서, 글자 그대로 크리스탈 그것뿐으로서, 어데 할것 없이 시자·베리風の 窺이 있고 하여, 얼마간 不安하여 아쉬운 感이 든다.

내가 헬무트·온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1978년도의 P/A 賞의 紹介文에서 그의 제록스 센터 計劃이 들어 있는 것을 본 것이 처음이었다. 角地에 세울 建物에 어울리도록 모서리를 緩灣하게 灣曲시켜서 Elevation을 連續한 面으로 해서 取하여 조금씩 窓의 크기를 加減하여 表情은 微妙하게 바꾸어, 頂上의 家屋(Penthouse)에서 “아르”面의 反復을 하여, 모서리의 “아르”를 強調하는 設計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當時 내가 直接 取扱하여, 現場이 進行되고 있던 八重洲 Book Center의 概念에 맞춘것으로서, 크게 興味를 자아낸 것이다. 그후, 그가 아직 40才가 될까 말까한 젊은 나이에 이미 Chicago의 C.F. Murphy의 提携者 임을 알고 놀람과 더불어 立場이 다르지만 같은 大設計組織에서 일하는 者로서의 作品을 通한 共通點을 發見하여 親近感을 갖게 된 것이다. C.F. Murphy라고 하면, SOM은 別個로 치더라도, Chicago를 代表하는 傳統을 가진 큰 事務所로서 Civic Center나 Federal Center 등의 미스의 後繼者를 갖고 認定받는 高層建物을 많이 取扱하여 왔기 때문에 헬무트·온의 가벼운 몸의 숨씨는 適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作品을 자세히 볼것 같으면 決코 先天의으로 觀念이나 形態가 있는 것이 아니고, 狀況에 따라 形이 이루어지고, 時에 따라서는 事務的이면서, 戰略的으로 問題點을 解決코자 努力하며 그 위에 Universal space를 頑固하게 信奉하고 있는태가 엇보인다. 그러한 特徵은 大設計組織의 構成員에도 程度의 差가 있으나 共通하는 것으로서 내 自身을 들이켜 生覺해 봐도 當然히 適格한 것 같은 느낌이였다.

生覺해 보면, 지금은 近代建築의 黎明期의 理想家들이 꿈꾸던 壯大한 理想郷(Utopia)은, 結局 實現되지 못하고 말아서, 建築이 人間社會에 미치는 影響 또는 建築의 側에서 解決할수 있는 問題라고 하는 것은 極히 限定되어 있다는것이 明確해졌음니다

한편 近代建築의 失敗가 거의 하려다가 머뭇거리 죽어버렸다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産業資本의 利潤追求의 要請은 漸次



제록스·센터 : 헬무트 온

커져서 社會全体가 이에 迎合하도록 變形되어 建築의 社會的可能性은 狹小化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現實에서 다시 現代建築이란 도대체 무엇을 貯藏한 것인가 眞實로 묻고자 한 것이다. 이 問題는 종전 設計間에 지금 建築을 하는 者에게는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만드는 것에 依하여, 그 사이에 答을 提示하리라고 본다. 建築의 可能性을 만드는 사람의 訊息(Message)를 傳達하는 미디어(Media)까지 物体의 본바를 狹小化하여 專的으로 私의世界的 構築을 專念하는 사람들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한마디로 힘껏 묶는것은 若干 亂暴하드레도 古典主義(Classicism)이나 折衷주의(Eclecticism)를 標榜하는 一派도 여기에 該當한다 하겠다. 反面, 建築을 事業으로 生覺하여, 專問的으로 産業資本에 奉仕하는 것을 第一로 하여 애

매한 것으로서 無難한 建築을 하는데 專念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것은 事實이다. 어느쪽으로도, 建築의 社会的 復權에서는 뒤지고 있을 뿐이나, 狹少화된 建築의 可能性을 多少 라도 拡大할 試圖가 全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世界 各地에서 대두하고 있는 住民參與에 依한 設計活動等은 아직 그 始作에 지나지 않으나, 將來는 一大 潮流를 이룰 것으로 予感된다. 住民參與는 따로두고라도, 個人 事務所에서는 前者가 많고 大設計事務所에서는 後者の 境遇가 많다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쪽이나 하면 大事務所에서 오직 私的 世界的 構築을 目標로 하는 것은 얼마되지않으리라고 본다. 헬름트·온은 開所後 担当한 經歷이 있는 Murphy事務所の 同業者로서, 이 範圍의 制約을 고찰하여 兩極端에 빠지는 일이 없이, 그 나름대로의 意慾인 作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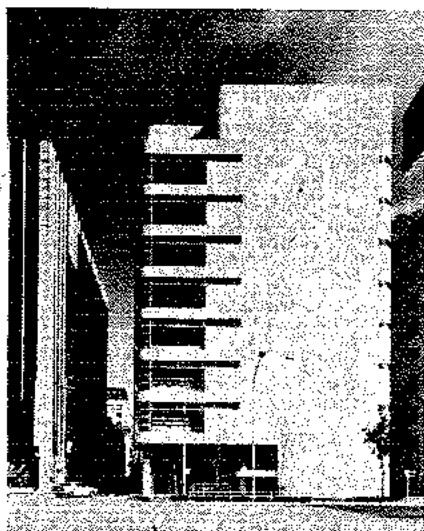
특히 그의 關心은, 建築의 都市環境에의 迎合과 미즈의 遺産이라고도 하는 모더니즘(Modernism)의 可能性을 끝까지 檢証하여 나가는것에 있어 보이나 어 느것도 헬름트·온이 設計의 舞台로 하고 있는 Chicago 라고하는 都市의 建築的 前後 關係를 찾아내는 것에는 生覺하지 않은것으로 본다.

제록스·센터는 前者의 例로서 Chicago의 그 都市環境 속에서 얼마간 考慮한 바를 하였다. 그 敷地가 面한 Dearborn St는 Chicago에서 第一가는 商街로서 런폴프에서 잭슨까지 기라성 같은 오피스·빌딩(Office Building)이 즐비해 서 있다. Murphy自身도 設計에 參與한 Civic Center부터 始作하여 SOM의 RC造의 프란스위크, 以前 SOM의 Chicago事務所가있었던 SOM의 Inland steel Building, 그리고 敷地正面의 First National Bank 다시 옆에는 SOM이 引受해온, 더욱이 SOM 設計의 아도리움이 있는 話題의 도레이바 엔드 그라마.테이베룩프먼트의 建物, 그리고 뒤에는 미즈 스스로 指抑한 Federal Center까지, 모두 미즈의 影響을 濃度있게 받은 검은色 傾向의 四角의 一般形式인 建築이 所謂 Chicago의 낡은 Building의 사이에 즐비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제록스·센터의 現存한 시르바의 灣曲한 회사드는 實로 新鮮하게 보인다. 특히 建物을 後退시켜, First National Bank의 広場에서 街路의 人道를 連結시켜 모서리를 灣曲해 놓은것으로서 道路水

準(Street level)의 사람의 움직임은 順調롭고 엔드란스 둘레의 曲面유리의 霧屈氣를 살린것에 맞추어 平和로운 어반·휘사드를 形成하고 있다. 그로 因하여 허전해있던 엔드란스 부터 에레비타 홀 둘레의 空間이 活性化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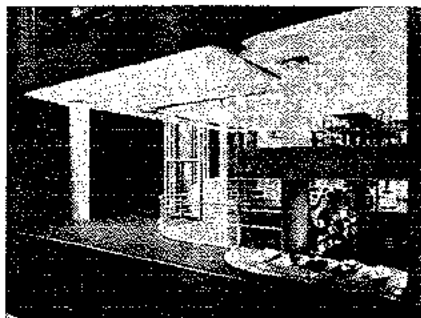
내가 取扱한 八重洲 Book Center도 東京駅の 右側に 位置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方向에 出入口를 考慮한 모서리의 設計가 되었으나 기이하게도 曲面유리의 使用等에 共通하는 곳 이 많이 엿보여 헬름트·온의 生覺을 뚱히 알것 같다. 日本에서는 一般的으로 高層建物の 境遇, 街路에서 広場을 지나 엔드란스·홀을 가로질러 에레비타 로비에 이르기까지의 空間은 길어서 비어있는 것이 많고 広대한 엔드란스·홀을너무 넓게 하는 것같이 冚큰대 어반 콘텍스트(Urban context)에 對한 基本的 配慮가 不足한 例가 많으나, 제록스·센터의 設計는 꼭 알맞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最大 許容延床面積을 研究코자 構造的으로 若干 無理하게 아르面을 만들고 方位에 따라 窓의 크기나 유리의 種類를 바꾸는 등의 研究를 하고 있으나 灣曲된 회사드의 德分에 事務所 空間의 使用에 念頭를 두어서 테이베룩바가 弱體로운 것도 短点이 되어 이웃의 省 에너지를 標榜하여 아도리움을 取한 SOM의 四角인 빌딩에 人氣가 크게 돌려 테난트의 모임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뒷 얘기가 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敷地環境이나, 사리반以後 Chicago特有의 높은 빌딩이 角을 이루고 있다고 한바 좋은 意味로서 保守性을 勘案하면, 제록스 센터에 關하여 헬름트·온의 採扱은 果敢한 것이라 하겠다. 勿論 建築을 멧세지(Message)를 보지 않은 作家가 본다면 實로 不滿스러운 것으로 나타나서 建築의 社会的 機能의 回復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手段의 利潤追求機械에 지나지 않는다고 生覺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現在의 産業資本을 利用하여 大設計事務所로서 하는것은 洋의 東西를 물울것 없이 이 程度가 限界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一般의 테난트 빌딩에서 테이베룩바가 이것만의 本質이 있고 設計를 容認하는 例는 적지 않으나 日本에서는 稀少하다고 본다.

헬름트·온의 또 한가지 關心은 모더니즘(Modernism)의 남은 可能性은 追求하는것에 있는것 같다고 前述하였으나, 具體的인 戰略은 라이트웨이브·엔그로자(以下L. E로 略稱함)으로의 指向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多樣한 機能을 한 장의 가벽고 엷은 外皮로 싸버리고자 한 것으로서, 그 代表는英國



正面회사드

Photos by Photography Dept. JA



正面入口

八重洲 Book Center (1978年)



어반·휘사드

Photo by Osamu Murai

의 포스타나 세도릿브라이스, 그리고 피아노+로저스라고 하는 곳이다. 헬무트·온은, 라·브로드에 세운 中學校에 經濟的인 理由로 이미 만든 波形部材를 使用한 薄鋒지붕의 작은 體育館을 만들고 있으나, 그 概念은 오로지 포스타가 만든 한 프스맷드의 컴퓨터舍社의 空氣膜構造의 事務室과 대충 닮았다 그러나 포스타는, 그 外皮의 設計를 内部의 機能의 投影이라고 보지 않고, 人工的인 表情을 強調하고 있음에 比하여, 헬무트·온은 構造와의 關係를 重視하여 外皮의 整合性이 있는 完全한 表現을 求하려고 한것으로 生覺된다.

칸사스시의 巨大한 展示館의 슈퍼트러스를 입힌 三角形의 鉄板과 그 사이를 막는 샌드위치板의 意圖의인 比較等은 미즈의 影響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Chicago의 職業訓練施設의 外皮는 관뿔等에, IIT風의 端正함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L.E는 建築을 Shelter로 보지 않는 思想을 基盤으로 한 Universal space의 承認이 있어 또한 設備機器等의 예카닉이나 엔그로자를 構成하는 産業에 對한 信賴를 前提하여 成立하는 것이지만, 建築이 안고 있는 複雜한 問題를 解決하는 데는 便利한 것이다.

勿論 前述한 바와 같이 社會的 問題라고 하는 것은 變함없이 解決할 수 없어서 建築프로파의 機能이나 經濟 또는 施工이라고 하는 現實의 範圍에 限定되지만 從來의 타이틀로서 記念碑的인 建築에 比하면, 훨씬 시원하게 問題에 適合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合理性과 더불어 L.E 特有의 幾何學的 形態나 平滑한 線 등 人工物로서 깨끗함이 複雜한 現實世界에 處할 때 現代藝術과 같은 魅惑的인 效果를 올리는 것도 沒지 않다. 以前에 내가 다룬 작은 研究所와 集會場의 計劃도 亦是 L.E의 例로서, 解決할 수 없는 問題가 그것에 相応한다고 理由外에 L.E 以外의 表情에 拘限된 것이다.

研究所는 荒地에 銀色메인트로 單一化한 관뿔로 構成된 것으로서, 必要에 따라 代替可能토록 意圖 되어 있으나, 低經費로서 융통성 있는 研究를 爲한 空間을 短期間에 確保코자 하는 要求와 함께 거친 環境과의 對照의 效果를 노린 것이다.

또한 集會場은, 構造體도 包含하여 工業製品을 驅使하여 多目的 利用이 可能한 増殖可能한 施設을 더욱 短期間에 만드는

것을 目的으로 한 것으로서, 헬무트·온의 一連의 L.E 것과 같은 概念이라고 하겠다. 나와 같은 境遇의 者와 달라서 헬무트·온은 恩惠받은 立場에서 일하는 것이지만, 合理性이 尊重되는 設計組織속에서 더욱 問題解決을 爲하여, 그 表現의 새로운 可能性을 求하여 L.E를 만들고 있는것은 아닌지. 그러나 내 經驗으로는 堂堂한 高層建設이 많은것 中, 이 種類의 建築이 日本 에서는 意外로 적다. 이것은, 大體로 施工中에 妙하게 作用하는 일이 있어, 建築에 對한 要求를 언제나 애매하게 保留하여, 그 버릇과 社會的 役割이라는 곳에서 新機軸을 내는 것을 두려워 하는 保守性에 起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生覺된다. 깨끗한 工場等이 적은 것은 이 때문이며, 또한 需給의 여백이 먼저인가는 別途로 하고, 着手에 있어서 L.E를 만들기 위한 建築의 開放 部分이 적다는것도 있고 있다. 確實히 美國이나 EC諸國에서는 L.E를 構成하는데 必要한 이미 製作한 建築의 開放部品이 기둥이나 바닥資材等의 構造體에서 各種 外裝의 品類까지 豊富하게 가지런히 마련하고 逆으로 建築家는 카다르크·아키베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必要할 程度이다. 헬무트·온에 限하지 않고 포스타等에 있어서도 이러한 風土에 關係되는곳이 크다 하겠다.

여기서 L.E派와 페리나 DMJM의 럽스벤 등의 銀行과 다르게 取扱하지 않음을 아니오나 銀色이 가장 建築의 光沢이나 透明化等의 物性を 重視함에 比하여 L.E는 問題解決을 爲한 戰略的 意圖이라고 하는 쪽을 크게 나누어, 그 結果로서의 表現을 生覺한다고하는 相違點이 있는 것 같다. 헬무트·온과 같이 L.E의 表現에 흔히 미즈의 整合性을 求하는것도 可能하며, 포스타와 같이 더 論理的으로 機能을 追求하는 것도 可能하다 하겠다.

이리하여 헬무트·온의 作品과 나의 不足한 作業을 省察해 보면, 巧拙의 相違는 別途로 하고 몇가지 點에서 共通되는 點이 적지 않았다는것은 意外였다. 그러나 그러한 個所이 팔로, 정말 그로서 좋은지 어떤지 個人的인 感覺인가, 設計組織의 問題인가, 이들이 아닌 現代建築의 병폐에 關係된 것이 아닌가, 스스로 냉정하게 反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제 生覺된다. 헬무트·온이 웬지 모르게 크리스탈이라고 하면 나 도 亦是 크리스탈에 틀리지 않기 때문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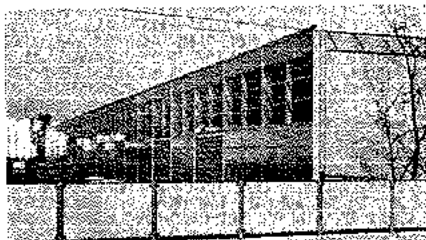


K 研究所 (1973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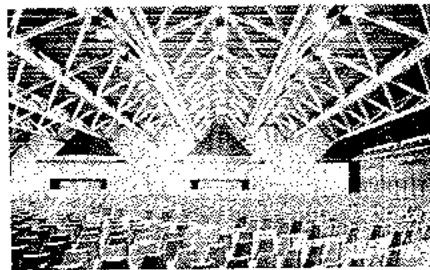
Photo by Shuji Yamada



大正製藥集會場 計劃圖 (1975年)



職業訓練센터 : C. F. Murphy



K. 로우·바벨 展示廳 (1976年) : C. F. Murphy

아시아의 새주역 세계로 뻗는 우리의 힘

소방법 改正에 대한 考察

李 承 九

(中央消防研究所 代表)

지난 3월20일 立法會議를 통과하여 4월 4일 法律第3413号로 公布 施行하게 된 消防法中 改正內容은 建築物의 完工에 대하여 完工檢査畢証으로 소방서에 대한 報告를 생략하며 高層建物 등 특수 장소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 하는 등 過度하게 규제 되었던 사항을 완화하는 한편 消防施設의 基準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여 現行法上 민체의 소지가 보여지는 조항을 완화함으로써 國民의 負擔을 덜어 주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이하 改正 消防法 全文 —

消防法中改正法律案

法律第3413號(81. 4. 4)

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 題目 ““(市長·郡守의 責任과 監督)”을 ““(市·郡의 책임 등)”으로 한다.

第5條第1項중 ““(火災의 予防)”을 ““(화재의 예방 또는 鎮壓 對策)”으로 하고 同條第2項第2號를 삭제하며, 同條 第6項중 ““(火災豫防上)”을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로 한다.

第6條를 삭제한다.

第9條第1項중 ““(用途變更의 許可·認可)”를 ““(용도변경의 허가 (建築法 第8條 및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을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로 ““(그 許可·認可 또는 확인에 있어서)”를 ““(그 허가 또는 확인에 있어서)”로 ““(허가·인가 또는 확인을 할수 없다)”를 ““(許可 또는 확인을 할수 없다)”로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에 대한 同意에 있어서는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完工檢査畢証을 交付함으로써 동의에 갈음한다. 이 경우 市長 또는 郡守는 完工檢査畢証을 確認하여야 한다.

第11條第1項중 ““(15미터)”를 ““(31미터)”로 ““(防火管理上 필요한 業務를)”을 ““(방화관리상 필요한 事項을)”로 한다.

第12條第1項中 ““(高層建築物)”을 ““(고층건축물(共同住宅을 제외한다.))”로 하고 ““(學校·共同住宅·工場·市場·百貨店·圖書館·地下街 또는)”을 삭제하며, 同條 同項에 但書を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스프링크라設備·물噴霧消火設備 또는 泡沫消火設備로서 自動式인 消火設備가 설치된 消防對象物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第1項 但書중 ““(10日 이내의)”를 ““(60日 이내의)”로 한다. 第16條第1項중 ““(基準(이하 ““(施設基準)”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를 ““(기준(이하 이 章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內務部令으로 定한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設置基準)”을 ““(施設基準)”으로 한다.

第18條第1項 本文중 ““(資格証所持者)”을 ““(資格取得者)”로 하고 同條同項但書を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危險販賣取扱所

또는 指定數量의, 10배 未滿의 危險物貯藏所와 煖房을 目的으로 設置한 貯藏所 (호벌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강습을 修了한 者를 危險物取扱者로 選任할 수 있다.”

第18條第2項중 ““(危險物取扱主任은)”을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는)”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危險物取扱主任을)”을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들)”로 ““(危險物取扱主任의)”를 ““(危險物取扱主任 또는 危險物取扱者の)”로 하며 同條第4項중 ““(資格証所持者)”를 ““(資格取得者)”로 하고 同條第5項중 ““(위험물취급주임을)”을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들)”로 한다.

第20條의 題目 및 第1項 내지 第3項중 ““(予防規定)”을 각각 ““(予防規程)”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第16條)”를 ““(第16條第1項)”으로 하며, 同條第1項에 但書を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특수장소에 設置된 製造所등의 予防規定은 第10條第2項 第1號의 消防計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第27條第1項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를 ““(內務部令이 定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第29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9條의 2 (消防施設基準 적용의 特例) 第29條第1項의 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大統領令 또는 內務部令의 變更으로 그 基準이 強化된 경우에는 기존 특수장소(建築物의 新築·増築·改築·移築·大修繕등의 工事중인 特殊場所를 포함한다.)의 消防施設(消火器具·警報設備 및 避難設備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第30條第1項 및 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중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① 第16條第1項 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業 또는 整備業(이하 ““(消防設備業)”이라 한다.

② 第16條第1項 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는 國家技術 資格法에 의한 消防設備技士 (消防設備技術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責任下에 行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1條중 ““(消防設備技士가 行할수 있는)”을 ““(소방설비 기사의 責任下에 하여야 할)”로 하며 第3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2條 (消防施設의 施工中告 등) ① 第16條第1項 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시설의 種類 施工場所 기타 필요한 事項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完了한 者는 內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完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檢査畢証을 交付하여야 한다.

第38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9項 및 第10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2項의 檢定の 基準이 될 消防用 機械, 器具 등의 形狀・構造・材質・成分・性能・檢定合格表示 기타 필요한 事項은 內務部令으로 定한다.

⑨ 內무부장관은 關係者 등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消防用 機械・器具 등에 대한 性能試驗을 할 수 있다.

⑩ 第9項의 性能시험에 關하여는 제2項第5項 및 第40條第2項・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9條 第3號 中 「檢定」을 「검정 또는 性能試驗」으로 한다.

第10章 「罰則」을 「第12章 罰則」으로 하고 第70條의 8號에 「第11章 補則」을 挿入하며 「第9章의 2補則」을 「第10章 韓國 消防安全協會」로 한다.

第70條의 4 第1號 中 「申告의 義務가 있는 消防關係業者」를 「신고의무가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로 하고, 同條 第1項 第2號 및 同條 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防火官理者・危險物取扱主任・危險物施設安全員 또는 消防設備技士로 選任 또는 雇傭된 날로부터 會員이 된다.

第70條의 8을 第70條의 9로 하고, 第70條의 8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0條의 8 (任職員의 公務員身分 擬制) 第70條의 3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官廳이 委託한 업무에 종사하는 協會의 任員 및 직원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條70條의 9 (종전의 第70條의 8) 第1項 中 「內務部長官」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으로, 「防火管理者, 消防設備技士・危險物取扱主任 및 危險物施設安全員」을 「防火官理者・ 위험물취급주임・ 위험물취급자・危險物施設安全員 및 消防設備技士」로 하고, 同條 「第2項」을 「第3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對象者가 所定の 教育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選任 또는 雇傭한 者에 대하여 防火管理者・危險物取扱主任・危險物取扱者・危險物施設安全員의 解任을 命하거나 消防設備技士의 解雇를 勸告할 수 있다.

第70條의10 및 第70條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0條의10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內務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이 定하는 바에 따라 道知事・市長(서울特別市長과 釜山市長을 제외한다)・郡守 또는 消防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70條의 11 (施行令) 이 法・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2條 내지 第78條의 題目 “(同前)”을 “(罰則)”으로 한다.
條74第 中 「10萬원 이하의 罰金에」를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로 한다.

第75條 中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5萬원 이하의 罰金에」를 「50萬원 이하의 罰金에」로 한다.

第76條 中 「3月 이하의 懲役 또는 3萬원 이하의 罰金에」를 「30萬원 이하의 罰金에」로 하고 同條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火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 또는 第1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取扱者를 選任하지 아니하고 事業을 행한 者.

第77條 中 「2萬원 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10萬원 이하의 罰金에」로 하고 同條에 第11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1. 第70條의 9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任 命令에 違反한 者.

第78條 中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怠慢히 한 者는 1萬원 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過怠料에」를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怠慢히 하거나 第3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는 5萬원 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로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改正内容対比表

— 변경내용부분

□ 삭제 및 신설부분

題 目	舊 法	新 法	內 容
消防行政責任 消防對象物의 檢査	第3條(市長・郡守의 責任과 監督)①~③(省略) 第5條(消防對象物의 檢査) ①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火災의 予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地域에 出入하여 消防氏象物의 位置, 構造・設備 또는 管理의 狀況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할 수 있다. 다만 個人의 住居에 있어서	第3條(市・郡의 責任등)①③(現行과 같음) 第5條(消防對象物의 檢査) ①..... ...火災의 予防 또는 鎮壓 対策.....	실제 消防業務에 대한 不合理點시정 ① 소방대상물의 조사를 하는 목적이 화재의 예방에서 진압 대책까지로 강화될.

[illegible]

題 目	舊 法	新 法	內 容
	이를 저장 하거나 危險物의 製造所· 저장소 또는 取扱所 (이하 “製造所等”이라 한다) 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承認을 받아 指定數量 以上の 危險物을 10日 이내의 期間내에 臨時로 저장 또는 取扱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省略)	 60일 이내의 ② ③ (現行과 같음)	① 위험물의 임시저장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함
製造所등의 시설기준	第16條(製造所등의 施設基準) ① 製造所등의 位置·構造 및 設備(消防施設을 포함 한다)의 基準(이하“施設基準”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의 暖房用 危險物貯藏所의 위치·구조 및 設備의 基準은 市·郡條例로 정한다. ③ 製造所등의 위치·구조 및 設備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第16條(제조소등의 시설기준) ①..... 기준(이하 이 章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② (現行과 같음) ③.....	① 제조소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내무부령으로 변경
危險物取扱主任:	第18條(危險物取扱主任) ① 製造所등의 設置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當該危險物取扱에 관한 資格證所 持者를 위험물 취급주임으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危險物 販賣所와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의 난방용 위험물 저장소 및 指定數量의 10倍未満의 위험물을 暖房用으로 使用하기 위한 危險物 貯藏所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場所에 設置된 위험물 저장소는 제외한다)에 設置된 위험물 저장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危險物取扱主任은 內務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危險物取扱에 관한 保安·監督을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危險物取扱主任을 選任한 製造所 등에 있어서는 危險物取扱主任의 參與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施設基準..... 第18條(위험물취급주임) ①資格取得者.....다 만, 危險物 판매취급소 또는 指定數量의 10배미만의 危險物貯藏所와 暖房을 目的으로 설치한 저장소 또는 取扱所(호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內務部令이 정하는 講習을 修了한 者를 危險物 取扱者로 選任할 수 있다. ②.....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는 ③.....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를 危險物取扱主任 또는 危險物取扱者の	① 위험물 취급 주임의 자격이 “자격증 소지자”에서 소정의 강습을 수료한 “자격 취득자”로 완화됨.

題 目	舊 法	新 法	內 容
	④ 第1項의 資格證所持者가 危險物取扱에 관하여 保安監督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種類는 그 資格 区分에 따라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危險物取扱主任을 選任 또는 解任할 때에는 7日이 내에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資格取得자가..... ⑤.....위험물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를.....	
予防規定	第20條(予防規定)① 大統領이 定하는 製造所등의 關係者는 그 製造所등의 火災를 予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予防規定을 정하고 許可序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新設) ② 許可序는 第1項의 予防規定이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認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許可序는 火災予防上 필요한 때에는 予防規定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20條(予防規程) ①..... 予防規程..... 다만,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場所에 設置된 製造所등의 予防規程은 第10條 第2項 第1호의 消防計劃으로 이를 삼을 수 있다..... ②.....予防規程이 第16條 第1項..... ③.....予防規程의.....	① 예방규정을 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던 사항을 消防計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手数料	第27條(手数料) 製造所 등의 設置許可 또는 그 位置・構造・設備의 變更許可와 完了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の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数料를 納付 하여야 한다.	第27條(手数料)..... 內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規 허가시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무부령으로 통일함.
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第29條(特殊場所등의 消防施設) ① 特殊場所의 關係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火設備・警報設備・避難設備・消火用水設備 기타 消火活動上 필요한 設備 (이하 “消防施設”이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設置하고 維持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29條(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①..... 內務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② (現行과 같음)	① 소방시설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내무부령으로 변경

題 目	舊 法	新 法	內 容
소방시설기준적용의 특례	(新設)	第29條의 2 (消防施設基準 적용의 特例) ① 第29條 第1項의 消防施設의 基準에 관한 大統領令 또는 內務部令의 變更으로 그 기준이 強化된 경우에는 기존 特殊場所(建築物의 新築・増築・改築・移轉・大修繕 등의 工事중인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의 消防施設(消防器具・警報設備 및 避難設備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消防法改正時 適及 적용으로 인한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 소급의 원칙을 규정함
消防施設의 施工	第30條(消防施設의 施工) ①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消防設備技術士資格證所持者(技術士資格證所持者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가 아니면 第16條 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방시설의 工事 또는 整備를 할 수 없다. ②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業(이하 “消防設備業”이라 한다)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設備業의 登錄施設基準・登錄取消 기타 監督에 관한 事項과 手数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內務部令으로 定한다	第30條(소방시설의 시공) ① 第16條 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業 또는 整備業(이하 “消防設備業”이라 한다)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6條 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정비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消防設備技術士(消防設備技術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責任下에 行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項.....	소방시설의 시공은 소방설비기사가 직접하던 것을 소방설비기사 책임하에 할 수 있게규정을 변경함.
消防設備技術士	第31條(消防設備技術士) 消防設備技術士가 行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工事 또는 整備의 種類는 그 資格 区分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1條(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의 責任下에 하여야 할	문구 수정
施工申告	第32條(施工申告) 消防設備業者는 第16條 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施工하기 10日前까지 內務部令의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消防施設의 種類・施工	第32條(消防施設의 施工申告 등) ① 第16條 第1項 및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방시설의 工事 또는, 整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內務부령이 定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의 工事를 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준공시에는 신축의 경우 소방서장 또는 본부장의 동의를 얻은것을 준공전사로 대체하며 기존 건물의 경우 구법에는 준공 사항이 누락되었었음. 이번 법 개정에는 준공검사및 준공집사 필 중 교부 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

題 目	舊 法	新 法	內 容
	場所 기타 필요한 事項을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新設) (新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을 完了한 者는 內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의 完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시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檢査結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에 적합한 때에는 內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完工檢査報告를 交付하여야 한다.	음.
消防用 기계기구등의 성능	第38條(消防用機械器具 등의 檢定) ①-② (省略) ③ 第2項의 檢定の 基準이 된 消防用 機械・器具 등의 성분・재료・구조・규격・성능 기타 필요한 事項과 檢定合格表示는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④-⑧(省略) (新設) (新設)	第38條(소방용기계기구) 등의 檢정) ①-② (現行과 같음) ③..... 形狀・構造・材質・成分・性能 檢정한 後 표시 기타 필요한 시험은..... ④~⑥ (現行과 같음) ⑨ 內무부장관은 關係者들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消防用 機械・器具 등에 대한 性能試驗을 할 수 있다. ⑩ 第9項의 性能試驗에 關하여는 第2項, 第3項 및 第40條 第2項・第3項의 規定을 準用 한다.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검사를 소방검사시 성립검사하된 것을 검정공사에서 성능 시험.
手数料	第39條(手数料)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內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納付하여야 한다. 1. 2 (省略) 3.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防用 機械・器具 등의 檢定을 받고자 할 때	第39條(수수료)..... 1. 2 (現行과 같음) 3. 檢정 또는 性能試驗을.....	성능시험 신청때의 수수료 규정 항목을 신설함.
會員의 자격	第70條의 4 (會員의 資格) ① 協會의 회원은 다음 각항의 者로 한다. 1. 이 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録 또는 신고의 義務가 있는 消防關係業者 2. 危險物取扱主任・위험물시설안전원・消防設備技士・防火管理者로서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 ③ (省略) ② 第1項 第1號에 해당	第70條의 4 ... (회원자격) ① 1.申告義務가 있는 者로서 大統領이 정하는 자. 2. 防火管理者・위험물 취급주인・危險物施設安全員 또는 소방설비기사로 選任되거나 罷免된 者 3. (現行과 같음) ② 第1項 第1號 및 第2號	한국 소방안전협회 회원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任意會員이 當然 會員의 자격이 됨.

題 目	舊 法	新 法	內 容
	하는者は許可를 받거나, 등록 또는 申告된 날로 부터 소원이 된다. ③ (省設)	에 해당하는 者は 허가· 登録 또는 신고되거나 選 任 또는 雇傭된 날로 부터 회원이 된다. ③ (現行과 같음)	
任職員의 공무원 신분	(新設)	第70條의 8 (任·職員의 公務 員身分 擬制) 第70條의 3 第4 號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官庁이 委託한 업무에 종사하는 協會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教育	第70條의 8 (防火管理者 등에 대한 教育) ① 內務部長官 은 火災予防과 安全管理의 効率化를 기하고 새로운技 術의 普及 또는 消防關係 人의 救養演義를 위하여 방 화관리자·소방설비기사· 危險物取扱主任 및 危險物 施設安全員에 대하여 年 1 回 7 日의 범위안에서 教 育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② (新設) ③ (省略) (新設) (新設)	第70條의 9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教育) ①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防火管理 者 · 위험물취급주임·危險物取 扱者·위험물시설안전원및 消防設備技士에 대하여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第1項의 規定에의 한 教育対象者가 所定의교 育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雇傭한 者에 대하여 防火 管理者·위험물취급주임· 危險物取扱者 또는 危險物 施設安全員의 解任을 命하 거나 消防設備技士의 解雇 를 勸告할 수 있다. ③ (現行 ②와 같음) 第70條의 10 (權限의 委任)이 法에 의한 內務部長官 또 는 道知事의 권한은 그 일 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 에 따라 道知事·市長·(서 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제 외한다) 郡守 또는 消防署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70條의 11 (施行令)이 法 施 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 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①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教育책 임이 內무부장관에서 소방 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위임됨. ②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教育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명 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확립
罰 則	第72條(同 前)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 는 者는 5 年 이하의 懲役 에 處한다. 1. 2. (생략) 3.	(罰 則)	이하 72조~78조까지 벌금의 증 액 (10배)

題 目	舊 法	新 法	内 容
	第73條(同 前) (이하 생략)	(罰 則)	
	第74條(同 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생략)	100만원	
	第75條(同 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5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생략)	(罰 則) 50만원	
	第76條(同 前)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者는 3月 이 하의 懲役 또는 3萬원 이 하의 罰金에 處한다. 1. 2. 생략 3. 第10條 第1項의 規定 에 違反하여 防火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이하 추가 4. 생략	(罰 則) 30만원 - 의한 - 또는 제18조제 1 항 단서의규 정에 의한 위험물 취급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자 (罰 則)	
	第77條(同 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萬 원 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料料에 處한다. 1. ~10. 생략 11. 신설	11. 第70條의 9 第2項의 規 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違反 한 者 (罰 則)	
	第78條(同 前) 第10條 第3 項 第15條 第3項·第18條 第5項 또는 第32條의 規 定에 의한 申告를 怠慢히 한 者는 1萬원 이하의 罰 金 拘留 또는 過料에 處한 다.	“제32조 제 1 항의 規定에 의 한 申告를 怠慢히 하거나 第 3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는 5萬원 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로 한다.	

発刊

전국 각시도 건축관계예규집
건축관계 법령추록 // 7 월 중 //

본회는 전국회원의 업무편의를 돕기 위해 전국 각시도 건축관계 예규집과 이
미 발간되어 사용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집 추록을 오는 7월중에 발간해서 배포
할 예정입니다. <*>

墨 石 有 情

心 象

朴 商 浩* (石林建築研究所代表)

墨点的 始發과

墨石의 所在와

墨象의 展開는

어떠한 經路로

回歸하고 旋回하며

어떻게 構成하고

収縮하며 擴散하는지...

× ×

點과

線과

圓의 螺旋帶

天趣의 分化와

墨点의 分身과

無化의 存在는...

그리하여

成長의 軸에서

線形帶에서

眞과

禪과

美의 三脈으로

리듬의 波長과

天光의 照射를 생각하며

天心의 安住를

期하고저

빛과

소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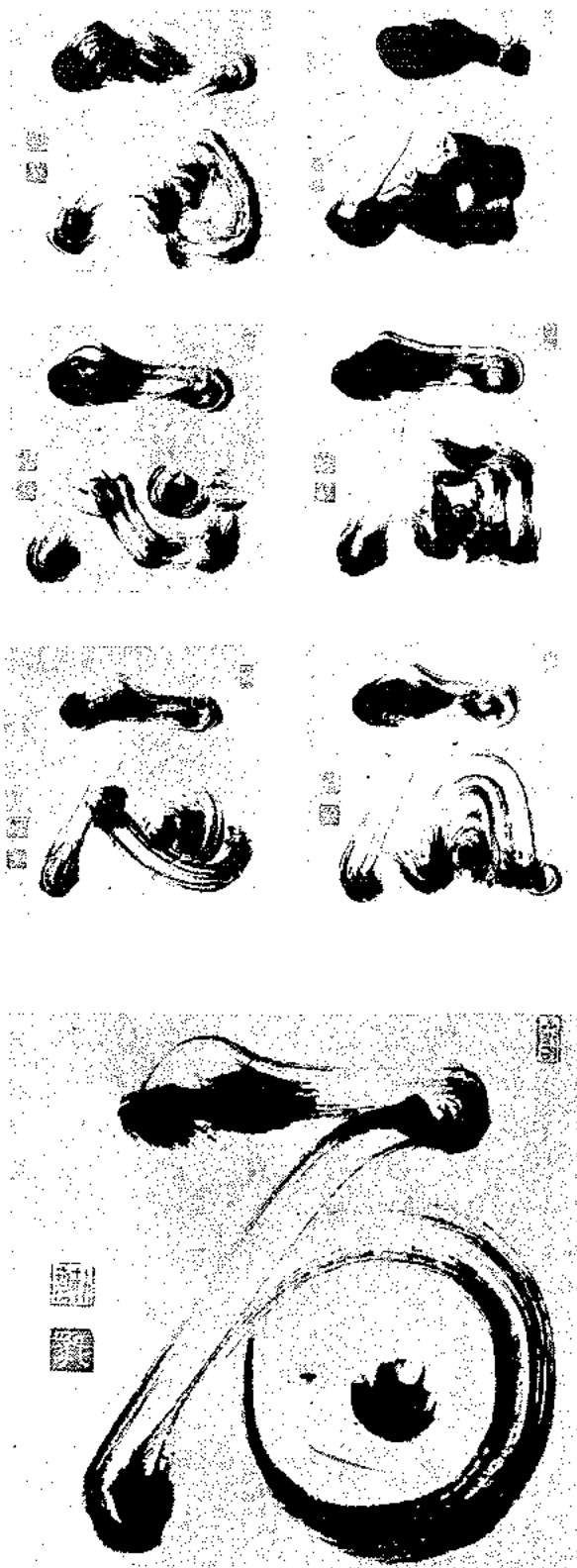
마음의 次元에서

超自然의 空間으로

조용하게 그리고 더 깊게

投影해 본다.

이 無限을.....



*韓國 現代美術大賞展 (公募) 特別賞受賞
(81. 6. 13. 서양화부분, 수채화)

新入會員

■ 서울支部新入會員

本 籍: 서울
姓 名: 崔 太 煥
名 稱: (주) 산건축연구소
所 在 地: 종로구 윤니동 98-5
電 話: 764-3835
免許番号: 2037
登録番号: 합동 280
月 日: 4. 4



/ 1948. 10. 27生 /
/ 漢陽工大卒 /

本 籍: 전남
姓 名: 廉 己 燮
名 稱: (주) 산건축연구소
所 在 地: 종로구 윤니동 98-5
電 話: 764-3835
免許番号: 2016
登録番号: 합동 280
月 日: 4. 14



/ 1949. 3. 1 生 /
/ 漢陽工大卒 /

本 籍: 서울
姓 名: 金 景 尚
名 稱: 고려종합기술공사
所 在 地: 중구 필동 2가 3-1
電 話: 265-1589
免許番号: 1598
登録番号: 합동 159
月 日: 4. 14



/ 1941. 1. 8 生 /
/ 嶺南工大卒 /

本 籍: 경남
姓 名: 吳 亨 錫
名 稱: 全 엔지니어링(주)
所 在 地: 영등포구 여의도동 1-501
電 話: 783-1931
免許番号: 1572
登録番号: 용역 7
月 日: 4. 14



/ 1946. 1. 28 生 /
/ 釜山工大卒 /

本 籍: 경기
姓 名: 趙 東 虎
名 稱: 하나공간설계연구소
所 在 地: 종로구 신문로1가176-6
電 話: 72-9478
免許番号: 297
登録番号: 합동 38
月 日: 4. 21



/ 1928. 9. 22 生 /
/ 漢陽工大卒 /

本 籍: 경북
姓 名: 林 圭 泰
名 稱: 태석건축연구소
所 在 地: 중구 을지로6가10-21
電 話: 267-6387
免許番号: 1602
登録番号: 합동 282
月 日: 4. 21



/ 1950. 2. 19 生 /
/ 대구工大卒 /

本 籍: 서울
姓 名: 吳 正 秀
名 稱: (주) 건축연구소 대전사
所 在 地: 중구 정동 1-11
電 話: 23-2334
免許番号: 2025
登録番号: 합동 277
月 日: 4. 24



/ 1950. 10. 11 生 /
/ 서울工大卒 /

本 籍: 부산
姓 名: 夫 大 珍
名 稱: (주) 효성엔지니어링
所 在 地: 강남구 서초동232-2
電 話: 52-2191
免許番号: 968
登録番号: 용역 11
月 日: 5. 1



/ 1941. 1. 22 生 /
/ 서울工大卒 /

本 籍: 경남
姓 名: 朴 慶 浩
名 稱: 세일건축기술연구소
所 在 地: 중구 무학동50-1
電 話: 252-1150
免許番号: 1544
登録番号: 단독 227
月 日: 5. 12



/ 1945. 7. 17 生 /
/ 漢陽工大卒 /

本 籍: 서울
姓 名: 申 金 鎮
名 稱: 한국원자력기술
所 在 地: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1
電 話: 783-7701
免許番号: 558
登録番号: 용역 10
月 日: 5. 29



/ 1933. 3. 2 生 /
/ 서울工大卒 /

本 籍: 전남
 姓 名: 金 龍 燁
 名 稱: (株)민우건축
 所 在 地: 용산구후암동214-3
 電 話: 792-1368
 免許番号: 1586
 登録番号: 단독 223
 月 日: 5. 19



/ 1947. 4. 25生 /
 / 延世工大卒 /

本 籍: 경기
 姓 名: 方 利 植
 名 稱: 삼화종합건축사무소
 所 在 地: 의정부시의정부4동223-54
 電 話: 2-2035
 免許番号: 2-695
 登録番号: 종합 15
 月 日: 4. 23



/ 1942. 10. 19生 /
 / 漢陽工大退 /

本 籍: 서울
 姓 名: 李 珏 杓
 名 稱: (株)엄·이 건축
 所 在 地: 종로구평창동66-4
 電 話: 723-4410
 免許番号: 1600
 登録番号: 합동 35
 月 日: 6. 1



/ 1948. 8. 14生 /
 / 延世工大卒 /

■ 全北支部新入會員

本 籍: 전북
 姓 名: 李 榮 喆
 名 稱: 세원종합건축사무소
 所 在 地: 전주시서노송동635-3
 電 話: 4-4209
 免許番号: 2027
 登録番号: 종합 2
 月 日: 5. 1



/ 1951. 9. 10生 /
 / 全州工大卒 /

■ 京畿支部新入會員

本 籍: 서울
 姓 名: 朴 熙 英
 名 稱: 동부 건축
 所 在 地: 광주군동부읍신장리434-8
 電 話: 79-2099
 免許番号: 693
 登録番号: 단독 83
 月 日: 4. 22



/ 1932. 4. 10生 /
 / 漢陽工大卒 /

■ 慶北支部新入會員

本 籍: 충남
 姓 名: 全 漢 權
 名 稱: 주식회사 스매크
 所 在 地: 포항시 괴동동 568
 電 話: 2-5651
 免許番号: 2018
 登録番号: 용역 3
 月 日: 4. 8



/ 1948. 4. 14生 /
 / 漢陽工大卒 /

■ 慶南支部新入會員

本 籍: 서울
 姓 名: 李 炳 權
 名 稱: 삼광종합건축설계
 所 在 地: 시흥군군자면초지리389
 電 話: 3607
 免許番号: 819
 登録番号: 종합 14
 月 日: 4. 18



/ 1930. 7. 5生 /
 / 大田公立工專卒 /

本 籍: 경남
 姓 名: 許 正 道
 名 稱: 철우서진건축연구소
 所 在 地: 마산시동성동159-6
 電 話: 2-1676
 免許番号: 2005
 登録番号: 합동 36
 月 日: 3. 30



/ 1953. 6. 20生 /
 / 창신工大卒 /

청탁풍조 배격하여 정의사회 앞당기자

'81 주택건설 종합계획 확정

政府는 住宅政策審議委員會를 지난 3月30일에 開催하고 올해('81年度) 8만호의 公共住宅과 17만호의 民間住宅을 建立하기로 確定하였다.

그中 公共住宅建設計劃에 따르면 大韓住宅公社에서 4만5

천호, 地自體가 1만5천호, 農村住宅改良과 再開發 및 災害事業으로 각각 1만호씩을 建立키로 하고 公共住宅 基金 3천2백3억원을 事業費로 投入키로 했다.

그 '81住宅建設綜合計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住宅現況

1. 總 括

年度 区分	'60	'66	'70	'75	'78	'79	'80 (推定)
人 口 (千人)	24,989	29,193	30,882	34,679	36,628	37,335	37,449
家口員 数(人)	5,95	5,94	5,65	5,44	5,36	5,28	5,11
家口数 (千家口)	4,198	4,917	5,576	6,367	6,829	7,079	7,331
住宅数 (千戸)	3,464	3,867	4,360	4,734	5,242	5,416	5,463
供給率 (%)	82.5	78.6	78.2	74.4	76.7	76.5	74.5

2. '80地域別 現況

区 分	家 口 数	住 宅 数	供給率(%)
計	7,331	5,463	74.5
서울	1,686	994	58.9
釜 山	632	353	55.8
京 畿	997	702	70.4
(仁 川)	(224)	(140)	(62.3)
江 原	345	301	87.3
忠 北	268	238	88.9
忠 南	536	476	88.6
(大 田)	(117)	(71)	(60.4)
全 北	416	377	90.7
(全 州)	(67)	(42)	(62.8)
全 南	704	620	88.2
(光 州)	(141)	(79)	(55.9)
慶 北	994	773	77.8
(大 邱)	(334)	(178)	(53.5)
慶 南	656	549	83.7
濟 州	97	80	82.5

資料: '80住宅 및 人口 CENSUS 잠정추계

3. '80住宅建設 実績

가. 計劃 對 実績

(單位: 戸)

区 分	計 劃	実 績	比率(%)	備 考
計	300,000	211,537	70.5	
公 共	112,000	106,187	94.8	着工基準
政府機關	3,450	3,430		
地 自 體	32,050	30,474		
住 公	38,000	30,104		
住 銀	38,500	42,179		
民 間	188,000	105,350	56.0	

나. 公共部門 住宅資金支援 計劃 對 実績

(單位: 百萬元)

財 源 別	計 劃	実 績	比率(%)	備 考
計	560,660	519,876	92.7	
政府財政	95,725	90,734	94.8	
地 自 體	42,945	39,928	93.0	
住宅銀行	252,313	239,185	94.8	
(國民)	(127,095)	(116,570)		
(民營)	(125,218)	(122,615)		
農 協	25,056	25,056	100.0	
借 款	31,900	17,400	54.5	住公自體資金
其 他	112,721	107,573	95.4	七開公 " 其他機關 "

II. '81住宅建設計劃

1. 住宅建設 目標

主 体 別	建設戸数	備 考
公 共	住宅公社 45,000戸	借款事業 9,600戸 包含
	地方自治團體 15,000 "	光州圈開發 借款事業
	農村住宅改良 10,000 "	2,762戸 包含
	住宅再開發 2,000 "	서울市
	其 他	
	國家機關 5,644 "	
	留 保 2,356 "	災害 等
小 計	80,000 "	
民 間 部 門	170,000 "	住宅銀行 60,000戸 包含
計	250,000	

2. 資金計劃

가. 財源別 調達計劃

(單位: 戶, 億圓)

區 分	建 設 總 戶 數 事業費	財 源							備 考
		中 央 財 政	地 方 財 政	借 款	國 民 住 宅 資 金	農 協	住 銀 (民 營)	入 住 者 擔 負 (自 擔 負)	
公 共 部 門	住 公 (借 款)	45,000	5,266	345		340	1,605	2,976	光州 圈地域開發 借款事業 서울市
	地 自 体 (借 款)	(9,600)	(999)			(340)	(159)	(500)	
	農村住宅改良	15,000	1,686			102	691	774	
	住宅再開發	(2,762)	(268)	119		(102)	(112)		
	其 他	10,000	720	144			115	144	
	國家機關	2,000	200	20			60	120	
	留 保	5,644	592	418				174	
		2,356	283				94	189	災害 等
小 計		80,000	8,747	907	283	442	2,565	173	4,377
民間部門 (住宅銀行)		170,000	30,600					3,600	27,000
		(60,000)	(10,800)					(3,600)	(7,200)
計		250,000	39,347	907	283	442	2,565	173	3,600
									31,377

(註) [] 는 追後設置된 國民住宅基金資金임 (2,910億圓)

나. 國民住宅 資金所要 및 調達計劃

(單位: 億圓)

所 要 額	調 達 額
住 宅 公 社	入 住 者 貯 蓄
(借 款)	國民住宅債券
地 自 体	住 宅 福 券
(借 款)	財 政
農村住宅改良	(住公出資分)
住宅再開發	住 宅 銀 行
留保(災害等)	公 務 員 年 金
小 計	小 計
'80移越事業支援額	'82 移 越
計	計

3. 施行方案

가. 建設計劃 및 施行

(1) 目標量 策定

(가) 建設部는 '81. 3 各道(서울, 釜山市)의 申請量을 基準으로 調整하여 道別로 配定

(나) 道는 市·郡別로 再配定

- 住宅不足率이 높은 市級地域에 優先 配定

- 共同住宅 優先

- 住宅公社의 地域別 建設計劃量 勘案

(다) 住宅公社의 地域未定分(4,570戶)은 需要量을 勘案, 住宅難이 深刻한 都市地域에 追加 配定

(2) 坪型別 配分基準

	7坪	10坪	13坪	15坪	15坪超過
住 公	7	17	53	18	5
서울市	10	40	40	10	-
釜山市	17	50	33	-	-
地 自 体	5		30	60	-
計(平均)	6	20	49	21	4

※配分比率의 上向調整은 資金計劃上 抑制함.

(3) 事業施行 方法

(가) 市·郡이 直接 施行하는 境遇

(工事發注, 施工監理, 竣工, 分讓 等)

- 設計(設計用役 發主) 및 工事發主

- 設計施工一括發主(大型工事に 關한 豫算會計法施行令 特例 規程)

(나) 事業隊行 能力이 不足한 市·郡은 民間 住宅組合을 구성하여 融資支援

但, 宅地는 住宅組合이 先 確保

(다) 國民住宅事業 特別會計를 設置 運用

(資金의 調達·供給 및 償還)

(4) 宅地의 選定 및 開發

(가) 選定對象: '81은 幹線施設費의 別途 負擔이 必要없는 地域을 優先 選定(幹線施設이 既設置되어 있거나 別途 計劃에 의하여 設置豫定인 地域 優先)

(나) 買入方法: 自體買入 또는 土地開發公社로 부터의 買入 (買入, 開發費는 國民住宅資金에서 優先 支援)

(다) 開發節次: 宅地開發促進法上의 節次에 의하여 不可避한 境遇 '81早期發注分은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5) 國民住宅의 供給 및 事後管理

(가) 供給

- 對 象: 當該地域(都市計劃區域 包含)에 居住하는 無住宅 家口 原則

- 供給方法(住宅供給에 關한 規則)

一般分讓: 50%以上(國民住宅 先賣請約 貯蓄加入者 優先)

團體分讓: 50%以下(無住宅者로서 職場 從事員 30人 以上으로 構成)

(나) 國民住宅 先賣請約 貯蓄

- 目 的: 事前 貯蓄을 통한 入住者 負擔 輕減 및 國民住宅 建設 財源 造成

- 貯蓄額: 月 2 萬圓

- 貯蓄機關: 韓國住宅銀行

(다) 投機抑制

一轉賣時 事業主體 同意(5年 範圍內)

一違反時 還買, 退去措置

나. 資金運用 方案

(1) 前提

國民住宅基金 施行時('81. 7. 20)까지 從前 方式에 따라 運用하되 融資比率 等은 새로운 方針에 依함.

(2) 資金支援 範圍

○建設期間中 建設資金으로 支援

坪 型	戶當 融資 限度額
7坪以下 (또는 總面積 9坪 以下)	320萬원
10 " (" 13 ")	440
13 " (" 16 ")	550
15 " (" 18 ")	600
25坪 以下 또는 單獨住宅	300

全國建築許可統計

用途別建築許可統計 및 前年對比

단위: 평방미터

월별		4 월			1 ~ 4 월		
용도별		'80	'81	대비%	'80	'81	대비%
주거용	동 수	11,384	7,235	63.6	31,055	16,866	54.3
	연면적	1,958,463	1,347,354	68.9	5,581,329	3,224,832	57.8
상업용	동 수	1,880	1,728	91.9	6,027	4,568	75.8
	연면적	524,768	633,248	120.7	2,221,676	1,645,643	74.1
공업용	동 수	196	248	126.5	750	658	87.7
	연면적	184,542	203,750	110.4	711,297	615,632	86.6
문 고	동 수	182	301	165.4	600	634	105.7
	연면적	145,583	206,123	141.6	588,630	523,331	88.9
기 타	동 수	492	363	73.8	1,569	1,172	74.7
	연면적	93,006	90,704	97.5	385,003	288,105	74.8
계	동 수	14,129	9,875	69.9	40,001	23,898	59.9
	연면적	2,906,362	2,481,179	85.4	9,487,935	6,297,543	66.4

月別建築許可統計 및 前年對比

단위: 평방미터

월별	'80		'81		전년대비 (%)
	동 수	연 면 적	동 수	연 면 적	
1	5,998	1,846,698	2,364	843,447	45.7
2	6,344	1,851,785	3,536	1,040,968	56.2
3	13,530	2,883,090	8,123	1,931,949	67.0
4	14,129	2,906,362	9,875	2,481,179	85.4
계	40,001	9,487,935	23,898	6,297,543	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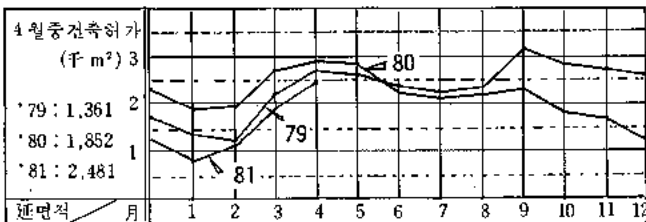
市道別建築許可統計 및 前年對比

단위: 평방미터

월별		4 월			1 - 4 월		
시도별		'80	'81	대비%	'80	'81	대비%
서울	동 수	2,225	1,638	73.6	6,604	3,904	60.2
	연면적	751,980	722,244	96.0	2,466,733	1,820,119	73.8
부산	동 수	1,146	619	54.0	3,679	1,599	43.5
	연면적	244,398	175,879	72.0	1,050,251	509,323	48.5
경기	동 수	2,873	1,718	59.8	7,045	3,798	53.9
	연면적	583,406	458,750	85.7	1,617,595	1,047,537	64.8
강원	동 수	463	575	124.2	1,286	1,206	93.8
	연면적	105,608	154,166	146.0	276,622	301,162	108.9
충북	동 수	694	556	80.1	1,764	1,269	71.9
	연면적	92,402	86,614	93.7	266,031	218,109	82.0
충남	동 수	1,421	991	69.7	3,966	2,364	59.6
	연면적	250,359	189,359	75.6	733,435	485,219	66.2
전북	동 수	1,370	431	31.5	3,016	1,159	38.4
	연면적	837,595	75,044	31.6	597,043	172,119	28.8
전남	동 수	1,110	1,016	91.5	3,268	2,298	70.3
	연면적	152,527	147,089	96.4	513,478	358,677	69.9
경북	동 수	1,585	1,215	76.7	4,867	3,118	64.1
	연면적	358,836	254,697	71.0	1,102,854	677,147	61.4
경남	동 수	1,004	920	91.6	3,474	2,346	67.5
	연면적	145,487	178,497	122.7	728,150	559,262	76.8
제주	동 수	238	196	82.4	1,032	767	74.3
	연면적	31,764	38,840	122.3	135,743	148,869	110.0
계	동 수	14,129	9,875	69.9	40,001	23,898	59.7
	연면적	2,906,362	2,481,179	85.4	9,487,935	6,297,543	66.4

建築許可前年對比圖表

(百萬 m²)



構造別建築許可統計 및 前年對比

단위: 평방미터

월별		4 월			1 ~ 4 월		
구조별	연면적	'80	'81	대비%	'80	'81	대비%
철근	동 수	2,634	2,362	89.7	8,566	5,841	68.2
	연면적	1,528,626	1,630,217	106.6	5,645,097	4,266,679	75.6
조적조	동 수	11,065	7,173	64.8	30,027	17,158	57.1
	연면적	1,336,887	817,390	61.1	3,703,198	1,950,139	52.7
목조	동 수	272	250	91.9	804	596	74.2
	연면적	17,054	15,108	88.6	57,376	39,153	68.2
기타	동 수	158	125	79.1	604	338	56.0
	연면적	23,795	15,014	63.1	82,264	38,122	45.3
계	동 수	14,129	9,875	69.9	40,001	23,898	59.7
	연면적	2,906,362	2,481,179	85.4	9,487,935	6,297,543	66.4

“강력한 밀착 백화현상 방지”

쌍곰 타일시멘트

발명특허출원 : 제 3532호

타일 시공은 개량된

혁신적 압착공법의

쌍곰 타일시멘트 로 !

「쌍곰타일시멘트」는 고분자 화학계통의 중요한 연구 결정체로서 각종 합성수지 및 화학물질과 무기질등 복합적 Ready-Mixer제로서 재래식의 모든 공법에 많은 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탄생 된 것입니다.

타일시공법을 개량한 압착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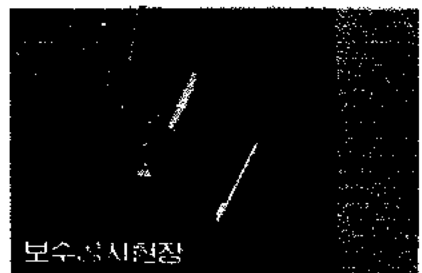
제품의 종류

- ◎ 압착용 내열 쌍곰 타일시멘트 B-2
- ◎ 접착용 쌍곰 타일시멘트 M-1



특징

1. 백화현상이 없다.
2.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한다.
3. 완전한 밀착으로 시공후 떨어지지 않는다.
4. 보수성이 좋아 작업에 편리하다.
5. 특수합성수지와 무기질로서 건물에 받는 하중이 가볍고 방수성이 좋다.
6. 지재의 소모가 없어 경제적이다.
7. 골재등의 운반이 필요없다.
8. 공기를 단축시킨다.



※ 쌍곰타일시멘트는 상기와 같은 하자는 없습니다.



서울 본 社 : 서울特別市 中区 釜井洞 28-9 (協昌빌딩 205号)
電話 : 227-2511, 227-2138
釜山營業所 : 釜山市 釜山鎭區 釜田洞 158-7 (富光빌딩 304号)
電話 : 68-6662

750°C의 불에도 타지 않습니다!

완벽한 화재예방——금강 불연 내외장재

화재는 건축물의 가장 커다란 敵——

근본적인 화재예방은 건축자재의 防火기능에 있습니다.

금강 불연 내외장재는

- * 750°C의 불속에서도 타지않는 완벽한 防火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 * 합판과 같이 뜯이나 못으로 손쉽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 * 창고와 같이 습기찬 곳에서도 나무처럼 썩거나 썩처럼 녹슬지 않습니다.

내외장용 보 — 드...밤라이트

석면과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10,000톤의 강압력에서 만들어낸 단단한 일급 불연 판재입니다.

내외 장식용 미장재...나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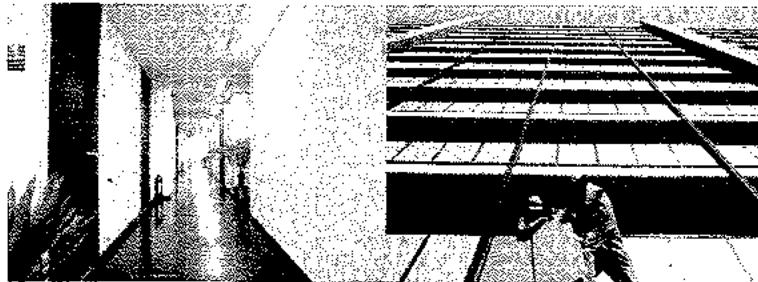
밤라이트를 아름다운 무늬와 색소로 장식한 반영구조인 내외장용 미장재입니다.

방음용 내장재...나무라이트 흡음판

기조판재인 밤라이트 위에 크고 작은 흡음구멍을 과학적으로 배열하여 뛰어난 방음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정용 내장재...아미텍스

백색의 평판면에 무늬를 넣어 천정용 내장재의 필수 기능인 단열, 흡음, 방음, 불연, 경량 효과가 우수합니다.



금강 불연내외장재